



2026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매뉴얼

한부모가족 종합가이드북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TEL | 02-861-3020



한부모가족 종합가이드북



발간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최근 정부는 양육비 이행 강화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단계부터 자녀 양육과 자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의 자립 지원과 심리·정서 지원, 주거 및 생활 지원은 물론, 경계선 지능 한부모 통합지원단, 위기임산부 통합지원단 운영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2026년 한부모가족 종합가이드북"은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지원제도와 서비스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이용 절차와 준비 서류, 담당 기관 등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이어가고 계신 한부모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한부모가족 종합가이드북"이 실무자와 한부모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정보 파트너가 되어, 혼자라고 느껴질 때나 앞으로 나아갈 힘이 필요할 때 한부모가족 여러분에게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6년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	지원금액
육아	양육비	65% 이하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취학시 만22세 미만/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 월23만원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의 2세 미만 자녀	자녀1인/ 월60만원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의 2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 월57만원
		65~90%	•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 월20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65% 이하	• 청년 한부모(25세~34세 이하)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취학시 만22세 미만) • 조손가족/미혼 한부모가족(35세 이상)의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 월10만원 자녀1인/ 월10만원
	아동 교육지원비 (학용품비)	65% 이하	•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 연10만원
	교통비	65% 이하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 분기10.8천원
입학금/ 수업료	65% 이하	•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미 실시 고등학생 대상)	실비 전액	
생활	생계비 (생활보조금)	65%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 포함)에 입소한 청소년한부모, 한부모 및 조손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가구/ 월10만원
자립	검정고시 등 학습비	90% 이하	•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1인/ 연154만원
	자립촉진수당	90% 이하	•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1가구/ 월10만원
기타			•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등	-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성평등가족부 사업 대비 서울특별시에서 추가 또는 상향 지원하는 내용임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025년 주요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1. 주요성과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전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24년) 월21만원 → ('25년)월23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 37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 지원 : 상담 4,900건, 치료지원 : 150명

■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속 추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역량 강화 : 총 18세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학비 지원 : 교통비 27,314명, 교육비 94명 지원
- 한부모가족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 : 10,164명 가사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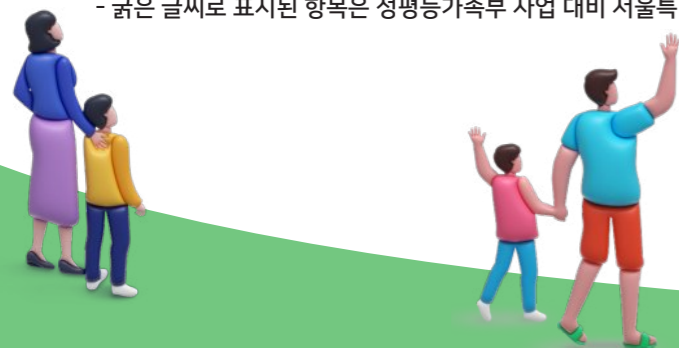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 기반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 한부모가족 지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체교육 추진
- 단체 및 유관기관 상생교육 : 74명,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 345명
- 중장년 한부모 자립을 위한 취업 교육 : 10명
- 성년기 자녀의 독립 이후 홀로 남은 중·장년 한부모의 정서적 안정 도모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심' 제공 : 125명
- 경계선 지능 한부모 발굴 및 종합심리검사, 자녀양육을 위한 맞춤 지원 등 제시 : 891건
- 한부모가족 지원 전문사례관리위원회 구성, 대상자 맞춤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진행, 자녀 양육 기술 습득을 위한 양육코칭 서비스 지원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이해교육 및 캠페인 진행
-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및 서울시 유관기관(체육회, 문화재단 등), 지역사회에 한부모가족 관련 인식개선 포스터 게재하여 인식개선 확대 기여

2. 개선 필요사항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복지 지원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보조금 지원 금액 인상 검토 필요
- 매입임대주택 지속적 임대보증금 상향을 통해 입소자 주거 비용(월세) 부담 감소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 길라잡이



CONTENTS

I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9p

-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비전
- 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 소개(2026)

II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p

- 1.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3.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III 서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안내 28p

- 1.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2. 출산지원시설
- 3. 양육지원시설
- 4. 생활지원시설
- 5. 일시지원시설
- 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용시설)



IV 생활영역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1. 법률 및 금융 지원 55p

- 양육비 이행 원스톱종합서비스(양육비이행관리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복지법률지원(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홈닥터
- 마을변호사
-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신용회복위원회)
-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한부모가정의료보험1기~3기)

2. 주거지원 77p

- 공공임대주택 개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임대주택별 세부내용
- 국민주택기금
-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 주거복지센터
- 주거급여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 한사랑 전세론(한부모가족 전세자금대출)

3. 교육지원 115p

- 장학금 지원
 - 1)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 2)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 3) 서울특별시 자치구 장학금 관련기관
 - 4) 아이들과미래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5) IBK행복나눔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6)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7)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8)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든든 학업지원금 지원
 - 9) KT&G 복지재단 장학사업
 - 10)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지원



- 학습지원
 - 1) 학력인정 평생교육
 -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 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
 - 4)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 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6)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7) 진로와 진학 주요 정보 검색 사이트 안내



4. 양육지원 141p

-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 임신·출산 지원
- 자녀성장지원
- 보육지원
- 돌봄지원
-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

5. 자립 및 취업지원 163p

- 취업 및 창업 교육지원
- 창업 자금 대여
- 근로복지공단
- 자산형성 지원

6. 의료지원 201p

- KT&G 복지재단
- (재)아름다운 동행
- 한국여성재단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의료비 지원
-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의료비 지원



7. 위기지원 208p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서울형 긴급복지
-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지원사업
- 신한희망재단: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 이랜드복지재단 위기 지원사업 ‘SOS위고(WE GO) 사업’
-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8. 기타지원 214p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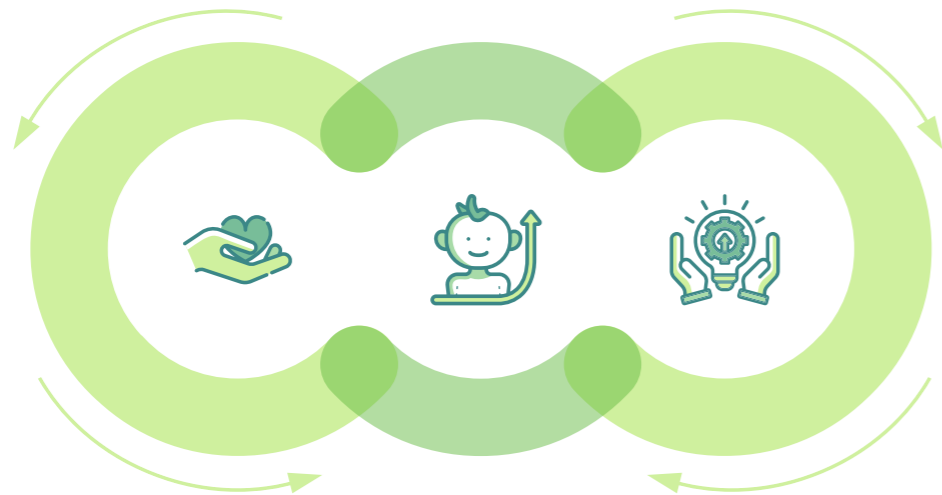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비전

VISION

한부모 가족의 **돌봄, 성장, 미래**를 함께하는 서울



MISSION 함께 만드는 한부모 가족지원
함께 나누는 한부모 가족지원
함께 누리는 한부모 가족지원

VALUE 한부모 가족의 돌봄
한부모 가족사업의 성장
한부모 가족과 소통
한부모 가족지원의 혁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 상담지원 체계화
- 한부모가족 스마트서비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

- 한부모가족 서비스 총괄지원
- 한부모가족 네트워크 활성화
- 한부모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 인식개선 사업 확대
- 미래지향적 한부모가족 지원
- 심과 여가가 있는 환경조성

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소개(2026)

1) 한부모가족 생활밀착형서비스지원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초기 한부모, 위기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선배 한부모 또는 복지·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한부모생활 코디네이터가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정서적 지지, 복지 정보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모집기간	2026. 3. ~ 2026. 11.
지원대상	사회, 정책적 지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1:1 연계를 통한 한부모가족 정책 정보, 자녀양육 정보, 심리/정서적지지, 양육비 이행 정보제공 및 지원기관 동행 서비스 지원(총 5회기)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홈페이지 온라인 양식)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의	☎02-861-3020 (맞춤형복지팀)

2)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한부모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 서울시 내 전문 심리상담기관을 연계하고, 1인당 최대 10회기 대면 1:1 심리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모집기간	2026. 3. ~ 2026. 11.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센터 연계 및 1:1 맞춤형 심리상담 10회기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홈페이지 온라인 양식) -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의	☎02-861-3020 (맞춤형복지팀)



3) 한부모 자녀성장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육아용품 지원합니다.

□ 출산축하성장용품 “꿈틀박스”

모집기간	2026. 1. ~ 2026. 1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
지원내용	영유아 성장용품 꾸러미(아기띠, 젖병 등) 지원 ※ 물품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구성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를 통한 신청 - 이메일: hanbumo1@seoul.go.kr - 팩스: 070-7469-3024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임신중인 경우) 임신확인서 - (물품수령 후) 꿈틀박스 수령 후기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의	☎02-861-3020 (맞춤형복지팀)

□ 학령기 아동 지원 사업 “우리아이 첫 입학 축하해!”

모집기간	2026. 1. / 2026. 4.
지원대상	2026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교 입학 축하 책가방 구입비(10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교 입학 축하 신발 구입비(5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관을 통한 이메일 신청 - 이메일: hanbumo1@seoul.go.kr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 후기 및 만족도조사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의	☎02-861-3020 (맞춤형복지팀)



4) 중·장년 한부모가족지원

자녀가 성년이 되어 독립하는 생애전환기의 중·장년 한부모에게 전문기술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합한 훈련을 통해 직·간접적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집기간	2026. 5. ~ 2026. 11.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장년 한부모(만 40세 ~ 만 65세)
지원내용	전문기술양성교육, 템플스테이 ‘쉽표하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hanbumo1@seoul.go.kr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한글파일)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강의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의	☎02-861-3020 (맞춤형복지팀)

5) 경계선 지능 한부모 지원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합니다.

모집기간	2026. 1. ~ 2026. 1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지원내용	- 종합심리검사 지원 (센터 연계기관에서 종합심리검사 진행) - 맞춤형 서비스 연계 (양육코칭,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신청방법	-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 진행 후 내방 접수 - 복지기관을 통한 기관 접수(공문 신청)
제출서류	기관 - 신청공문, 종합심리검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상자 - 종합심리검사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문의	☎02-861-3023 (맞춤형복지팀)



6)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상호지지를 위한 모임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자조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로를 지지하며 자립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임 활동비,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봉사활동 등 자립을 향해 함께하는 우리동네 자조모임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동네 자조모임 알아보기! (운영기관 문의전화 후 가입신청)				
연번	자치구	자조모임명	운영기관	전화번호
1	강동구	도담보담	성내종합사회복지관	☎02-478-2555
2	강북구	내 맘이 소중한	강북구가족센터	☎02-987-2567
3	강서구	나, 너, 우리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02-2668-8600
4	관악구	다정한 우리	서울YWCA누리봄	☎02-3705-6000
5	금천구	내 마음의 "틈"	금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02-6912-8000
6	금천구	끼리끼리 우리끼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7
7	도봉구	따로 또 같이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8	동대문구	소담	동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	☎02-920-4515
9	동작구	여성가장활동가모임	글로벌한부모센터	☎02-826-8881
10	동작구	공간열고 마음열고	서울한부모회	☎02-815-1563
11	서초구	나너보듬·함께가꿈	서초구가족센터	☎02-576-2852
12	성동구	아파트 시즌2: '아'버지와 자녀의 '파'트너십: '트'레이닝 프로그램	선재누리	☎02-6959-6858
13	성북구	해피투게더	월곡종합사회복지관	☎070-4825-3812
14	송파구	we함께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울시지부	☎02-488-1880
15	양천구	한마음회	(사)우리더불어이웃	☎02-3280-7002
16	영등포구	맘마미아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02-3667-7979
17	은평구	당당하게 날다	은평구가족센터	☎02-376-3731
18	은평구	맘's 터치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02-6951-0301
19	은평구	힐링타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070-4441-1318
20	종로구	다문화한부모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
21	종로구	좋은벗	(사)지혜로운여성	☎02-722-2101
22	중랑구	수혜자에서 공헌자로 성장 투	생각나무BB센터	☎02-2208-0130
23	중랑구	봄봄가족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70-7011-1028



7) 한부모가족 위기지원사업

우리 주변에는 미처 돌아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위기상황 극복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합니다.

□ 한방의료지원사업

모집기간	2026. 1. ~ 2026. 1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출산 직후 ~ 산후 12개월 사이의 중위소득 100% 한부모 24명
지원내용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른 산후풍 등 치료한약 1개월 분 제공
신청방법	센터 이메일(hanbumo1@seoul.go.kr) → 제출 서류 첨부 → 신청완료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3개월분 제출 시 대체 가능)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 의	☎02-861-3020 (맞춤형복지팀)

□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및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한 '홈스윗홈'

사업기간	2026. 3. ~ 2026. 8. 매주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14:00~19:00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정보 제공 및 센터 사업 신청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및 유선 신청 - 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의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한 신청 및 유선 신청
제출서류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단, 내방을 통한 센터 사업 신청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신청서류 지참
문 의	☎02-861-3020 (맞춤형복지팀)



8)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한부모는 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 역할과중에 따른 피로감을 느낍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정, 시간빈곤을 해소하여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모집기간	- 2026. 3.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한부모가정 - 조건에 따라 선착순 매칭 (1가지 이상 해당 시 우선순위로 연계) < 우선순위 조건 > • 신규 신청자 • 다자녀 가정 • 취업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정 •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사가 어려운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청소, 세탁, 설거지 (연 15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1회당 3시간 - 서비스 이용료: 무료(예치금 34,000원 입금 필요)
신청방법	- 신청서(홈페이지 내 작성) 공통,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pc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신청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클릭 - 해당사항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홈페이지 주소: http://seoulhanbumo.or.kr
제출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3개월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조건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중 해당사항 택 1
문의	☎02-861-3012(복지환경지원팀)

9)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사업

한부모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과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권익증진 포럼을 개최하고 센터 이용자와 전문가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기간	2026. 9.(예정)
내용	- 한부모가족 권익증진 포럼 진행 - 한부모가족지원 이슈파악을 위한 간담회 운영



10)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아직까지도 사회에 공공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전문적인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일반시민, 한부모가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 시민참여형 한부모가족 이해 캠페인 운영

11) 모두하나대축제

법정 기념일인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확산하기 위해 모두하나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일자	2026. 5. 9.(토)
내용	-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및 가족다양성 존중 확산 - 공감·응원 메시지 전달

12)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장년 한부모는 자녀의 독립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부자가족은 가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중·장년 한부모와 부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한부모 부자가족 - 서울시 거주 생애전환기 중·장년(만 40세~65세) 한부모 - 서울시 내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내용	- 생애전환기 중·장년 한부모 미래 설계 교육 프로그램 보급 - 부자가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문의	☎02-861-3011(복지환경조성팀)



13)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나는 가장이다!"

한부모가족의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주택금융재단의 후원으로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신청대상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14,500만원 이하	11,000만원 이하	9,500만원 이하		
신청대상	• 계약일자				
	구분 구분	2026년 일정			
신청대상	대출 조건	신규/재계약 기간	1차	2차	3차
			2025년 9월 1일 ~ 2026년 3월 31일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2026년 4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사업일정	구분	1차	2차	3차	
	서류접수	2026. 3. 10.(화) ~ 4. 24.(금)	2026. 6. 9.(화) ~ 7. 24.(금)	2026. 9. 1.(화) ~ 10. 23.(금)	
	대상자 발표	2026. 5. 19.(화)	2026. 8. 19.(수)	2026. 11. 17.(화)	
	약정서류 접수	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공문 발송			
	대출금 입금	5월 중	8월 중	11월 중	
대출금액	- 신규,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임차보증금 차액만큼 무이자로 대출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임차보증금 대출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 최대 3백만원)				
대출금액	예) 대출 가능 금액 : (신규 또는 재계약 후 임차보증금)750만원 - (기존 임차보증금)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 ⇒ 기존 계약서와 비교하여 상향된 금액 확인				
상환방법 및 상환금액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원금상환(무이자)				
	대출금	상환 금액	상환기간 (최장)		
	300만원 이하	매월 5만원	60개월		
	3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50개월		
대출조건	* 인센티브 지급: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대출금의 10% 인센티브 지급				
	일정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기존보다 상향되어야 함				



대출불가 세대	-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등 부동산 소유자 •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민법상 대출 불가) •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용관리대상자(개인회생, 파산 등) 	
대출불가 세대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 일자 기준) 성실상환 중인 자(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 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문의	☎02-861-3011(복지환경조성팀)	

※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재)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지자체 또는 복지지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개인 신청 불가)

필수 서류	신청 기관	- 서식1. 신청기관 신청서	- 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필수)
	신청 자	- 신분증(앞면)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기관에서 신청자 본인 여부 신분증 복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신분증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서식2.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자 본인 자필 작성	
- 서식3. 대출거래약정서		- 밀줄 등 임의수정, 수정테이프 절대 불가 (수정 필요 시 새로 작성)	
- 서식4. 성실상환 약속서			
- 자동이체 신청 확인서		- 주거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후 발급 가능	
신청 자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본인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	
	- 임대차계약서(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사본), •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사본)	- 재계약의 경우 • 보증금 증액 납입고지서 또는 재계약 신청서 추가 제출 -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의 경우 • 서식5.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예정확인서추가 제출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① 무상임차 ② 비주택 거주자 ③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 무상임차 •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 시설거주자 •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 등기부등본	- 신규/재계약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발급용)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	
		소득증빙서류 (택 1)	1.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50% 이하)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	- (발급처) 정부24 및 행정복지센터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52%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3.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100% 이하	- (해당)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신청자	심사 평가시 가점 부여	- 청소년 한부모 - 다자녀(3명 이상) 양육 - 장애인증명서 1부	등본(신청자 연령 및 동거자녀) 확인 가구원 중 장애등급 1~3등급인 경우에 한함
		신용회복 대상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 신용회복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 대출 진행 기본 원칙

심사 원칙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
사업 원칙	이미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형평성 고려)
협력지원의 원칙	-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개인신청 불가) -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신청기관 • 신청자의 개인 정보(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가 변경될 경우, 본 센터로 전달해야 함 •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출지급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함



14) 후원

개인후원	- 후원 종류	정기후원 -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 후원 일시후원 - 한부모가족을 위한 비정기적 1회 후원
	- 후원 참여 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 접속(www.seoulhanbumo.or.kr) → 후원/자원봉사 → 후원안내 → 화면하단 일시/정기후원하기 ② 후원금 전용 계좌: 신한은행 140-012-644295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기업후원	- 후원 종류	기금후원 - 기업기부(수익금 일부 기부), 임직원기부(급여 일부 기부) 등을 통한 기금 후원 기부물품 후원 - 생활용품, 양육용품 등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물품 후원 나눔후원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여행 지원, 한부모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형태의 나눔 후원
	- 후원 참여 방법	후원 상담 → 후원 제안 및 협의 → 후원 확정 및 협약 → 후원(기부증서 발급)
	문의	☎02-861-3021(복지환경조성팀)

한부모가족의 후원자가 되시면 모든 후원금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88조의 4 및 법인세법 제24조)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1)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63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639
	기준 중위 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2)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 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구분	개정사유	2026년 개정 사항
선정기준	소득기준 상향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63% → 65%)
조사	근로·사업소득 공제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공제율) '40만원+30%' → '60만원+30%' (공제대상) 29세 이하 수급권자 → 34세 이하 수급권자
조사	재산조사(자동차)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의 자녀 → 2명 이상의 자녀)
조사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은 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단, 2025.12.31. 기준 여러 채의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정 받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2027.1.1.부터 적용(1년 유예)
수급자 범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 특례	-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하여 겪게 된 피해를 사유로 받은 정부지원금, 후원금품 또는 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 산정 제외
수급자 범위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 특례	-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라 보상금, 배상금 등 일시금은 재산 산정제외
복지급여의 실시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복지급여의 실시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청년한부모가족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복지급여의 실시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 지원
복지급여의 실시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 월 10만원 지원
복지급여의 실시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지원비	- 학원비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12개월 내 1회 응시하여야 함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구분	개정사유	2026년 개정 사항
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가이드라인	통합관리운영비 및 물가상승률 반영	- 유형개편에 따른 통합관리운영비 조정 -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
기능보강	지원단가 현실화	- 신, 증·개축, 리모델링 지원단가 개정 ※ 2,380천원 × m ²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안전진단 점검 결과 등 즉시성 요구시) 자부담 적정 비율과 관계없이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음
상담·의료 지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	- 경계선지능인 대상 진단비 지원 및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치료비 지원 가능 ※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연 1회(30만원) 지원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이용시간 및 단가 상승 적용	- (시간) 960 → 1,080시간 - (단가) [영아종일제서비스] ① (일반형) 시간당 12,180 → 12,790원 ② (종합형) 시간당 15,830 → 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4,610 → 15,340원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자부담금 상승 및 인건비 근거 마련	- (입주자부담금) 호당 700천원 내외 → 1,000천원 내외 - (인건비) 25호 이상 관리하는 운영기관은 2인 이상의 가족상담사 배치 근거 마련
시설평가	(신설)	- 목적 및 법적근거 - 시설평가 실시(평가대상, 평가실시) - 평가결과 사후관리(목적, 대상시설 및 지원내용, 인센티브 제외 사유, 시·도 및 시·군·구 협조사항)



3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p><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10만원 	<p>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p>	지방자치단체
<p><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 	<p>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한부모가족</p>	지방자치단체
<p><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지무원 인력경비 지원 	<p>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p>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단체
<p><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 법률구조 지원 	<p>「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p>	대한법률 구조공단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내

1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시설 유형	시설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출산지원시설	6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6개월 (6개월)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1년)
양육지원시설	9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3년(1년)
생활지원시설	7	18세 미만 ¹⁾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5년(2년)
일시지원시설	1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6개월(1년)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	이용시설

* 입소 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은 각 시설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출산지원시설

□ 시설현황

출산지원시설 (6)	구세군두리홈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41	☎02-363-5722
	마음자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53나길 53	☎02-2691-4365
	애란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02-393-4725
	마포애란원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4나길 5	☎02-711-4725
	(사)깨달음과나눔 도담하우스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23가길 6-4	☎02-449-8893
	애란세움터 (비양육모)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47길 61-22	☎02-703-4406

□ 입소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을 양육하는 여성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의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내





2)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 전 임신부

3)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소득기준 초과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도 포함
- 소득기준 초과자는 시설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입소 가능, 시설 재정상황에 따라 의료비 등 지원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 여부 확인 필요
- 「위기임신 보호 출산법」상 위기 임신부로서 출산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제1항 1호 단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입소 가능

□ 입소기간

1년 6개월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의 경우 2년 이내로 시설 입소 가능하며, 자립준비 등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총 1년 이내 연장 가능 (단, 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 시 별도로 입소기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1) 주거 및 식사 제공

2) 분만 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지원 대상자로 관리

○ 지역 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임신 및 출산 관련,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진료를 위한 병원이용료로서 의료급여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모와 아이의 질병 진단·치료·입원, 예방접종비 등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료비

- ※ 의료급여 선정 이전 기간 및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참고)에 대해 지원(세부내용은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지원 내용 참조)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 ※ 미혼모 특수치료비와 해산급여는 별도임(중복지원 가능)

3) 자립지원

○ 직업교육, 학업지속(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검정고시 등)

○ 교양교육, 가사교육, 상담지도 등

4)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참고



3 양육지원시설

□ 시설 현황

양육지원시설 (9)	애란영스빌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20길 44-13, 303호	☎02-333-4725
	구세군디딤돌	서울시 종로구 평창12길 8-18	☎070-7547-8895
	달빛동지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4-13	☎02-912-1616
	구세군두리마을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41	☎02-339-4471
	애란모자의집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4길9-7	☎02-391-4725
	아름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32-3	☎02-334-4614
	생명누리의집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3-21	☎02-326-5891
	한남하우스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6가길 302호	☎02-2661-8808
	구세군한아름(부자가족)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8길 36-5	☎02-2691-8445

□ 입소대상

-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로서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조부모 성별(모(母) 또는 부(父)) 기준 시설 입소)

□ 입소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기간연장 시 자녀 양육 계획 및 추후 자립계획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양육 및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

□ 지원내용

1) 주거 등 생활 지원

2) 자립 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3)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 양육지원형 시설은 보장시설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지급 시 참고

5) 영유아 양육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6)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4 생활지원시설

□ 시설 현황

생활지원시설 (7)	동광모자원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23-1	☎02-930-5782
	성심모자원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12길 11-3	☎02-712-5287
	영락모자원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5길 47	☎02-941-1970
	창신모자원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8나길 28	☎02-2612-7142
	평화모자원	서울시 구로구 안양천로539길 18	☎02-2614-4303
	해오름빌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26길 21-3	☎02-754-5702
	선재누리(부자가족)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4길 21	☎02-6959-6858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 성별(모(母) 또는 부(父))에 따른 전용시설 입소)
 - ※ 부자가족(또는 조부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이 이용하는 생활지원시설에서 동반 여아(女兒)가 있을 경우 안전을 위한 상시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 자녀가 군복무로 인해 실제로 시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아동(자녀)으로서의 자격유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조부모 성별(모(母) 또는 부(父)) 기준 시설 입소)

□ 입소기간

- 5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단, 시설 입소기간의 연장기준 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 시 별도로 입소기간 연장 가능)
 - 시설장은 기간 연장 시 현재까지 입소자의 자립성과 및 추후 자립계획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도
 - ※ 법 개정에 따라 입소기간동안 자녀 중 일부 아동의 연령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단, 군복무후 취학 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초과하더라도 연령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므로 입소기간 보장(단, 연령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지원 중단)하되, 시설 내 입소기간 보장)

□ 지원내용

- 1) 주거 등 생활지원
- 2)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 ※ 시설 내에 직업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 3)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4)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 5)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6)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7)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참고

□ 지역사회 유대 강화

- 지역사회 민간단체·종교단체·기업과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입소자의 편의와 유대감 증진,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시설의 놀이터, 운동장, 강당 등 문화·체육 부대시설을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여 운영 가능

□ 시설 설치기준 준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한 시설 유형별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함

5 일시지원시설

□ 시설 현황

일시지원복지시설 (1)	서울모자의집	주소 비공개 (서울시 소재)	☎02-1366
-----------------	--------	-----------------	----------

□ 입소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모(母) 또는 부(父)의 건강을 해치고 아동을 양육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母) 또는 부(父)와 그 자녀(자녀 동반 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모(母) 또는 부(父)도 가능) 단, 긴급하게 입소 대상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상황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 ※ 시·도는 부자가족이 이용 가능한 일시지원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조부모 성별(모(母) 또는 부(父)) 기준 시설 입소)

□ **입소기간**

○ 6월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1) 주거 및 식사제공, 생활보조금 지원(본 지침에 따름)
- 2)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지원대상자로 관리
- 3) 법률상담, 심리상담
- 4)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5)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 6)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 7)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8)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9)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6항, 제73조제6항, 제89조제5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 등 참조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입학을 신청
 - ※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따름
- 10)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6호



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용시설)

□ **시설 현황**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4)	한국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서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8, 201호	☎02-704-4750
	이주배경 한부모가족상담소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48길 15-2, 1,2층	☎02-792-7937
	금순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41 유니온빌딩301호	☎02-322-5007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4층	☎02-861-3020

□ **이용대상**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 해결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름

IV

생활영역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생활영역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 양육비이행 전문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제재조치, 면접교섭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도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p.55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취약계층 가정폭력피해 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대면상담, 외국인 상담, 출장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진행 •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1644-7077)	p.61
복지법률지원 (서울사회복지 공익법 센터)	법률 지원·상담이 필요한 서울 시민 및 복지시설	• 민사, 가사, 주거, 후견, 행정, 사회보장, 형사, 보호,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 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리, 청년부상 제대군인 법률상담, 노동, 기타 법률 등 • 방문상담(사전예약), 전화 상담 및 인터넷 상담 진행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1670-0121)	p.63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계층, 한부모가족 등	• 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사건 등의 소송 대리, 형사 사건의 무료 변호 등 • 면접상담(예약), 전화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 상담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p.64
법률홈닥터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근로 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소송 수형 및 법률문서 작성은 제외되며, 구조 기관으로 연계)	지역별 법률홈닥터 (지역구 시·구청)	p.67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 변호사와 법률상담 진행	법무부 (☎02-2110-3000)	p.68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개인·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자	• 개인회생 및 파산상담, 법원 서류 작성 및 무료지원, 진행 비용 무료지원 등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p.69
금융복지상담 ·지원센터	저소득가구 및 금융취약계층	•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전국 금융복지 상담지원센터	p.71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종합상담 및 채무조정 • 자금지원 및 고용·복지 연계	서민금융진흥원 (☎1397)	p.73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및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등	•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상해, 질병 등) • 대상자 조건을 충족시 자동 가입(별도 가입 절차 없음)	서민금융진흥원 (☎1397)	p.76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공공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35~9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LH한국주택 도시공사 (☎1600-1004)	p.77	
영구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기간: 5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30% 수준) 공급규모: 40㎡ 이하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p.79	
국민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2~4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통상 60㎡ 이하)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p.79	
행복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2~5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기간: 2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60㎡ 이하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p.81	
공공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3~5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기간: 5년/1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9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p.82	
장기전세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3~4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기간: 2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8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통상 60㎡ 이하)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p.83	
영구임대	사회보호 계층 (입주자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복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p.85
매입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 생활 가정 (입주자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p.86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자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내 저소득층(예비)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LH한국주택 도시공사 (☎1600-1004)	p.88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 이후 해당 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 콜센터 (☎129)	p.89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내 저소득층(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LH 청약 플러스 (apply.lh.or.kr)	p.92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두 명 이상 직계 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입주자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 결정하면, 공공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LH한국주택 도시공사 (☎1600-1004)	p.93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p.94
재개발 임대주택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주택의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분양전환되지 않음) 	sh 서울 주택 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	p.96
5·10년 공공임대주택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또는 10년의 임대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 ARS (☎1661-7700)	p.9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 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우리은행 (☎1599-0800)	p.10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등		국민은행 (☎1599-1771)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등(우대형, 일반형)		농협 (☎1588-2100)	p.103
			신한은행 (☎1599-8000)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서울형 주택 바우처	민간 월세 주택 고시원 가구, 임대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 지원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2	p.106
서울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용자지원(구, 사회복지기금대출)(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주택만 해당)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저소득한부모 세대 등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제도 • 영구임대, 장기전세, 희망하우징, 장기안심, 전세임대, 근로신혼부부 제외	SH공사 콜센터 ☎1600-3456	p.107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보유기준 참조	•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 한도 지원(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의 30% 지원,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 4천 5백만원 무이자 지원) • 최장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	SH공사 콜센터 ☎1600-3456	p.107
희망의 집수리 사업	소득인정액이 60%이하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신청가능)	• 공공주도형 집수리 사업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민간기부금과 시 예산을 매칭한 민간참여형 집수리 사업 • 공공임대주택(건설, 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제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08
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 보증금, 월임대료, 수도광열비 등 주거비 체납 등으로 주거 불안정한 상태의 취약가구에 대한 긴급주거비지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간편집수리, 가구주택관리서비스 등 취약계층 맞춤형 상담 및 주거지원을 수행하는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2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및 지자체 별 주거복지센터	p.108
주거 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내의 가구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임차가구: 전월세 지원 / 자가가구: 집수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p.111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한부모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관리비,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p.113
한사랑전세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조건 충족하는 자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최대 200백만원)	KEB하나은행 ☎1599-2222	p.113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소득 9분위 이하 대학생인 성적 기준 충족자로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분위 파악 된 자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분위 및 지원유형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I형, II형), 국가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1599-2000	p.115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 꿈 장학금 바우처 지급(초등학생: 15만원/ 중학생 25만원 / 고등학생 35만원 / 대학생 45만원) • 멘토링, 교육캠프 등 맞춤형 지원 • sos장학금: 월 30만원 균등지급, 10개월 간 한시적 지원	한국장학재단 ☎1599-2000	p.117
서울 미래 인재 재단	서울지역 학생	• 고등학생 장학금 : 서울미래고교장학금, 서울미래예체능장학금, 서울미래 직업계고장학금, 서울미래꿈터장학금 • 대학생 장학금 : 서울미래대학장학금, 서울미래영역프로젝트, 서울미래 해외교환학생장학금,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서울미래인재직업전문학교장학금, 청춘start장학금, 서울선순환 인재장학금	서울미래인재재단 ☎02-725-2257	p.120
서울시 자치구 장학금 관련기관		• 서울 내 자치구별 장학금 관련 기관	각 자치구 담당 기관	p.121
아이들과 미래재단	상세내용 참고	• 기남장학재단 미래그린장학, DB청소년 장학, 우리은행 꿈.꾸.당, 삼성화재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지원사업, 청년 SW아카데미, 우리미래금융재단 우리러너, 희망샘기금, 폴앤센장학기금, 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 SGI서울보증 파란꿈 희망파트너	아이들과미래재단 ☎02-843-8478	p.122
IBK행복 나눔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연간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미혼의 자녀	• 대학생 최고 300만원, 고등학생 최고 100만원	IBK행복나눔재단 ☎02-3789-3992	p.126
아산사회 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	상세내용 참고	•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성적기준)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p.126
삼성꿈장학 재단 장학사업	저소득층 가정의 중2 ~ 고3	• 멘토링 꿈장학사업 - 꿈 장학사업: 중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멘토링의 통장계좌로 3회에 걸쳐서 입금) - SOS장학사업: 중학생 월 20만원, 고등학생 월 30만원 (멘토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	삼성꿈장학재단 ☎02-727-5400~5401	p.127
한국 야쿠르트 사회복지 재단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 대학생	• 지속적인 학업 유지를 위한 학업 관련 비용 보조(200만원) •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 및 민간 교육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령 가능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02-3449-6426	p.128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KT&G 복지 재단	(중등)(고등) 상상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신규 고교 상상장학생 250명 선발 예정 (잠정적으로 중등 상상장학생 신규 모집을 실시하지 않음) 학습 용도 장학금 중등(50만원*2개 학기) 고교(100만원*2개 학기) 지원 등 	KT&G 복지재단 (☎070-4124-6451)	p.128		
	기관추천 상상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신규 장학생 100명(중등 30명, 고교 70명) 선발 예정 학습 용도 장학금 중등(50만원*2개 학기) 고교 (100만원*2개 학기) 지원 등 		p.129		
	대학 상상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신규 장학생 200명 선발 예정 학습 용도 장학금 150만원*2개 학기 지원 등 		p.130		
	특성화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장학사업, 교육지원장학사업, 리스타트 장학사업, 문화예술 장학사업, 수시 장학사업, 인재육성 장학사업 		p.131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장학금(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원) 국가근로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p.132		
학습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	연령에 관계없이 학력취득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 6년 과정, 중학교 3년 과정,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 학력 인정 (학기 단축의 경우 초등 2년, 중·고등 1년 단축 가능)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869)	p.134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무안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비 지원(연 1회 지급) 방과후학교 이용권,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학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34	
	KT&G 복지 재단 취약계층 지원사업	행복 가정 학습 지원	중위 소득 8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관련 물품 구입비 20만원 지원(1회) 	KT&G 장학재단 (☎02-563-4459)	p.135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공동 생활 가정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활동비 50만원 지원(1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	초1 ~ 고3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재양성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 프로그램 지원 : 발대식, 학업컨설팅, 멘토 만남 및 특강, 멤버십 활동 등 	초록우산 아이리더 (☎1588-1940)	p.136	
	아이들과 미래재단 교육 지원사업	각 사업별 지원 내용 및 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루터기 학습멘토링'같이예듀', 천천히 함께, 버버리재단 버버리 인스파이어 창의예술융합교육, 카카오모빌리티 주니어랩, 한국알콜그룹아트그린예술교육, 현대위아 모빌리티스쿨, 카카오뱅크 모두의 코딩 LAB 	아이들과 미래재단 (☎02-843-8478)	p.137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양육 지원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한부모가족의 학업중단 위기를 예방하고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단기 위탁교육기관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제공 	각 위탁교육기관 현황별 상이	p.13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등4~중등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청소년농업진흥원 (☎02-330-2892)	p.139
	청소년 치료재활 센터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센터)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9~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행동 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장기과정(1~4개월), 단기과정(2주 이내),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740)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053-665-6924)/ 청소년안전망누리집	p.139
	기타	진로 및 진학 주요 정보 검색사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리어넷, 워크넷,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등 	-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산모 및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정보제공 및 상담)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 지원센터 우리동네 키움포털 (돌봄서비스 및 시설 검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기관 홈페이지 참고 	p.141	
임신 출산 지원 사업	국민 행복카드	서비스 별로 지원대상과 자격 상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p.142
	해산 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출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산급여: 출산 및 출산 예정 시 1인당 70만원 긴급복지 해산비: 1인당 70만원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p.14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거주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신청	p.146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일정기간 지원 월 1회 집합교육, 상담, 가정방문 형태로 실시 보충식품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거주지 보건소	p.14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 보험의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 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 포함) 출산급여 총 150만원 	고용노동부 (☎1350)	p.146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주: 50만원 / 22 ~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거주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129	p.14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구소득 상관 없이 해당 영유아의 부모	•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미숙아: 체중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거주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129	p.147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지원	가구소득 상관 없이 해당 영유아의 부모	• 검사비지원 : 신생아 선청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지원 :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일부) 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환아관리: 질환에 따른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p.14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가구소득 상관 없이 해당 영유아의 부모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p.148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 고용보험 가입자 및 가입기간 180일 이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 1~3개월 월 통상 임금의 100%(최대 300만원) • 4~6개월 월 통상 임금의 100%(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 임금의 80%(최대 160만원) • 최대 1년 동안 지급 가능(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사용기한: 최대 1년 6개월 가능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기간 내 총 4번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 ☎1350	p.149	
자녀 성장 지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만 9세~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 지원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3	p.150
	자녀 장려금	부양자녀 요건 및 소득 요건 충족자	•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최대 100만원) 지급	국세청 홈택스 ☎126	p.151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아름다운 동행 위시박스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8세~19세)	• 법적 한부모가족에 속한 미성년 자녀에게 장래희망 실현에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녀의 원활한 재능개발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ex) 악기, 미술도구, 운동용품 등	아름다운 동행 ☎02-737-9595	p.151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p.152
	부모급여	만 0~23개월 아동	• 만0세 아동: 월 100만원 만1세 아동: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장애 아동수당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 중증장애인: 매월 9 ~ 22만원 • 경증장애인: 매월 3 ~ 11만원 ※ 수급 급여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름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복지로	p.153
	가정양육 수당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24개월이상~86개월미만 아동	•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지원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중위소득 65% 이하의 부 또는 모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18세 이하 자녀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577-4206	p.154
	시간제 보육지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양육수당 수급자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단가: 5천원(지원단가: 3천원, 본인부담: 2천원)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p.154
	방과후 보육로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용	•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아동: 특수교사 별도 배치, 장애아보육료의 50% • 방학동안 종일제 보육 실시한 경우 - 일반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100% 지원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p.155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0~5세 아동	• 나이와 시간대에 따라 보육료 지원	교육부 (☎02-6222-6060)	p.155		
	유아학비 지원	• 만3~5세 (매년 1월1일 현재 만3세이상) •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 지원 •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1544-0079)	p.155		
돌봄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0세(3개월) ~ 만 36개월 영아 돌봄 지원 • 시간제: 0세(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지원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표전화 (☎1577-8136)	p.156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아동 1명 당 최대 1,080시간 이내의 돌봄서비스, 휴식 지원 프로그램 지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p.157	
	서울형 아이 돌봄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서울시 거주 가정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돌봄비 지원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가능(택 1)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친인척육아조력자형(돌봄 활동, 기본시간(40시간) 충족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이용시간 비례지원 -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월 최대 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해도 이월 불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02-2133-6547)	p.157	
	돌봄 제공 기관	지역 아동 센터	지역사회 내 만 18세 미만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아동의 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p.158
		방과 후 아카 데미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초4~중3)	• 방과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02-330-2892~5)	p.158
		우리 동네 키움 센터	6세~12세의 아동	• 정기돌봄 : 일정한 기간(한달 이상)동안 원하는 일정에 이용 • 일시돌봄 : 학교 휴업 및 공휴일,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비정기적 이용 • 학기중: 13:00 ~ 20:00 • 장·단기 방학중: 09:00 ~ 18:00	우리동네 키움포털	p.158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아동 및 청소년 지원 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육아 중인 부모	• 서울장난감도서관 : 장난감 및 도서, 육아용품, 백일·돌상 대여/ 장난감 수리 및 기부·교환 • 전자책도서관 : 제약 없이 육아 관련 도서를 포함한 전자책 무료 이용 (1회 최대 5권까지 대출 가능) • 아이사랑플래너 양육상담 : 양육·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지원 •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 심리상담, 노무상담, 법률상담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02-772-9814~9)	p.159
	드림 스타트	0세(임산부 포함)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만 13세 이상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양육 프로그램 제공	드림스타트 대표번호 (☎02-6454-8500)	p.159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서울시 만 9세~24세 청소년 및 보호자	• 상담지원, 심리검사, 청소년 동반자 등 지원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2-2285-1318)	p.16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만 9세~24세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자립지원, 건강검진 등	서울 25개 자치구 꿈드림	p.160
	시소와 그네 마포아동 복지관 (영유아 통합지원 센터)	취약계층 만 0세~7세 영유아 및 그 가족	• 통합사례관리, 양육정보지원, 양육활동지원, 부모-아동 관계증진지원, 양육상담, 양육지원체계구축, 영유아 가정 관계형성프로젝트(땀동놀이터), 자조공간기반 양육지원, 희망브릿지-영유아발달지원체계구축, 지역사회연계활동	마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02-706-0610)	p.161
	따움 상담센터 (영유아 아동발달 상담실) -동작구	동작구 관내 장애 및 발달 지연,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 및 아동 (초6까지)과 학부모	• 종합심리검사, 놀이평가, 언어검사, 영유아발달검사 등 • 놀이, 언어치료, 인지학습, 사회성증진프로그램, 부모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미술 등 • 1회 25,000원(검사 및 평가비용은 종류에 따라 상이)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은 지원범위 내 치료비 50% 감면	영유아 아동발달상담실 (☎02-825-5575)	p.161
	입양숙려 기간 모자 지원사업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35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40만원 : 미혼모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 50만원 : 가정 내 산후지원 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 최대 1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p.162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취업 및 창업 교육 지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소득조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평가액 산정 방법 • 소득 유형별 조사 방법	-	p.163
	고용 노동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수급자격 별 대상 유형 확인	• 취업활동계획, 취업지원서비스, 구직활동지원 등 •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고용노동부 (☎1350)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p.170
	보건 복지부 자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지원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171
	국민내일배움 카드제	국민 누구나 (제외대상 확인)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후 5년간 지원(훈련비, 훈련 장려금 및 훈련비 환급)	고용노동부 (☎1350)	p.175
	서울커리어업 (우먼업)	취업 및 창업 희망 여성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취업·창업정보,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서울 우먼업 (https://www.seoulwomanup.or.kr)	p.176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 여성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사후관리, 취업 연계 등 one-stop 종합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p.177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러닝 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춘 창업 및 점포경영 관련 무료 인터넷 교육 제공 • 업종전문기술 교육, 경영개선교육, 상생협약교육 등	소상공인 교육 (http://edu.sbiz.or.kr) 오프라인 (☎1544-1199)	p.178
창업 자금 대여	미소금융 사업수행 기관창업·운영자금	신용평점 100분의 20,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등	• 창업자금: 7천만원, 최대 6년 • 운영자금: 2천만원, 최대 5.5년 •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최대 5.5년 •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최대 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4.5% 이내 금리 적용)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p.179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저소득 여성가장 중 중위소득 70%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일부) 소재 창업자	• 창업 기본 교육 및 준비 상담 • 창업자금 최대 3,000만원 무이자·담보·보증 • 성실상환 시 최대 200만원 상환금 감액 • 1:1 맞춤 창업 컨설팅 • 사후관리	열매나눔재단 (☎02-2038-8514)	p.180
	저소득 여성가장 네일아트 취·창업 지원사업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네일아트 국가 자격증 소지자	• 재단 운영 네일숍 인턴 근무(최소 4개월, 최대 6개월) • 활동 장학금 제공, 관련 교육 제공, 전문가 코칭 등		p.180
	한부모여성 창업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돌보는 중위소득 70%이하 한부모 여성 가구주	• 보증금 포함 창업 대출금 4,000만원 지원(8년 상환/이자1%)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 전후 1:1 사례관리자 동행 •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통합 지원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p.181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생활비 대출 및 지원	한부모여성 재기지원 사업	만자녀 기준 고3 이하 자녀 양육중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여성가족	•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비 및 생활안정금 1인당 최대 350만원 지원 • 긴급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아이돌봄비 1인당 최대 145만원 지원 •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대면 네트워크) 지원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p.18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하는 훈련생,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취약계층	• 지원내용 : 1인당 1,000만원 이내 대출(월별 한도액 200만원 이내) • 이자율: 1%(신원보증료 별도) • 총 140시간 이상의 집체 및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	근로복지서비스 (☎1588-0075)	p.183
	생활안정 자금	각 항목별 신청 대상 및 내용 확인	• 생활필수자금 6종에 대해 저금리 대출 지원 (훈련비, 의료비, 노부모양육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 양육비)	근로복지서비스 (☎1588-0075)	p.186
국세 정책 제도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소득 요건 및 자격 확인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을 지급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국세상담센터 (☎126)	p.194
	청년내일 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19~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 연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p.198
자산 형성 지원	꿈나래 통장	중위소득 80%이하의 만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의 부모 (서울시 거주)	•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저축하면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매칭하여 적립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 저축액의 50% 적립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꿈나래통장콜센터 (☎1688-1459)	p.198
	디딤씨앗 통장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 일정 금액을 아동이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월 10만원 내에서 1:2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 • 적립가능 금액: 월 최대 50만원, 연 600만원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www.adongcda.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p.199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의료 지원	KT&G 복지재단	성인 보호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2인 이상 가정 내 보호자 (중위소득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검사비, 보장구 구입비 최대 100만원 지원(간병비 제외)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사회사업 부서 등을 통한 신청 및 집행(개인 신청 불가) 	KT&G 복지재단 (☎02-563-4459)	p.201
		아동 의료비 지원	저소득 가정 아동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청소년 (8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검사비, 보장구 구입비 등 최대 500만원 지원(간병비 제외) 병명 제한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사회사업부서 등을 통한 신청 및 집행(개인 신청 불가) 	KT&G 복지재단 (☎02-563-4459)	p.202
	(재)아름다운동행 개인수술 지원 사업	저소득가정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안수술에 필요한 수술비 및 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매월 2명 선정하여 지원 복지사업 수행단체를 통해 신청(개인신청불가) 	나눔사업팀 (☎02-737-9595)	p.203	
	한국여성재단	치과 진료 분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 한부모 또는 여성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과진료비(교정치료 지원불가) 사례당 최대 300만원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가능) 재단에서 연계된 치과에서만 진료 가능 2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및 1년 이내 일반치료 지원 받은 자 불가 개인 직접 신청 불가, 추천 단체 통해 이메일 접수 	한국여성재단 (☎02-336-9689)	p.203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의료비 지원	의료소외계층,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 다문화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비·입원비 :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률(50~100%) 결정 진료과목: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지원불가: 접수비, 외래 약,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정신의학과, 치과 등 	온드림 희망진료 센터 (☎02-2002-8683)	p.204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치료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자 향후 예상 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함 재단 지원 치료비 100만원 + 네이버 해피빈 모금액 대상자 직접신청 불가, 등록된 시설, 단체, 기관만 신청 가능 	우천복지재단 (☎02-851-6798)	p.205	
	아산사회복지재단 SOS의료비지원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등 고액의 긴급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의료비 및 재산 정도를 심사 후 차등지원)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 1회 지원 해당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온라인 접수)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p.206	
보아사회공헌재단: 의료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00% 이하, 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심사 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과,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 약 10~12개 과목, 50~60개 이상 치료 항목 지원 비급여 치료(특히 치과)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가능 * 예시(임플란트, 치과 치료, 수술비, 검사비, 입원 및 외래 치료비) 	대표전화 (☎1661-1402)	p.206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위기 지원	대한적십자사	위기상황으로 의료비부담이 큰 취약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생계·주거 등과 연계한 통합지원 가능 	대한적십자사 지역지사 서울 (☎02-2181-3104~6)	p.207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 제도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위기 사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그 밖에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민간기관·단체 프로그램 연계, 상담지원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 상황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긴급복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및 기타 연료비 등 지원 1회 지원, 처음지원 시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 지원 가능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다산콜센터 (☎120)	p.210
	바보의나눔: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 위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 (중위소득 1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신청 불가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 사례관리 가능 기관 신청(개인 신청 불가) 	바보의나눔재단 (☎02-727-2511)	p.211
	신한희망재단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위기상황 겪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 연계 사례관리 기반으로 한 영역별 지원(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를 통한 표창 및 포상지원, 집중사례 기관 모니터링 운영비 지원 전국 사회복지 유관기관에서 신청(개인신청 불가) 	신한희망재단 (☎02-6424-1501~2)	p.212
	이랜드복지재단 위기 지원사업 'SOS위고(WE GO) 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비: 일반치료비(수술비/입원비), 수술시 발생하는 보장구 등 최대 500만원 생계비: 수도광열비, 식료품비, 의복비, 공공요금 등 최대 300만원 주거비: 월임대료, LH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 최대 300만원 자립비: 치과진료비, 취업자격 교육비(최대 500만원), 간병비, 자녀돌봄비(최대 200만원) 물품비: 생필품, 식료품 의류(물품) 30만원 사례관리 기관에서 신청(개별신청 불가) 	이랜드복지재단 (☎02-2644-0110)	p.213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중위소득 100%이하인 위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시도자, 자살의도자, 자살 유가족 등은 중위소득 140% 이하 적용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화재복구비, 심리 치료비 등 사례관리 기관에서 신청(개별신청 불가)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p.213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저소득 한부모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용 쌀 할인 지원 지역 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 요금 감면 과태료 50% 이내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p.21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방)주거지의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 (냉방)에어컨 보급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p.215
에너지 바우처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 냉·난방비 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p.215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15~30% 지원(가구당 30만원 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선신청 필요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온라인 신청 고객센터 (☎1551-1212)	p.215
운전면허 무료 교육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운전면허시험 교육 총 12시간 지원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각 지역 디딤돌운전면허 지원센터	p.216
스포츠 강좌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5~18세 유·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에서 확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p.216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5만원)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p.216
4대궁·종묘·조선 왕릉 무료입장	한부모가족	4대 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각 궁, 종묘, 왕릉 관리사무소	p.217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중위소득 125% 이하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양육비 이행 상담 (☎1644-6621)	p.217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 안내	법원에 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보육료, 가족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p.218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지원, 추심소송, 제재조치, 모니터링, 양육비 선지급제, 면접교섭 등의 서비스 지원 	양육비 이행상담 (☎1644-6621)	p.219
환경보건 이용권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서비스 진료비: 1인당 이용권 100,000원 지원 실내환경컨설팅: 경보수, 청소 등 실내환경 개선 지원 	환경보건이용권 상담센터 (☎1544-0331)	p.223
온가족보듬사업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사례관리, (손)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출산·양육지원 등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가족센터 대표번호 (☎1577-9337) 가족상담전화 (☎1644-6621)	p.223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완화	다인, 다자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인정 승용차: 2,0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2,500cc 미만(6인 이상 또는 자녀 3명 이상 가구) → 10년 이상 또는 1,000만원 미만 승합차: 소형 이하 → 10년 이상 또는 1,000만원 미만 생업용 차량: 2,000cc 미만 1대 → 차량가액 재산 산정 제외 	-	p.224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질병 및 장애 등으로 가사와 질병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 지급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72시간(이용자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시간당 단가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p.224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p.225
여행 활동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지방 지역 내 개별 숙박여행(1박 2일) 상품 1박 2일 여행상품(조식 및 1식 포함), 숙소 부대 시설 이용권 및 여행자 보험 포함 인근 관광지 액티비티 체험권(남산타워 케이블카, 영화 티켓 등) 포함 	서울시 관광정책과 (☎02-2133-2787)	p.225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방: 벽걸이 에어컨(7평형) 난방: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p.226
사랑의 PC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기타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중고PC와 자치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 받은 중고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급 보급 후 2년간 AS지원(☎02-2133-1230) 	서울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1)	p.227

생활 영역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12세 이하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지원 총 19종 	보건소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p.228
긴급 비상 전화번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다산콜 ☎120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고민 상담) ☎1388 한국여성인권진흥원(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긴급 전화상담 및 보호) ☎1366 어플(앱) 어플 '다들어줄게' 	-	p.228
보아스 사회공헌재단 '보리'의료비 지원	중위소득100% 수도권 거주자	안과, 치과, 내과, 정형 및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비 지원	보아스사회공헌재단 (☎1661-1402)	p.229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	-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중증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각 상급종합병원	p.230

1 법률 및 금융 지원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 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 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자(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학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 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 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 						
법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관련 상담 및 소송수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비혼 양육부·모</td> <td>- 자녀 인지 청구소송 -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td> </tr> <tr> <td>이혼 양육부·모</td> <td>-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비혼 양육부·모	- 자녀 인지 청구소송 -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이혼 양육부·모	-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구분	내용						
비혼 양육부·모	- 자녀 인지 청구소송 -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이혼 양육부·모	-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지원 내용	<p>지원 절차</p> <p><small>*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적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문, 화해공고 결정문, 공판중서 등이 있습니다.</small></p>						
추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권원 확보(명령, 이행확보 소송 등) - 강제 집행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불이행 반복 시,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 채무자 재산 압류 및 강제 경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소유재산을 압류·강제경매 						

구분	내용
가사소송법	- 이행명령 - 직접 지급명령 - 담보 제공 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 과태료 처분 재판 - 감치재판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 재산 명시 - 재산 조회
<p>지원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1 지원 신청</p> <p>양육부·모가 추심 지원 신청</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2-1 이행청구서 통지</p> <p>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 통지</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2-2 이행의사확인 및 조사</p> <p>- 채무자의 합의의사 확인 - 채무자의 동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 능력 조사</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3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p> <p>- 이행확보소송 - 강제집행 - 현장지원반</p> </div> </div>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구분	내용
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 또는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말합니다.
제재구분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상세 내용 참조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121/contents.do)
- 현장지원반	
구분	내용
고액·고질적 체납자	- 지급 지연으로 고액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 양육부·모를 직접 방문하여 채무자의 현황 및 사정 파악 후 양육비 지급 촉구 - 소송, 추심, 명령 등 모든 수단과 방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습 또는 악의적 체납자 방문 조치
감치 미집행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감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감치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사회적 파장	- 고액·고질 체납, 감치 미집행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킨 양육비 채무자 방문 조치

구분	내용
전화상담	- 대표 번호: 1644-6621 - 이용 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방문상담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 스퀘어) 24층 - 이용 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09:00~11:00 / 13:00~17:00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전화 예약: 1644-6621, 1번 연결, 온라인 예약) • 방문 상담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하루 30분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방문상담 예약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양육비 상담 신청'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소통·참여-온라인상담]메뉴에 접속하시면 되고, 상담 신청 및 조회는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 절차 안내: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 상담글 입력 > 상담 신청 • 본인인증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현황 조회: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소통·참여-온라인 상담 답변]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자신의 상담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사실관계 및 질문의 요지를 2,0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 온라인 상담은 질문자의 상담 신청 내용에 근거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생략되거나 지나치게 방대할 경우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 상담신청 시 파일은 첨부할 수 없으며 질문내용에 단순히 다른사이트를 링크해 놓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접수일 다음 날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을 등록해 드립니다.
온라인상담	
-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별면접교섭	- 중재: 면접교섭 방법 시간·자녀·인도방법등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 - 상담: 양육부·모, 자녀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갈등관리를 위한 개별상담 등 - 모니터링: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후 당사자 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집단면접교섭	- 상담·교육·체험활동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친해질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제공
지원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1 신청 상담</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2 접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3 서비스 진행</p> <p>바른관계 과상담 코 모니터링</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4 종결</p> </div> </div>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및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모두 신청 가능
제출서류	- 면접교섭 신청서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판결문(결정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1통(사본)
신청방법	- 면접교섭서비스 수행 가족센터에 직접 신청 • 전국대표전화(☎1577-9337)를 이용하시면 이용자분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가족센터로 연결됩니다. • 홈페이지(www.familynet.or.kr)를 통해서도 가까운 센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1)

구분	내용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등의 지원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협의 또는 법적 조치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밝히고 양육비를 지급하면 업무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합의를 작성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자녀 나이 만 19세가 되기 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안심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불이행 상황 확인 시 이행확보 조치를 연계합니다.
지원절차	<p>지원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1 이행 여부 확인</p> <p>모니터링 서비스 - 양육비 이행 지급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은 양육자(양육부·모, 양육비 채권자 등) 대상</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2 이행 확인 시</p> <p>지속적인 점검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 모니터링</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3-1 이행 확인 시</p> <p>사전 지속 관리 및 관련 상담</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3-2 불이행 확인 시</p> <p>소송 등 이행확보 조치 재연계</p> </div> </div>

구분	내용
조사 정보 지원	- 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이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원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1 기본 조사</p> <p>관련기관 자료 협조 요청 -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2-1 기관 협조</p> <p>경보조회 등의 시 또는 행사력 양육에 긴급지원 권의 경우 - 관련 기관 및 금융 기관에서 경보 확인</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2-2 조희 신청(법원)</p> <p>경보조회 부동의 시 - 조희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재산 경보 신청</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width: 20%;"> <p>3 추심 및 소송</p> <p>소득, 재산 등 자료 확보 시 - 기관 협조, 법원 판결 등으로 자료를 확보했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추심</p> </div> </div>

구분	내용
양육비 선지급 제도	-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만 18세 이하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단, 4개월 중 한번이라도 양육비 채무가 전부 이행된 월이 있을 경우는 대상 제외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지원내용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매월 지급 -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p>-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홈페이지 상단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이용 • (우편 등) 홈페이지 상단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절차	자가진단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월 20만원, 단 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미만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날인원본) 1부 - 개인정보 동의서(날인원본) 1부 - 집행권원 1부 - 송달 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선지급금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지원절차	신청 →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지급 및 모니터링 → 반환 또는 회수
문의	<p>-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1644-6621</p>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구분	세부내용						
법률구조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 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						
법률상담	- 가사, 민사, 형사, 파산 및 면책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 제공						
소장 등 서류작성	-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소송구조 대상자가 아니어도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담소 구조 요건에 따라 무료 소송서류 작성						
화해조정	- 당사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상담소에 내방하게 하여 조정 진행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폭력피해여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개인회생 및 면책신청대상자 -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td> </tr> <tr> <td>지원내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구조 대상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또는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 혼인 취소(또는 혼인 무효)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또는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상실 및 친권제한 등 •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 친생자출생신고 • 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 파양,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또는 정정, 성 변경 • 부양, 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 피해자 보호명령 등 • 이상의 사건들과 관련한 가압류(또는 가처분), 사전처분, 강제집행, 이행확보 사건 등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폭력피해여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개인회생 및 면책신청대상자 -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구조 대상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또는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 혼인 취소(또는 혼인 무효)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또는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상실 및 친권제한 등 •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 친생자출생신고 • 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 파양,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또는 정정, 성 변경 • 부양, 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 피해자 보호명령 등 • 이상의 사건들과 관련한 가압류(또는 가처분), 사전처분, 강제집행, 이행확보 사건 등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폭력피해여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개인회생 및 면책신청대상자 -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구조 대상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또는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 혼인 취소(또는 혼인 무효)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또는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상실 및 친권제한 등 •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 친생자출생신고 • 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 파양,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또는 정정, 성 변경 • 부양, 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 피해자 보호명령 등 • 이상의 사건들과 관련한 가압류(또는 가처분), 사전처분, 강제집행, 이행확보 사건 등 						
소송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의 소송 -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과태료·감치·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등 다양한 신청제도 활용으로 법적 절차 무료 도움 진행 -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소송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지원 - 다문화가정문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가사 관련 문제 및 상담, 소송구조 지원 - 개인파산 및 면책·개인회생 											
소송구조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입증방법 및 소명자료 											
신청방법	- 절차: 상담진행 →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상담방법											
	구분	내용	대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이용시간: 월~금 10:00~17:00 (16:00까지 접수) - 매주 월요일 야간상담 진행: 18:00~21:00 (19:00까지 접수) ※ 점심시간: 12:30 ~ 13:00 	외국인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seling in English for Foreigner - 1644-7077(영어 상담은 전화로 사전 예약해 주세요) - 이용시간: 매주 월요일 18:00 ~ 20:00 (19:00까지 접수) 	출장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가정법원(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종합민원실 - 무료 출장상담 진행: 월~금 10:00~17:00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번호: 1644-7077 이용시간: 9:00 ~ 18:00 	온라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방법 : 메인화면 상단 '사이버상담실' 접속 → 상담글 입력 → 상담 신청 완료 - http://lawhome.or.kr 사이버상담실
	구분	내용										
	대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이용시간: 월~금 10:00~17:00 (16:00까지 접수) - 매주 월요일 야간상담 진행: 18:00~21:00 (19:00까지 접수) ※ 점심시간: 12:30 ~ 13:00 										
	외국인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seling in English for Foreigner - 1644-7077(영어 상담은 전화로 사전 예약해 주세요) - 이용시간: 매주 월요일 18:00 ~ 20:00 (19:00까지 접수) 										
출장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가정법원(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종합민원실 - 무료 출장상담 진행: 월~금 10:00~17:00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번호: 1644-7077 이용시간: 9:00 ~ 18:00 											
온라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방법 : 메인화면 상단 '사이버상담실' 접속 → 상담글 입력 → 상담 신청 완료 - http://lawhome.or.kr 사이버상담실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http://lawhome.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복지법률지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지원: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시민 - 법률 상담: 법률 상담이 필요한 서울 시민 및 복지시설 등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10시 ~ 17시 • 신청방법: 1670-0121로 전화 - 인터넷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이용 ※ 방문상담은 사전예약한 경우에만 가능함
상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채권채무, 손해배상 등) - 가사(혼인관계, 모자관계, 신분관계, 일반상속 등) - 주거(임대차, 전세사기, 공공 주택 등) - 후견(성년후견, (시설) 미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 행정(조세, 난민, 토지수용, 도시정비 등) -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 형사(강력 범죄, 재산범죄, 신용범죄 등) - 보호(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인신보호 등)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 무연고사망자 재산 처리 - 청년부상제대군인 법률상담 - 노동 - 기타 법률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http://swlc.welfare.seoul.kr) - 복지 법률 종합상담전화: ☎1670-0121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분	세부내용						
민사, 가사사건	<p>-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 대상자,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 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p>						
형사사건	<p>-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 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조사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법률상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챗봇상담</td> <td>- 법률상담 사례, 법률 서식 정보, 공단 위치, 상담 예약 등</td> </tr> <tr> <td>면접상담 (예약)</td> <td>- 상담방법: 예약+공단+방문+면접상담(예약 원칙) - 이용상황(주 이용 고객):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 - 제공시간: 평일 10시 ~ 17시(12시~13시 불가) - 상담시간: 20분 이내 - 1일 최대 상담건수: 제한 없음 - 유의사항</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챗봇상담	- 법률상담 사례, 법률 서식 정보, 공단 위치, 상담 예약 등	면접상담 (예약)	- 상담방법: 예약+공단+방문+면접상담(예약 원칙) - 이용상황(주 이용 고객):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 - 제공시간: 평일 10시 ~ 17시(12시~13시 불가) - 상담시간: 20분 이내 - 1일 최대 상담건수: 제한 없음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챗봇상담	- 법률상담 사례, 법률 서식 정보, 공단 위치, 상담 예약 등						
면접상담 (예약)	- 상담방법: 예약+공단+방문+면접상담(예약 원칙) - 이용상황(주 이용 고객):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 - 제공시간: 평일 10시 ~ 17시(12시~13시 불가) - 상담시간: 20분 이내 - 1일 최대 상담건수: 제한 없음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상담은 예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 예약 접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00부터 시작됩니다.(매일 예약이 가능합니다) • 당일 예약 접수가 마감된 경우 근무일 기준 익일 9:00에 다시 예약 접수가 시작됩니다.(오늘 예약을 하면 각 기관에서 설정한 접수기간 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노쇼(예약취소 없이 내방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제한)의 경우 예약이 제한됩니다.
132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방법: 국번 없이 132전화를 통한 실시간 상담 - 이용상황(주 이용 고객):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 제공시간: 평일 9시 ~ 18시(12시~13시 불가) - 상담시간: 5분 이내 - 1일 최대 상담건수: 제한 없음 - 유의사항: 시간대별 직원 수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채팅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방법: 132전화, 챗봇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채팅 상담 - 이용상황(주 이용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 제공시간: 평일 10시 ~ 17시(12시~13시 불가) - 상담시간: 10분 이내 - 1일 최대 상담건수: 50~100건 - 유의사항: 상담 인원 제한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화상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방법: 예약 일시에 화상을 통한 예약상담 - 이용상황(주 이용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동불편 취약계층 우선 이용+서류를 보여줄 필요+100자 이상 상담 내용 기재 - 제공시간: 예약 일시 - 상담시간: 20분 이내 - 1일 최대 상담건수: 40~60건 - 유의사항: 상담 인원 제한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이버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방법: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에서 상담신청 - 이용상황(주 이용 고객):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고객 - 1일 최대 상담건수: 70건 - 유의사항: 1일 상담 건수 제한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 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 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 고객을 위하여 상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전문분야</th> <th>상담기관</th> <th>전화번호(국번없이)</th> </tr> </thead> <tbody> <tr> <td>세무 상담</td> <td>국세청</td> <td>126</td> </tr> <tr> <td>소비자 상담</td> <td>소비자상담센터</td> <td>1372</td> </tr> <tr> <td>고용관계(실업급여 등)</td> <td>고용노동부</td> <td>1350</td> </tr> <tr> <td>금융분쟁</td> <td>금융감독원</td> <td>1332</td> </tr> </tbody> </table>	전문분야	상담기관	전화번호(국번없이)	세무 상담	국세청	126	소비자 상담	소비자상담센터	1372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	금융감독원	1332
전문분야	상담기관	전화번호(국번없이)														
세무 상담	국세청	126														
소비자 상담	소비자상담센터	1372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	금융감독원	1332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홈닥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구조기관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월~금 10:00~17:00 인근 기관 연락처로 문의 - 필요시 예약 후 방문 상담
문의	-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 지역별 법률홈닥터 배치 기관으로 연락 (아래 표 참고)

1) 지역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시도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시도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15)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7	인천 / 경기 (13)	인천 강화군청	032-932-7179
	강서구청	02-2600-6530		인천사회복지협의회	032-437-7432
	광진구청	02-450-7408		경기 광주시청	031-760-3795
	노원구청	02-2116-3508		경기 구리시청	031-5550-2575
	도봉구청	02-2091-3009		고양 덕양구청	031-8075-5600
	동작구청	02-820-9612		광명시청	02-2680-6507
	마포구청	02-3153-8529		남양주시청	031-590-8721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1	1577-1701		동두천시청	031-860-2036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2	1577-1701		성남시청	031-729-2493
	서대문구청	02-330-1558		안산시청	031-481-259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안성시청	031-678-2178
	양천구청	02-2620-3352		오산시청	031-8036-7427
	은평구청	02-351-7020		이천시청	031-645-3855
	종로구청	02-2148-1384			
	강원 (2)	삼척시장		033-570-3633	대전 (9)
속초사회복지협의회		033-639-2632	대전 유성구청	042-611-2931	
			대전광역시청	042-270-2384	
			논산시청	041-746-6044	
			서산시청	041-664-1739	



시도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시도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아산시청	041-540-2075
				천안시청	041-521-3292
				충북 사회복지협의회(청주)	043-238-0843
				충주시청	043-850-5959
광주 / 전라 (4)	광주 남구청	062-607-2249	대구 / 경북 (9)	대구 달서구청	053-667-3541
	광주 서구청	062-360-7039		대구 동구청	053-667-6921
	순천시청	061-749-3394		대구 북구청	053-665-3123
	익산시청	063-858-9280		대구 수성구청	053-666-2667
				대구중구청	053-661-2148
				경산시청	053-810-5925
				구미시청	054-480-5149
				영주시청	054-639-6059
				포항시청	054-270-5754
부산 (3)	부산 사상구청	051-310-4317	울산 / 경남 (3)	울산광역시청	052-229-2278
	부산 수영구청	051-610-4027		진주시청	055-755-7560
	부산 해운대구청	051-749-5689		창원시청	055-220-5466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 마을변호사

구분	세부내용
마을변호사란?	-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주치의 같은 변호사가 '마을 변호사'입니다.
지원대상	-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지원내용	-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 변호사와 법률상담 진행 - 원격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원칙
신청방법	구분
	전화상담



	방문상담	-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 송부 -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현장상담	- 희망자 수, 마을 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 진행 -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 문의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고객센터: ☎02-2110-3000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홈페이지 상단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경찰] - [마을 변호사] - [자료실] 접속 · '마을변호사 지역별 배정 현황' 통해 각 지역별 문의처 확인 가능 	

□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신용회복위원회)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 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 상황이 어려운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회생·파산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채무 상담을 통해 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채무 상황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파산 제도 안내 - 개인회생·파산 법원 서류 작성 및 신청 무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회생·파산 법원 신청 서류 작성 ·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송구조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원 신청 무료 지원 - 개인회생·파산 진행 비용 무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무료 지원 -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상담보고서: 채무자의 채무, 가계수지(수입, 지출), 재산 등 정보를 조사하여 채무조정 제도(위원회, 법원)별 지원 효과를 보여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발급보고서 · 대법원 예규에 따라 신용상담보고서의 '신청인 채무내역'은 부채증명서로 활용 가능 - 지원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종합 상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 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 법원 - 개인회생·파산 접수 및 절차 진행 </td> </tr> </table>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종합 상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	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	법원 - 개인회생·파산 접수 및 절차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종합 상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	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	법원 - 개인회생·파산 접수 및 절차 진행		



신청방법	- 준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원 신청 서류는 별도 상담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각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문의	- 홈페이지 (http://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 해외: ☎+82-2-6337-2000



□ 금융복지상담 · 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금융복지 서비스(재무상담, 채무조정, 복지자원 연계 등)가 필요한 저소득가구 또는 금융취약계층
지원내용	- 재무 상담 • 고객의 자산·부채 상태와 수입·지출 현황을 토대로 맞춤형 재무 설계 제공 - 채무조정 지원 •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회생 지원 - 복지 서비스 연계 • 금융상담 서비스 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복지자원 연계
신청방법 및 문의	- 전국 금융복지 상담지원센터로 문의 (아래 표 참고)

1) 전국 금융복지상담 · 지원센터

지역	센터명	주소	관할	연락처
서울 (10)	중앙	동작구 현충로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6층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1644-0120
	도봉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도봉구청 지하 1층 종합상담센터 내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	중랑구 면목로 242, 중랑자전거등록나눔센터 2층 내	중랑구, 강동구	
	성북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세무종합민원실 옆	성북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성동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층 행복민원실 내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마포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6층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LH서울서부 주거복지지사 1층	영등포구, 용산구	
	금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내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청년동행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	서울시 전역	
경기 (20)	원스톱센터 (중앙센터)	의정부시 평화로 325, 5층	경기도 전역	1899-6014
	동부권역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6층	하남시 및 동부권역	
	광주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 성남시, 양평군	
	남양주	남양주시 경춘로 953, 2층	남양주시, 가평군	
	안성	안성시 고수2로 11	안성시	
이천	이천시 부악로 40, 1층	이천시, 여주시		



지역	센터명	주소	관할	연락처
경기 (20)	서부권역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8, 2층	군포시 및 서부권역	
	부천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부천시, 광명시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3층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김포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80번길 55, 3층	김포시	
	시흥	시흥시 함송로29번길 67, 3층	시흥시	
	남부권역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0번길 23, 4층	수원시 및 남부권역	
	용인	수지구청 1층	용인시	
	평택	평택시청 민원실	평택시, 오산시	
	화성	화성시 여울로2길 33, 1층	화성시	
	안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11, 1층	안산시	
	북부권역	양주시 고읍남로 6-14, 5층	양주시 및 북부권역	
	고양	고양시청 신관 1층 종합민원실	고양시	
	파주	운정 1,2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연천군	
구리	구리시청 1층 민원실	구리시		
광주 (1)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광주시 무진대로211번길 28		062-954-0019
전남 (3)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5층		061-727-2590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서부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4층		061-285-3980
	해남상담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1층		061-533-3990
경남 (2)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1층		055-716-8171~5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진주)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		055-794-2761~2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채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자
지원내용	- 종합상담 • 1:1 신용·재무상태 진단, 노후설계, 재산형성지원, 창업·운영 컨설팅 등 지원 -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채무상태와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하고 최장 8년 동안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 가능) 등 지원 •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대출 상환 부담이 과중한 개인채무자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고객이 대상이 된다.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가능) 등 지원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연계 지원 - 자금지원 •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상담·지원 - 고용·복지 연계 • 지자체, 고용·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상담, 취업 안내,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전화 상담: ☎1397 (월~금 9:00~18:00 / 야간상담 18:00~20:00) - 방문 상담: 월~금 9:00~18:00(토, 일요일, 공휴일 미운영) • 전국 센터 중 가까운 센터로 방문 (아래 표 참고)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대표번호: ☎1397

1) 전국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지역	센터명	주소
서울 (6)	강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3층
	양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광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6, 호산빌딩 9층
	노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3층
	중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인천 (2)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계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계산동), 삼한1빌딩 2층



지역	센터명	주소
경기 (11)	부천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성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예미지 빌딩 2층
	고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안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안산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6층
	의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하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3층
	김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49, BYC빌딩 6층
	평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32번길 28, 3층
	구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강원 (4)	춘천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강릉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5층
	원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속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4층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전 (1)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
충남 (3)	천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11층
	보령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아산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7층(충무빌딩)
충북 (2)	청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부산 (3)	부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사상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수영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90-5, 메디세움 13층



지역	센터명	주소
울산 (1)	울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 2층
대구 (2)	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98, 현대빌딩 6층
	서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8층
경북 (4)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6층
	구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손해보험빌딩 2층 KB은행
	경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 동천동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안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태화동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경남 (3)	거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 5길 6, 우형빌딩 3층
	진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장대동)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창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생명빌딩 3층
광주 (2)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48(에이원타워), 6층
	북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17, 405호
전남 (2)	목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순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북 (3)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익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6길 39, SK빌딩 11층
	전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타워 3층
제주 (1)	제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한부모가정의료보험1기~3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비 수혜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이며,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내용 (3기)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부양자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질병 후유장애(3~100%)	3,000만원
		암진단비100%(재진단X)	30만원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아동	상해 입원일당(180일)	5만원
		질병 입원일당(180일)_출산제외	5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15만원
		암 진단비100%(재진단X)	500만원
		수술비	8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7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보험기간		- 2024년 7월 31일 ~ 2027년 7월 30일 •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보험금 청구방법	-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전화: ☎02-3471-5116 • 팩스: 070-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금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검색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대표번호: ☎1397		



2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개요

1)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이하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이하
			50년	40㎡이하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60㎡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85㎡이하
	매입임대	LH, 지자체	30년	85㎡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30년	85㎡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60㎡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이하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공고별 상이	제한 없음
	매입임대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1) 통합공공임대

구분	세부내용	
임대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총자산 34,500만원이하, 자동차 4,542만원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 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 우선공급: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일반공급: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공급유형	일반	자격	청년, 신혼부부(예비포함)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선정	추첨으로 선정	
	※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자격	선정
		철거민 등	철거민 등	배점 등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관련기관의추천등
		다자녀 가구 등	다자녀 가구, 만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등	배점 등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	배점 등
	특별·우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등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배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 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배점 및 관련 기관의 추천 등
		비주택 거주자 등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관련 기관의 추천 등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배점 등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 기간 7년 이내 등	배점 등
		고령자	만 65세 이상	배점 등
신생아		만 2세 이하 자녀	배점 등	



2) 영구임대

구분	세부내용	
임대기간	5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 수준)	
공급규모	40㎡ 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수급자 등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총자산 24,500만원이하, 자동차 4,542만원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수급자 등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 일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장애인(1순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장애인(2순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공급유형	일반	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선정: 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
	특별·우선	-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 국가유공자 등 - 귀환 국군 포로 - 수급자 신혼부부

3) 국민임대

구분	세부내용	
임대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 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총자산 34,500만원이하, 자동차 4,542만원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 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 60㎡ 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60㎡ 초과: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공급유형	일반	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순위, 자녀 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 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 초과 -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특별·우선	분류	자격	선정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추천
		영구임대 입주자	영구임대 거주자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 기간 내 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경쟁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사업 지구 철거민	사업 지구 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 대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4) 행복주택

구분	세부내용			
임대기간	2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60㎡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총자산 34,500만원이하(계층에 따라 자산 기준 상이) 자동차 4,563만원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	모든 공급유형 (단,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금액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공급유형	일반	자격	대학생, 청년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선정	순위 및 추천으로 선정	
	특별·우선	분류	자격	선정
		대학생(취준생 포함)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등	순위, 추천 등
		청년 (사회초년생 포함)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활동 합산 기간 5년 이내인 사람 등	순위, 추천 등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 포함)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순위, 추천 등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추천 등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추천 등



5) 공공임대(5년/10년/분납)

구분	세부내용				
임대기간	5년/1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9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기타특별 제외)			
	금액기준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4,563만원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	신혼,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 이하)			
	금액기준	- 60㎡ 이하 일반공급, 생애 최초 우선 공급, 신혼부부 우선 공급: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잔여 공급, 생애 최초 잔여 공급: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공급유형	일반	자격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순위·순차		
	특별·우선	분류	다자녀 특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다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신혼부부 특별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 추첨	
생애 최초 특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추첨		



노부모 부양 특별	만 65세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	순위·순차
국가유공자 특별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처 추천
기타특별	장애인, 철거민 등	관계 기관 추천

6) 장기전세

구분	세부내용				
임대기간	2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8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총자산 : 64,0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이하(2025년기준)			
소득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 60㎡ 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60㎡ 초과: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공급유형	일반	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순위, 자녀 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 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 초과 -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특별·우선	분류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높은 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추천	

영구임대 입주자	영구임대 거주자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혼인 기간 내 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경쟁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사업 지구 철거민	사업 지구 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대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참고

구분	세부내용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0%	1,906,681원	2,933,135원	4,084,214원	4,401,101원
	60%	2,288,018원	3,519,762원	4,901,057원	5,281,321원
	70%	2,669,354원	4,106,389원	5,717,900원	6,161,541원
	100%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120%	4,576,035원	7,039,524원	9,802,115원	10,562,642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원	4,199,292원	5,359,036원	6,494,738원	

□ 임대주택별 세부내용

1) 영구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정해진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	입주자격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⑥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⑩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⑫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민주유공자 및 가족으로,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가구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1순위: 유자녀(임신, 입양 포함), 2순위: 자녀 없음 - 예비신혼부부 수급가구인 경우 순위와 무관하게 건설량의 10% 제공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등록된 국군포로		
순위	입주자격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신청 (신청자→지자체)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입주자 신청 (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계약체결 (공급자→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계약체결 (공급자→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시중 시세의 30% 수준	

2)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구분	세부내용	
	구분	내용
입주자격	기초생활 수급자등	-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③ 기초생활수급자 ④ 만 65세 이상 고령자 ⑤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단,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신청절차 및 방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실구성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아동주거빈곤가구
	긴급주거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아동주거빈곤 가구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 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 운영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 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
주택규모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기간 및 조건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14회까지 재계약 가능 (2년 단위) ※ 1순위 입주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시세의 30% 수준 ※ 전국평균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40㎡의 경우)	



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Ⅱ형)

도심 내 저소득층(예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시중 시세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입주순위	구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신생아 가구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없음)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 가구
소득 자산 기준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4순위: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 분양)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임대기간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 이후 해당 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구분	내용
	수급자 등	-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③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RIRI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⑤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②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비정상 거쳐 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보증거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가 임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 선정되고, 기금 채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 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한함
주거지원시급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분만취약지의 임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부장관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이재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주택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지원금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 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포함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공동생활 가정인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주택 전세 임대 1순위자 중 신규 계약자('19.6.1.이후)는 선택 가능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보증 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를 월 임대료에 가산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 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신청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834 783 2012 825">입주대상</th> <th data-bbox="2383 783 2561 825">신청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834 831 2012 873">수급자 등</td> <td data-bbox="2027 831 2858 873">-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td> </tr> <tr> <td data-bbox="1834 879 2012 921">보증 거절자</td> <td data-bbox="2027 879 2858 921">-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td> </tr> <tr> <td data-bbox="1834 928 2012 1033">공동생활가정 (그룹홈)</td> <td data-bbox="2027 928 2858 1033">- 운영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td> </tr> <tr> <td data-bbox="1834 1060 2012 1138">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td> <td data-bbox="2027 1060 2858 1138">-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td> </tr> <tr> <td data-bbox="1834 1186 2012 1228">이재민</td> <td data-bbox="2027 1186 2858 1228">-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td> </tr> <tr> <td data-bbox="1834 1276 2012 1354">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td> <td data-bbox="2027 1276 2858 1354">-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td> </tr> <tr> <td data-bbox="1834 1381 2012 1459">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td> <td data-bbox="2027 1381 2858 1459">-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td> </tr> <tr> <td data-bbox="1834 1486 2012 1564">신혼·신생아, 청년, 다자녀</td> <td data-bbox="2027 1486 2858 1564">- 입주자 모집 시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td> </tr> <tr> <td data-bbox="1834 1591 2012 1696">소년·소녀 가정 등</td> <td data-bbox="2027 1591 2858 1696">- 입주 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게 신청</td> </tr> </tbody> </table>	입주대상	신청방법	수급자 등	-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증 거절자	-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신혼·신생아, 청년, 다자녀	- 입주자 모집 시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소년·소녀 가정 등	- 입주 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게 신청
입주대상	신청방법																				
수급자 등	-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증 거절자	-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신혼·신생아, 청년, 다자녀	- 입주자 모집 시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소년·소녀 가정 등	- 입주 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게 신청																				
주택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85㎡ 이하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30년 거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중증 장애인,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5)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자 - (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일반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혼인 가구)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혼인 기간 무관)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신혼 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자,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순위: 신혼 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 4순위: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신생아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혼·신생아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지원금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형: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 II 형: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임대조건 (입주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II 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단, 최저금리는 1.0%)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시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형: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II 형: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다만, II 형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6)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 결정하면, 공공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수급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신생아 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음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지원내용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15,500만원, 광역시 1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500만원 •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임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7)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 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신청절차	<p>·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p>											
지원내용	유형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사업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기존주택 매입 임대</td> <td>-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td> </tr> <tr> <td>기존주택 전세 임대</td> <td>-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td> </tr> <tr> <td>운영 기관을 통한 주거지원</td> <td>- 입주자 관리,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 (주거복지재단이 선정)을 통하여 주거지원</td> </tr> <tr> <td>국민임대주택</td> <td>-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 피해자만 해당</td> </tr> </tbody> </table> <p>※ 입주 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p>	유형	사업내용	기존주택 매입 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 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운영 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입주자 관리,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 (주거복지재단이 선정)을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 피해자만 해당
	유형	사업내용										
기존주택 매입 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 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운영 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입주자 관리,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 (주거복지재단이 선정)을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 피해자만 해당											
임대료 및 보증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쪽방·고시원·노숙인 시설 거주자</th> <th>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 피해자</th> </tr> </thead> <tbody> <tr> <td>임대 보증금</td> <td>50만원(고정)</td> <td>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산정방식과 동일</td> </tr> <tr> <td>월임대료</td> <td colspan="2">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td> </tr> </tbody> </table>	구분	쪽방·고시원·노숙인 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 피해자	임대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산정방식과 동일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구분	쪽방·고시원·노숙인 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 피해자										
임대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산정방식과 동일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임대주택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매입임대주택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8) 재개발 임대주택(SH)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하기 위한 도시 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분양전환되지 않음)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특별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합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 대상자 • 당해 재개발사업 지구 철거세입자, 당해 재개발사업 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 포기자,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자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 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 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단,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
자산기준	- 특별 공급은 자산기준이 없으며, 일반공급만 해당 총자산(부채 제외)·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부채 제외)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4천5백만원
	자동차 기준액	차량가액 4,542만원
임대기간 및 보증금	- 임대 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유지 시 최장 10년) - 공급 규모: 전용면적 24~73㎡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25.03기준) • 33㎡ 이하: 임대보증금 5,410,000 ~ 37,400,000원, 월 임대료 64,000 ~ 285,000원 • 33 ~ 39㎡: 임대보증금 10,960,000 ~ 55,790,000원, 월 임대료 119,000 ~ 331,000원 • 39 ~ 49㎡: 임대보증금 17,110,000 ~ 62,110,000원, 월 임대료 138,000 ~ 354,000원 • 49 ~ 59㎡이하: 임대보증금 23,950,000 ~ 76,720,000원, 월 임대료 177,000 ~ 421,000원 • 59 ~ 73㎡이하: 임대보증금 44,020,000 ~ 70,110,000원, 월 임대료 252,000 ~ 344,000원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철거민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분양전환 불가)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신청방법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신청 준비물: 공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임신 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류심사용),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신청절차	1. 우선공급  2. 일반공급 

9) 5·10년 공공임대주택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공급대상	비율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우선공급 (1순위자)	건설량의 25%	-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투기·청약과열 지역은 24개월 경과, 이상 납부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부채는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잔여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한자	-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부채는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주택유형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자모집 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 입주자 저축(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 ·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자대상 선정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입주 리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10) 임대주택 공급기관

구분	공급기관		전화번호
전국	LH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1600-1004
시도	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051-810-1200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개발공사	053-350-0300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032-260-500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600~7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042-530-9200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052-219-8400
	경기도	경기도주택도시공사	1588-0466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033-259-6212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063-280-7500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055-269-04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064-780-3300
	시군	경기도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경기도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031-790-9500

※ 임대주택의 자산 보유기준은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별 임대주택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는 LH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해당 지역 도시공사로 문의해주세요.

11) 임대주택 관련 문의기관(마이홈센터)

연번	소관 본부	마이홈센터	센터주소	상담 전화번호 (유성 응대 번호)
1	서울	서울남부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삼성동 141) 성원타워 4층	02-2182-2735
2		서울중부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 28-9) 인의빌딩 1층	02-6454-2700
3		서울동부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6, 웰스타워 2층	02-6077-9590
4		서울서부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당산동3가 370-5) 인곡빌딩 1층	02-2169-8801
5	인천	인천북부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주안동 300-3)에이스빌딩 8층	032-717-8508
6		인천중부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주안동 300-3) 에이스빌딩 8층	032-717-8501
7		인천남부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구월동 1542-2)두용프라자 6층	032-717-5210
8	경기 남부	부천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중동 1058-5) 동화빌딩 6층	032-450-8251
9		수원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46(이의동 1329) 광고 안효빌딩 11층	031-546-2116
10		안양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관양동 1591-10) 2층	031-467-5723
11		성남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서현동 251-1) 야베스밸리 11층	031-778-3103



12		용인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중동 842) 쥬네브 스타월드 9층	031-280-4711
13		화성동부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18(영천동) 스마트주차장 1층	031-5180-8713
14		화선서부권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병점동 886-5) 병점메트로타워 6층	031-231-0623
15		오산권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수청동 619-7) 수청프라자 2층	031-8092-5836
16		평택안성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서정동) 아트타워 2층	031-8094-5023
17		시흥권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능곡동 75) 경인성빌딩 3층	031-362-7733
18	경기 북부	의정부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9층	031-822-4023
19		남양주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다산동 6062) 신해메디컬타워 4층	031-590-6612
20		양주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옥정동 963-1) 한길프라자2, 5층	031-822-5513
21		고양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마두동 1010) KT고양타워 기계동 5층	031-927-3056
22		파주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33(야당동1041) 월드타워 8차 6층	031-934-5626
23		김포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장기동 1603) 하나썬시티 11층	031-8048-5303
24		하남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망월동1140) 모노라운지상가 1층	031-622-2700
25	부산 울산	부산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 1199-1)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051-460-5507
26		부산동부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84-18) BN(BIP) 빌딩 3층	051-460-6900
27		부산서부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범천동877-2) 사학연금회관 3층	051-460-6824
28		울산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220 대성웰라움 1층	052-932-4801
29	강원	춘천권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효자동 692-10) LH 강원지역본부 1층	033-258-4164
30		원주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반곡동 1880-10),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3층	033-812-6775
31		강릉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울곡로 2846(옥천동 145) SH타워 2층	033-610-5178
32	충북	청주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성화동 936) LH충북지역본부 5층	043-901-4512
33		충북동북부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초중리 310-1) 농협홍삼 관리동 3층	043-820-9135
34		충북남부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청주수곡행복주택 2층	043-913-1878
35		충북중부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50번길 73(KT울량빌딩) 4층	043-925-3900
36	대전 충남	대전권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동 1380)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042-470-0813
37		대전북부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봉명동 448-9), 더그린2차 1층	042-349-0820
38		천안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장재리 1719) 2층	041-538-5822
39		충남남부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412-13) 나로프라자 5층	042-349-4613



40		충남북부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신관동 599-1) 주원빌딩 3층	041-854-8359
41	전북	전주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신관동 599-1) 주원빌딩 3층	063-230-6356
42		전북남부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56(연지동 49-22) 금오빌딩 4층	063-570-2311, 2316
43		익산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모현동1가 869) 금오빌딩 5층	063-840-0912
44	광주 전남	광주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062-360-3128
45		광주광산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1599-1) 행복주택상가 3층	062-441-2916
46		광주북부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11-5(월계동 869-2) 행복주택상가 2층	062-410-1914
47		광주동남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893) 그랜드타워 4층	062-411-4144
48		목포권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164) 남교트윈스타 2층	061-983-3300
49		순천권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60(석현동 87) KT 북순천지사 3층	061-900-4300
50	대구 경북	대구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053-603-2346~7
51		대구동부권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신서동 621-1) 명진빌딩 4층	053-960-3621~3
52		대구서부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천내리 158-2) 5층	053-610-9924
53		대구북부권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침산동 614-4) 1층	053-210-8316
54		경북동부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상도동 18-263) 무진빌딩 3층	054-280-4752
55		경북서부권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송정동 58) 용은빌딩 1층	054-450-3803
56		경북북부권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66(옥동 791-1) 한양빌딩 3층	054-851-9900
57		경남	창원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LH 경남지역본부 2층
58	경남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3(가좌동 700-1) MBC 경남진주사옥 4층	055-922-1501
59	양산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범어리 2714-3) 국민연금공단 양산 회관 2층	055-362-7282
60	김해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부곡동 1164) 2층	055-907-8102
61	경남중부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09 교보생명빌딩 7층	055-600-2100~1
62	제주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삼도1동 305-4) LH 제주지역본부 1층	064-720-1091
63	세종	세종권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20(다정동 965) 가온마을7단지 지하1층	044-902-2330



□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 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1) 버팀목전세자금

구분	내용
대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채권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 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구분	내용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구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일반가구	최대 1억 2천만원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2.5억원	최대 1.6억원	
	- 대출금리			
대출한도 및 금리	소득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5%	2.6%	2.7%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7%	2.8%	2.9%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3.0%	3.1%	3.2%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3.3%	3.4%	3.5%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업무취급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은행: 1599-0800 • 하나은행: 1599-1111 • 신한은행: 1599-8000 • 부산은행: 1800-1333 • 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 1588-2100 • iM뱅크: 1588-0956 			

2)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구분	세부내용
대출대상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지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대상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기준 5.11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 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p>•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p>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이내)</td> <td>3.2억원</td> </tr> </tbody> </table>	구분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이내)	3.2억원																					
	구분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이내)	3.2억원																								
(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득구분</th> <th>10년</th> <th>15년</th> <th>20년</th> <th>30년</th> </tr> </thead> <tbody> <tr> <td>~ 2천만원 이하</td> <td>연 2.85%</td> <td>연 2.95%</td> <td>연 3.05%</td> <td>연 3.10%</td> </tr> <tr> <td>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td> <td>연 3.20%</td> <td>연 3.30%</td> <td>연 3.40%</td> <td>연 3.45%</td> </tr> <tr> <td>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td> <td>연 3.55%</td> <td>연 3.65%</td> <td>연 3.75%</td> <td>연 3.80%</td> </tr> <tr> <td>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td> <td>연 3.90%</td> <td>연 4.00%</td> <td>연 4.10%</td> <td>연 4.15%</td> </tr> </tbody> </table>	소득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55%	연 3.65%	연 3.75%	연 3.8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90%	연 4.00%	연 4.10%	연 4.15%
소득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55%	연 3.65%	연 3.75%	연 3.8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90%	연 4.00%	연 4.10%	연 4.15%																						
업무취급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은행: 1599-0800 하나은행: 1599-1111 신한은행: 1599-8000 부산은행: 1800-1333 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 1588-2100 i뱅크: 1588-0956 																									

3) 주거안정 월세대출

구분	세부내용
대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보증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당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도 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업무취급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은행: 1599-0800 • 하나은행: 1599-1111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 1588-2100



□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1) 서울형 주택바우처

구분	내용										
지원내용	-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 지원										
신청자격	일반 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 : 8,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지원제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특정 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특정바우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경우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지원금액	- 일반 바우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r> </thead> <tbody> <tr> <td>지원금액</td> <td>120,000원</td> <td>130,000원</td> <td>140,000원</td> <td>15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1인	2인	3인	4인	지원금액	120,000원	130,000원	140,000원	150,000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지원금액	120,000원	130,000원	140,000원	150,000원							
	- 아동특정바우처: 아동 1인당 6만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 지급 시기: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 방법: 지원 대상자 계좌 또는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입금 - 지급일: 매월 25일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2										



2) 서울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용자지원(구, 사회복지기금대출)(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주택만 해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제도
신청자격	- 영구임대, 장기전세, 희망하우징, 장기안심, 전세임대, 근로신혼부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매입임대, 재개발임대 입주가구 다수 사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저소득 한부모세대,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 상한액 1천만원
대출금리	- 연 2% / 10년 균등분할 상환, 매달 고지서 상환
신청방법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사회복지기금대출담당 -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6천만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며, 최대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 • 보증금 1억5천만원 초과인 주택 :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 : 보증금의 50%, 최대 4천5백만원 무이자 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특별공급 신혼부부 외별이120%/맞별이180%, 세대통합 120%). ※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함 - 자산기준(2024년 기준) -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보유기준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4,542만원 이하
대상주택	- 전용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인 주택 -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환보증금 합계액이 4억9천만원 이하인 주택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12/전환율[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해당공고문 참조] - 재계약시 전월세 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함
신청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입주신청</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대상자발표</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입주자희망주택 물색</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전세가능여부 검토</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자 계약체결</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입주</div> </div>
문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4) 희망의 집수리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 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 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 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신청 제한: 희망의 집 수리 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 불가 ※ `25년 신청 불가: 2022~2024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	
지원내용	구분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리항목	-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제습기, 환풍기, 방역(곰팡이 제거·해충구제 등),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LED등,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250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85	

□ 주거복지센터

보증금, 월임대료, 수도광열비 등 주거비 체납 등으로 주거불안정한 상태의 취약가구에 대한 긴급주거비지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간편집수리, 가구주택관리서비스 등 취약계층 맞춤형 상담 및 주거지원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기관에 상담이 우선필요함)

구분	세부내용
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 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등)에 대한 입주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을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융자,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제도에 대한 상담·안내 (온라인, 전화, 방문, 내방 상담 가능)
긴급주거비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 사업	- 주거취약계층(장애인,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발굴 및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액보증금과 월임차료체납, 공과급체납 시 일시지원, 집수리를 직접 혹은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 ※ 서울시와 서울시 외 주거복지센터의 긴급주거비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관할 센터에 확인이 필요함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 자치구(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상담 연계 등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급주거비 지원 - 지역자원과 연계 지원을 추진하며, 단체 실무자,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교육 실시	
	연번	센터명
1	서울 중앙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2135-5690
2	서울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3453-2270
3	서울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6933-6870
4	서울 강북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980-4808
5	서울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2661-0896
6	서울 관악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875-3197
7	서울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2138-8373
8	서울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853-9275
9	서울 금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855-4522
10	서울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930-1180
11	서울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6098-1200(내선2)
12	서울 동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6496-5460
13	서울 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816-1688
14	서울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6383-6100
15	서울 서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395-3733
16	서울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6990-5500(내선3)
17	서울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6990-5200(내선2)
18	서울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922-5942
19	서울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400-2271
20	서울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6933-6190
21	서울 영등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785-7044
22	서울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6713-5055
23	서울 은평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388-2979
24	서울 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722-8658
25	서울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6909-9370
26	서울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490-1700(내선2)



연번	센터명	전화번호
27	시흥 주거복지센터	031-311-2203
28	성남 주거복지센터	-
29	수원 주거복지센터	031-280-6342
30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031-548-4046
31	서구 대구주거복지센터	070-4725-8447
32	중구 대구주거복지센터	053-425-5539
33	강서구/연제구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	051-710-5794~6
34	전북 주거복지센터	063-283-9704
35	전주 주거복지센터	063-281-5276
36	천안 주거복지센터	041-572-0606
37	인천 주거복지센터	1811-7757
38	원주 주거복지센터	033-745-2333
39	청주 주거복지센터	010-7151-9316
40	서귀포 주거복지센터	064-767-9500
41	제주 제주시 권역주거복지센터	064-753-9500
42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044-868-5424



□ 주거급여¹⁾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근거법:「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임차급여 -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 임대료 (단위: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가구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가구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가구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가구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가구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가구	699,000	568,000	463,000	402,000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 마이홈(<https://www.myhome.go.kr/>) →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주거급여

수선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하고, 반 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3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p>-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기준금액(주기)</th> <th>I</th> <th>II</th> <th>III</th> </tr> </thead> <tbody> <tr> <td>보수범위</td> <td>주 기</td> <td>지원금액</td> <td>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td> <td>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이하</td> <td>중위소득 40%초과 ~ 48%이하</td> </tr> <tr> <td>경보수</td> <td>3년</td> <td>590만원</td> <td rowspan="3">100%지원</td> <td rowspan="3">90%지원</td> <td rowspan="3">80%지원</td> </tr> <tr> <td>중보수</td> <td>5년</td> <td>1,095만원</td> </tr> <tr> <td>대보수</td> <td>7년</td> <td>1,601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수: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증 경미한 보수공사(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 중보수: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p>※ 보수범위별 공사항목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요항목을 분류한 것으로, 해당 공사항목들 제한하는 것은 아님</p>			기준금액(주기)			I	II	III	보수범위	주 기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초과 ~ 48%이하	경보수	3년	590만원	100%지원	90%지원	80%지원	중보수	5년	1,095만원	대보수	7년
기준금액(주기)			I	II	III																					
보수범위	주 기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초과 ~ 48%이하																					
경보수	3년	590만원	100%지원	90%지원	80%지원																					
중보수	5년	1,095만원																								
대보수	7년	1,601만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p>※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지원절차	신청접수	- 읍·면·동
	소득·재산 등 조사	- 시·군·구: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차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
	보장결정	- 시·군·구: 결정통지
	급여지급	- 시·군·구
주거급여 상세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지원내용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절차	저소득 취약계층(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 운영을 맡는 구조 - 지원대상자가 운영기관에 신청 → 운영기관에서 입주자 선정·운영
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 한사랑 전세론(한부모가족 전세자금대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 (단,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 세대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손님 (단,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연 소득 1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대출내용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
대출한도	- 최대 200백만원의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신청인의 연간 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의 한사랑 전세론 상담 예약 및 방문
문의	- KEB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



3 교육지원

□ 장학금 지원

1)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구분	세부내용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026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24년 평가인증·재정진단 결과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제한 대학은 II 유형 또한 지원 제한 • 기존 제한'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대학 재학생은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제한 여부 결정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명단은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지원 제한 대학 발표('25. 8. 27.) 보도자료 참고 - 신청기간: (1학기) 2026. 2. 3.(화) 9시 ~ 3. 17.(화) 18시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소득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성적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성적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td> <td>-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td> </tr> <tr> <td>재학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td> </tr> </tbody> </table>	분류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분류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지원금액 (2026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소득구간	학기별 최대지원 금액	연간 최대지원 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300만원	600만원
2구간	300만원	600만원
3구간	300만원	600만원
4구간	220만원	440만원
5구간	220만원	440만원
6구간	220만원	440만원
7구간	180만원	360만원
8구간	180만원	36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 지원절차

절차	수행주체	세부내용
신청	학생	-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부모/배우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서류 제출
소득 정보 확인	한국장학재단	- 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보건복지부) -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행안부, 대법원) -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 제공
심사	대학, 한국장학재단	-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 재단정보심사 기준 확인
선발	한국장학재단	- 선발결과 안내(신청현황 확인) -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 우선감면금액 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 지급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 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당해년도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가능대학 중 II 유형 참여 대학
- 지원제한
 -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대학 명단은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지원 제한 대학 발표('25. 8. 27.) 보도자료 참고
- '15년~'23년 평가결과 국가장학금 I·II 유형별 지원 제한 대학 상이. '24년 평가인증·재정진단 결과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제한 대학은 II 유형 또한 지원 제한
- 기존 제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대학 재학생은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제한 여부 결정
- ※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안내」 확인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자립준비 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능,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분에 한하여 10구간 학생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수업료) 범위 내에서 결정
-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신청대상

꿈장학금	SOS 장학금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긴급구난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7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7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다문화 장학금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중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자격기준

다문화 장학금		SOS 장학금
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초등) 학교별 최재 1인 추천, (중·고등) 학교별 2인 추천) 다문화 장학금의 경우 추천인원 제한 없음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학생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교과	(초5~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중2~고1) 직전 학년 이수 과목 중 상위 6개 과목의 평균이 C등급 이상 ※ 자유학기제 운영 시 교과기준 충족으로 인정 ※ 자유학기제 운영 시 자유학기제 미적용 학기 3과목의 평균이 C등급 이상 (고2~고3) 직전 학년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12단위(학점) 이상	
비교과	(초5~중1)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5일 미만**, 봉사활동 실적 미적용 (중2~고3)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직전 학년 봉사활동실적 연간 10시간 이상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



- 지원내용

꿈장학금	SOS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월 15만원 지원 - 중학생: 월 25만원 지원 - 고등학생: 월 35만원 지원 - 대학생: 월 45만원 지원 ※ 대학생은 학기 중 휴학(군·질병 휴학 포함) 시 복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이 중단(자격유예)되며, 휴학시점 이후 선 지급된 장학금은 총 지급 가능 횟수에서 차감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발생 즉시 장학생이 '학적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자진신고 필요,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일 이후 장학금 초과 수혜 시 반환 등의 조치 가능 ※ 홈페이지 내 '학적정보변경신청(대학생)'을 통해 학적변경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생 • 월 30만원 학제 상관 없이 균등 지급 • 선발 후 총 10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 ※ 원칙적으로 10개월 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 종료 ※ 차년도('26년) 도래 시 학적 확인을 통해 학년 미진학, 상급 학교로 미진학 시 차년도 2월 까지만 지원

문의

-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전화번호: ☎1599-2000



2)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사업

- 고등학생 장학금

분류	선발시기	선발인원	신청자격	장학금 구분
서울미래 고교 장학금	5월	990명	- 서울소재 고교 재학생으로 재능과 진로개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북한이탈주민, 경제 사각지대 가정의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연간 200만원 (학업장려금)
서울미래 예체능 장학금	4월	180명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서울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저소득 가정 학생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특기자	연간 350만원 (학업장려금)
서울미래 직업계고 장학금	4월	80명	- 시 전략사업 분야 관련 취업 희망 고등학생 (시 전략사업: 교통, 소방, 미용, 인공지능, 콘텐츠, 뿌리사업)	연간 350만원 (학업장려금)
서울미래 꿈터 장학금	3~4월	112명	-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초·중·고 교육과정에 재학중인 청소년 및 서울 소재 청소년 쉼터에 소속된 가정 밖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대안학교장, 시설장이 추천한 경제 사각지대 청소년	연간 200~300만원 (학업장려금)

- 대학생 장학금

분류	선발시기	선발인원	신청자격	장학금 구분
서울인재대학 장학금	2학년 이상: 3~4월 1학년: 7~8월	946명 (2학년 이상: 720명, 1학년: 226명)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① 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 (의 자녀)으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② 2학년~4학년 재학생 중 2026년도 1·2학기 모두 정규 등록 가능한 자 ※ 2026년 1·2학기 중 휴학, 졸업, 졸업유예, 초과학기 예정자, 대학원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학년 신입생은 2026년 하반기(2학기)에 별도로 선발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2026년 1학기 또는 2025년 2학기 산정 내역 기준) ④ 전체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성적증명서 상의 100점 만점 환산 점수 기준)	2학년 이상: 400만원 2회분할 지급), 1학년: 200만원(1회 지급)
서울임팩트액션 프로젝트	3월	10팀 50명내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전공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 또는 서울 소재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구성된 SDGs 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2~5인 구성) (세부 내용은 추후 선발 공고문 참고)	연 200만원 (학업장려금)



서울 인재해외 교환학생 장학금	5월	60명 (아시아 15명, 비아시아 45명)	- 대한민국 국적자 - 서울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전체성적 평균 85점 이상이며 해외 교환학생 파견 예정 학생 - 당해연도 2학기 교환학생 파견(예정) 학생	400만원~550만원 (학업장려금)
서울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4~6월	120명	-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로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정규학기 등록 학부생)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4~6대 후손)	300만원 (학업장려금)
서울인재직업 전문학교 장학금	3, 9월	200명	-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이며 12학점 이상 수강, 등록금 실납입액 150만원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기별 150만원(등록금)
청춘 Smart 장학금	3~4월	40명 (신규 20명, 기존 20명)	-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서울소재 대학 정규학기 학부 신입생(입학년도 고교 졸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 (이력)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규: 연간 300만원, 기존: 연간 200만원 (학업장려금)
서울선순환 인재 장학금	11월	50명	-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시민(자녀 포함)으로서 비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서울런에서 8개월 이상 활동한 멘토	100만원 (학업장려금)

3) 서울시 자치구 장학금 관련기관

- 서울시 장학금 관련 기관¹⁾

자치구명	기관명	전화번호
종로구	종로구장학회	☎02-2148-2012
중구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02-3396-4664
용산구	용산복지재단	☎02-2074-9191
성동구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02-2286-5853
광진구	교육지원과	☎02-450-7168
동대문구	교육진흥과	☎02-2127-4515
중랑구	교육지원과	☎02-2094-1892
성북구	교육지원담당관	☎02-2241-2393
강북구	복지정책과	☎02-901-6292

1) 출처: 서울미래인재재단



도봉구	교육지원과	☎02-2091-2303
노원구	노원교육복지재단	☎02-949-7920
은평구	은평구민장학재단	☎02-351-8512~3
서대문구	안산장학회	☎02-330-8190
마포구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02-3153-6361~2
양천구	교육지원과	☎02-2620-3119
강서구	강서구장학회	☎02-2600-5375
구로구	구로구장학회	☎02-830-7841
금천구	금천미래장학회	☎02-2627-2229, 2812(교육지원과)
영등포구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02-2670-4178
동작구	장학업무 하지 않음	-
관악구	교육지원과	☎02-879-5655
서초구	서초장학재단	☎02-2155-8819
강남구	강남복지재단	☎02-3446-1612
송파구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02-2147-2373
강동구	강동구복지포털	☎02-3425-5000, 02-1577-1188

※ 120다산콜센터는 장학금 정책문의 등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02-120 (02-731-2120)

4) 아이들과미래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기남장학재단 미래그린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요약: 학업에 재능이 있는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원목적: 학업에 재능이 있는 장학생에게 해당 분야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 1인 1,000만원 지원 •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독서실 이용비, 입시 비용 등 활용 - 프로그램 지원: 장학증서 수여식, 대학교 탐방, 진로 멘토링 캠프, 수료식 등
DB드림 청소년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요약: 보호대상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학업을 지원 - 지원목적: 보호대상 청소년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성장 및 발전의 기회 제공,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장학금과 도서, 학습 수강권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 및 미래 준비



구분	세부내용						
	- 지원내용						
	<table border="1"> <tr> <td>경제적 지원</td> <td>- 장학금 30만원씩 매월 지급</td> </tr> <tr> <td>학습지원</td> <td>- 온라인 수강권 (연1회) - 도서 지원(연2회)</td> </tr> <tr> <td>정서지원</td> <td>- 기념일(생일) 선물 1회 지원</td> </tr> </table>	경제적 지원	- 장학금 30만원씩 매월 지급	학습지원	- 온라인 수강권 (연1회) - 도서 지원(연2회)	정서지원	- 기념일(생일) 선물 1회 지원
	경제적 지원	- 장학금 30만원씩 매월 지급					
학습지원	- 온라인 수강권 (연1회) - 도서 지원(연2회)						
정서지원	- 기념일(생일) 선물 1회 지원						
우리은행 우리 꿈.꾸.당(堂)	- 사업요약: 우리 사회의 청(소)년이 미래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면한 위기 해소 및 진로 탐색, 재능 계발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미래지원사업						
	- 지원목적: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재능개발 및 생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진로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지원내용						
	<table border="1"> <tr> <td>장학금</td> <td>*재능개발비 : 연 500만원 이내(1인) *의료생계비 : 연 100만원 이내(1인)</td> </tr> <tr> <td>주요프로그램</td> <td>* 우리 멘토링 데이 : 5월,/8월(2회), 분야별 전문 멘토 연계 및 미션 활동 * 발대식/수료식 * 온라인 커뮤니티 이벤트</td> </tr> <tr> <td>사례 관리</td> <td>*연중 모니터링 및 보고를 통한 사례 관리</td> </tr> </table>	장학금	*재능개발비 : 연 500만원 이내(1인) *의료생계비 : 연 100만원 이내(1인)	주요프로그램	* 우리 멘토링 데이 : 5월,/8월(2회), 분야별 전문 멘토 연계 및 미션 활동 * 발대식/수료식 * 온라인 커뮤니티 이벤트	사례 관리	*연중 모니터링 및 보고를 통한 사례 관리
장학금	*재능개발비 : 연 500만원 이내(1인) *의료생계비 : 연 100만원 이내(1인)						
주요프로그램	* 우리 멘토링 데이 : 5월,/8월(2회), 분야별 전문 멘토 연계 및 미션 활동 * 발대식/수료식 * 온라인 커뮤니티 이벤트						
사례 관리	*연중 모니터링 및 보고를 통한 사례 관리						
삼성화재 교통사고유자녀 장학지원사업	- 사업요약: 교통사고로 인해 상실을 경험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통해 올바른 성장 기여						
	- 지원목적: 교통사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서적 지원을 통한 교통사고 유자녀의 정서 안정						
	- 지원내용: 장학금지원(매월 장학금, 명절 선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정서지원(신학기 선물, 생일 선물, 수능 응원 선물, 임직원 북멘토링) 방학캠프를 통한 임직원과의 교류활동, 문화체험 기회 제공						
[삼성SSAFY]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 사업요약: 취업준비생에게 SW·AI 역량 향상 교육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 지원목적: 미취업 청년 및 국내 IT/SW 기술 교육 소외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IT/SW 교육 기회와 교육 장학금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국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지원내용: 전문화된 SW·AI 교육 제공 지원, 교육지원금 매월 100만원, 취업지원 서비스, 심리 정서 지원, 교육생 공익 활동 지원(나눔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SW·AI 기술을 활용한 실무 기반 프로젝트 교육 지원						
우리미래금융재단 우리러너	- 사업요약: 서울권을 이용하는 고등학교 1학년, 전국 고등학교 2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학,교육사업						
	- 지원목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미래 준비						
	- 지원내용						
	<table border="1"> <tr> <td>학습 비용지원</td> <td>- 우리카드 바우처를 통한 학업 비용 지원 - 반기 별 100만원 지원 (총 200만원)</td> </tr> </table>	학습 비용지원	- 우리카드 바우처를 통한 학업 비용 지원 - 반기 별 100만원 지원 (총 200만원)				
학습 비용지원	- 우리카드 바우처를 통한 학업 비용 지원 - 반기 별 100만원 지원 (총 200만원)						



구분	세부내용						
	<table border="1"> <tr> <td>여름 캠프 진행</td> <td>- 방학 중 2박 3일 진행 - 학업 관련 특강, 연사 특강 및 우리러너 간 팀빌딩 진행 - 개별 맞춤형 학습컨설팅, 입시 컨설팅 진행 예정</td> </tr> <tr> <td>겨울 학습 캠프 진행</td> <td>- 전문 학습기관과 연계, 방학중 4주 간 숙박형학업캠프 진행 - 입시/학습컨설팅, 취약과목 집중 학습 등 수준별 교육을 통한 학업 능력 향상</td> </tr> <tr> <td>해외 캠프 진행</td> <td>- 일부 참여자 별도 선발하여 YYGS 캠프 신청 지원 - 캠프 신청을 위한 전문 유학원 연계</td> </tr> </table>	여름 캠프 진행	- 방학 중 2박 3일 진행 - 학업 관련 특강, 연사 특강 및 우리러너 간 팀빌딩 진행 - 개별 맞춤형 학습컨설팅, 입시 컨설팅 진행 예정	겨울 학습 캠프 진행	- 전문 학습기관과 연계, 방학중 4주 간 숙박형학업캠프 진행 - 입시/학습컨설팅, 취약과목 집중 학습 등 수준별 교육을 통한 학업 능력 향상	해외 캠프 진행	- 일부 참여자 별도 선발하여 YYGS 캠프 신청 지원 - 캠프 신청을 위한 전문 유학원 연계
여름 캠프 진행	- 방학 중 2박 3일 진행 - 학업 관련 특강, 연사 특강 및 우리러너 간 팀빌딩 진행 - 개별 맞춤형 학습컨설팅, 입시 컨설팅 진행 예정						
겨울 학습 캠프 진행	- 전문 학습기관과 연계, 방학중 4주 간 숙박형학업캠프 진행 - 입시/학습컨설팅, 취약과목 집중 학습 등 수준별 교육을 통한 학업 능력 향상						
해외 캠프 진행	- 일부 참여자 별도 선발하여 YYGS 캠프 신청 지원 - 캠프 신청을 위한 전문 유학원 연계						
희망샘기금	<p>- 사업요약: 암환자가정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 파트너기업 임직원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아동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지원</p> <p>- 지원목적: 암환자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 및 다양한 정서적 교류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지지망 형성</p>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매월 1회) 및 기념일(생일,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 북멘토 프로그램: 장학생 희망도서 및 임직원 추천도서 전달(연 4회) • 임직원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진행(연 1회) • 장학생 몸건강,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연 1회) • 새희망샘기금: 졸업장학생 장학금 지급(연 5명 / 1인 100만원 지원) • 새학년 준비비(상급학교 진학자), 고등학교 졸업 축하금 						
폴안센장학기금	<p>- 사업요약: 정신장애인 가정의 자녀 및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p> <p>- 지원목적: 정신장애인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p> <p>- 지원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초등~성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원: 매월 15만원 씩, 연4회 • 새학년준비비 지원: 1인당 1회 • 생일선물 지원: 1인당 1회 2. 한국안센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날 선물 지원 프로그램 1회 시행 • 추석 선물 지원 프로그램 1회 시행 						
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	<p>- 사업요약: 보호종료를 앞두고거나 기종료된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주도적 자립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 제공</p> <p>- 지원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기반 마련 • 직업훈련 및 취업을 위한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 진로/취업, 심리/정서, 금융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정보습득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구분	세부내용						
	<p>- 지원내용</p> <table border="1"> <tr> <td>발돋움 장학금 지원</td> <td>- 직업훈련비(1인 최대 1,200만원/2년) - 생활지원금(매월 40만원) 및 실손의료비 - 학업성취수당(1회당 30만원/중복가능) - 취업축하금(1회 100만원)</td> </tr> <tr> <td>발돋움 프로그램</td> <td>- 진로/취업, 심리/정서, 금융 프로그램 - 자립워크숍(1박2일) - 자립특강</td> </tr> <tr> <td>네트워크 프로그램</td> <td>- 소모임 활동, 전체 봉사활동 - 장학금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중간/최종 보고회</td> </tr> </table>	발돋움 장학금 지원	- 직업훈련비(1인 최대 1,200만원/2년) - 생활지원금(매월 40만원) 및 실손의료비 - 학업성취수당(1회당 30만원/중복가능) - 취업축하금(1회 100만원)	발돋움 프로그램	- 진로/취업, 심리/정서, 금융 프로그램 - 자립워크숍(1박2일) - 자립특강	네트워크 프로그램	- 소모임 활동, 전체 봉사활동 - 장학금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중간/최종 보고회
발돋움 장학금 지원	- 직업훈련비(1인 최대 1,200만원/2년) - 생활지원금(매월 40만원) 및 실손의료비 - 학업성취수당(1회당 30만원/중복가능) - 취업축하금(1회 100만원)						
발돋움 프로그램	- 진로/취업, 심리/정서, 금융 프로그램 - 자립워크숍(1박2일) - 자립특강						
네트워크 프로그램	- 소모임 활동, 전체 봉사활동 - 장학금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중간/최종 보고회						
SGI서울보증 파란꿈 희망파트너	<p>- 사업요약: *SGI꿈나무희망파트너, SGI파란청춘 사업 통합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과 자립준비 청년의 학업 비용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화 지원, 문화체험활동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와 장학생 간 네트워크 활동촉진 <p>- 지원목적: 저소득 가정 아동 대상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 단절 방지,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 소외 예방 및 진로탐색에 대한 부담감 해소, 자립준비 청년 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학업 지속 지원, 자립준비 청년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속감 부여 및 사회적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p> <p>- 지원내용</p> <table border="1"> <tr> <td>저소득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td> <td>- 꿈나무 장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꿈나무 장학금 지급 (월 1회) • 생일선물비 지급 (장학생별 연 1회) • 중/고등학교 진학 대상자에게 진학지원금 지급 - 진로진학, 문화체험 활동 2회 진행 • 전체 장학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 1회 진행 • 임직원 동반 단체문화체험 프로그램 1회 진행</td> </tr> <tr> <td>자립준비 청년 지원</td> <td>- 자립준비 청년 대상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원 및 학업 생활 모니터링 (연 3회) • 생일선물 지원 - 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 기본 교육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 교류 프로그램 각 1회 진행</td> </tr> </table>	저소득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	- 꿈나무 장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꿈나무 장학금 지급 (월 1회) • 생일선물비 지급 (장학생별 연 1회) • 중/고등학교 진학 대상자에게 진학지원금 지급 - 진로진학, 문화체험 활동 2회 진행 • 전체 장학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 1회 진행 • 임직원 동반 단체문화체험 프로그램 1회 진행	자립준비 청년 지원	- 자립준비 청년 대상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원 및 학업 생활 모니터링 (연 3회) • 생일선물 지원 - 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 기본 교육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 교류 프로그램 각 1회 진행		
저소득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	- 꿈나무 장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꿈나무 장학금 지급 (월 1회) • 생일선물비 지급 (장학생별 연 1회) • 중/고등학교 진학 대상자에게 진학지원금 지급 - 진로진학, 문화체험 활동 2회 진행 • 전체 장학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 1회 진행 • 임직원 동반 단체문화체험 프로그램 1회 진행						
자립준비 청년 지원	- 자립준비 청년 대상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원 및 학업 생활 모니터링 (연 3회) • 생일선물 지원 - 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 기본 교육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 교류 프로그램 각 1회 진행						
문 의	<p>- 홈페이지 아이들과 미래재단(http://www.kidsfuture.or.kr)</p> <p>- 전화번호: ☎02-843-8478</p>						



5) IBK행복나눔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연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및 미혼의 자녀로 고등·대학교 재학생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휴학생, 국외 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지원 불가) - 생활비 지원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로, 관련 서류제출이 가능한 자
신청방법	- 사전 상담(신청 전 지원가능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작성 및 제출 → 심사 → 선정 및 지원
문의	- 사전 상담(신청 전 지원가능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작성 및 제출 → 심사 → 선정 및 지원

6)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4년제 대학	MIIU자녀 - 자격요건: 군인, 소방, 경찰공무원 자녀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2, 3, 4학년 학생 - 성적기준: 평점 3.5/4.5 이상 - 연간지원금액: 400만원
	북한이탈 청소년 - 자격요건: 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의 재학생 중 정부기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2,3,4학년 학생 - 연간지원금액: 600만원
	지역산학 협력 - 자격요건: 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에 재학 중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예정으로 학교추천을 받은 학생 - 성적기준: 평점3.7/4.5 이상 - 연간지원금액: 400만원
	의생명 과학 - 자격요건: 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의 재학생 중 의생명과학분야 연구자가 되고자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3, 4학년 학생 - 성적기준: 평점3.7/4.5 이상 - 연간지원금액: 600만원
대학원	보건의료 정책분야 - 자격요건: 보건의료정책분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 - 성적기준: 최종학교 평점 4.0/4.5 이상 - 연간지원금액: 1,000만원
	의생명 과학분야 (해외 석·박사 과정) - 자격요건: 해외 대학원에서 의생명과학분야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 - 성적기준: 최종학교 평점 4.0/4.5 이상 - 연간지원금액: 4,000만원
	의생명 과학분야 (국내 석·박사 과정) - 자격요건: 국내 대학원에서 의생명과학분야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 - 성적 기준: 최종학교 평점 4.0/4.5 이상 - 연간 지원금액: 2,000만원
문의	- 홈페이지: 아산사회복지재단 (http://www.asanfoundation.or.kr)



7)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꿈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꿈장학멘토: 장학 기간 동안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학교 전문상담사 중 장학생과 주기적인 만남을 지원함
지원내용	- 중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멘토명의 통장계좌로 3회에 걸쳐서 입금) - 선발인원: 4,600명 예정 - 장학기간: 2026년 5월 ~ 2027년 2월 장학금이 반드시 장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도하기 위해 멘토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멘토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2026. 3.10.(화) ~ 4.10.(금) 오후 5시
신청방법	- 진행과정: 공모 → 선정(선정평가위원회) → 발표 -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지원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멘토: 학생 이름과 접수번호로 연동 멘토링계획서 작성 멘토재직증명서 파일첨부

- SOS 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갑작스런 가정의 경제 위기, 학교 부적응 등 긴급하게 장학금 및 멘토링이 필요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 11~12월은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신청 가능 - SOS장학멘토: 장학 기간 동안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중에서 주기적 만남이 가능하고 성장과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과의 연계 지원
지원내용	- 중학생 월 20만원, 고등학생 월 30만원 - 장학금이 반드시 장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도하기 위해 멘토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멘토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18시까지 - 꿈장학 공모가 진행되는 3~4월에는 신청을 받지 않음 ※ 2026년 SOS장학은 4월 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추후 일정 공지 예정)
신청방법	- 진행과정: 공모(상시) → 선정(매월, 심의 및 선정) → 발표(홈페이지 공지) -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지원신청서 작성 및 멘토에게 멘토링계획서 작성 요청 · 멘토: 멘토링계획서 작성 → 관련증빙서류 제출(재직증명서 제출)
문의	- 홈페이지 삼성꿈장학재단(https://www.sdream.or.kr) - 전화번호: ☎02-727-5400 ~ 5401



8)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든든 학업지원금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대학교 재학생 중 일정 재산기준 이하의 취약계층 가족 (1가구 1학생/1가구 2학생 신청하여도 1학생만 선발함) *대상자는 매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일정 중위소득(100%)이하 가정
지원내용	2025년기준 - 지속적인 학업 유지를 위하여 학업 관련 비용을 보조(200만원) - 국가 장학금, 또는 국가 및 민간 교육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령 가능
제출서류	- 기본 서류 및 취약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킹 처리)
문의	- 홈페이지 hy사회복지재단 (https://www.ybz.or.kr/) - 전화번호: ☎02-3449-6426

9) KT&G 장학재단

- (중등)(고등) 상상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매년 신규 고교 상상장학생 250명 선발 예정 * '26년도부터 잠정적으로 중등 상상장학생(공개모집 유형) 신규 모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원기간:매년 '장학생 지속지원 검토' 통과 시, 1년씩 장학 지원 기간 연장, 최대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인 3년간 지원 가능 - 신규 장학 신청 자격 (1,2,3 모두 해당하는 자) • 모집 당해연도 고등학교 신입학생 (1학년 재학생)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자녀인 자 • 학교 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의 장학 수혜기간(최대 3년) 동안 계속해서 멘토로 활동할 의사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타 교원으로 멘토를 연계(변경) 가능한 교원)
지원내용	- 학습 용도 장학금 중등(50만원*2개 학기)·고교(100만원*2개 학기) 지원 - 학습 도구 패키지 (신규 선발 당해연도 1회 한정) 지원 - 전자도서관 이용 지원 - 고교 상상장학캠프 (청소년 문화 예술 체험 학습 활동) 개최
신규지원	- 학생 및 학교 교원(멘토) 모두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단, 학교 교원은 신규 장학 지원(추천) 이전, 멘토(인증) 회원 전환 필수) -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장학신청 게시판 통한 고교 상상장학생 신규 모집 공고 내용 확인 -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신청 게시판 통한 장학 지원 신청 (학생이 먼저 내용 기입 및 자료 첨부 → 학교 교원이 추천 내용 기입 및 확인 후 최종 제출) - KT&G장학재단 내부 심사 후 최종 선발 장학생 발표(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합격자 대상 개별 연락)



지속 지원	- 국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을 유지 중인 장학생 대상 실시 (자퇴, 휴학 등의 사유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KT&G장학재단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내 장학생 포기 신청 필요) -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내 장학금 사용내역 메뉴를 통한 1년간의 장학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작성 - 연 1회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통한 '장학생 지속지원 검토' 내용에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 제출 - 지속지원 검토 자료 제출 기한 종료 후 KT&G장학재단 내부 검토 (검토하면서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해당자 대상 개별 연락 가능) - 지속지원 통과자 대상 1년간 장학 지원 연장 (최대 3년간 지원 예정)
신청기간	- 매년 4월 ~ 6월 예정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장학신청 참고) - 발표: 매년 6월 ~ 7월 예정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합격자 개별연락)
문의	- 홈페이지: KT&G 장학재단(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 전화번호: ☎070-4124-6451~2,070-4124-6458

- 기관추천 상상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매년 신규 장학생 100명(중등 30명, 고교 70명) 선발 예정 지원기간: 매년 '장학생 지속지원 검토' 통과 시, 1년씩 장학 지원 기간 연장, 최대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인 3년간 지원 가능 - 신규 장학 신청 자격 (1,2,3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래 1-1이나 1-2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1-1. 군인, 경찰, 소방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자(공상) 혹은 순직한 자의 자녀, 1-2. 북한이탈주민 본인) • 모집 당해연도 중·고등학교 신입학생 (1학년 재학생) • 정부기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장학생 후보 추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학습 용도 장학금 중등(50만원*2개 학기)·고교(100만원*2개 학기) 지원 - 학습 도구 패키지 (신규 선발 당해연도 1회 한정) 지원 - 전자도서관 이용 지원 - 고교 상상장학캠프 (청소년 문화 예술 체험 학습 활동) 개최
신규지원	- 각 추천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위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장학생 후보 추천 - KT&G장학재단 내부 심사 및 대상자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요청 (대상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완료로 장학생 희망(등록) 의사 표현) - 최종 선발 장학생 발표 (장학생 후보 추천기관 대상 결과 회신 및 합격자 대상 개별 연락)
지속 지원	- 국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을 유지 중인 장학생 대상 실시 (자퇴, 휴학 등의 사유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내 장학생 포기 신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내 장학금 사용내역 메뉴를 통한 1년간의 장학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작성 - 연 1회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통한 '장학생 지속지원 검토' 내용에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 제출 - 지속지원 검토 자료 제출 기한 종료 후 KT&G장학재단 내부 검토 (검토하면서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해당자 대상 개별 연락 가능) - 지속지원 통과자 대상 1년간 장학 지원 연장 (최대 3년간 지원 예정)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5월 ~ 6월 예정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가능) - 발표-매년 6월 ~ 7월 예정 (관련 기관 및 합격자 대상 개별연락)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KT&G 장학재단(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 전화번호: ☎070-4124-6451~2,070-4124-6458

- 대학 상상 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신규 장학생 200명 선발 예정 ※ 하반기 지속지원 검토 실시 후, 기선발 장학생의 휴학 등에 따른 잔여 예산만큼 대학 상상장학생 추가 선발 가능 (단, 추가 선발자는 하반기 장학 혜택만 지원) 지원기간: 하반기 지속지원 검토' 통과 시, 장학 지원 기간(하반기 1개 학기) 연장, 장학생 선발 당해연도 1년간 최대 정규 2개 학기 지원 가능(다른 연도 다시 지원 후 합격할 경우, 해당 연도 장학 혜택 지원) - 신규 장학 신청 자격 (1,2,3 모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대학교, 전문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자녀인 자 • 잔여 학기가 정규 2개 학기 이상인 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용도 장학금 150만원*2개 학기 지원 - 전자도서관 이용 지원 - 대학 상상장학캠프 (대학생 맞춤 문화 예술 체험 학습 활동) 개최
신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본인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장학신청 게시판 통한 대학 상상장학생 신규 모집 공고 내용 확인 -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신청 게시판 통한 장학 지원 신청 - KT&G장학재단 내부 심사 후 최종 선발 장학생 발표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합격자 대상 개별 연락)
지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소재 대학 재학생 신분을 유지 중인 장학생 대상 실시(자퇴, 휴학 등의 사유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내 장학생 포기 신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내 장학금 사용내역 메뉴를 통한 한 학기간의 장학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작성 - 학기당 1회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통한 '장학생 지속지원 검토' 내용에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 제출 - 지속지원 검토 자료 제출 기한 종료 후 KT&G장학재단 내부 검토 (검토하면서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해당자 대상 개별 연락 가능) - 통과자 대상 정규 1개 학기 장학 지원 연장 (최대 선발연도 1년-정규 2개 학기 지원) (단, 장학 기간 종료 후 신규 모집 재지원 가능-합격 시, 해당 연도 장학 지원)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4월 ~ 5월 예정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장학신청 참고) - 발표-매년 5월 ~ 6월 예정 (KT&G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합격자 개별연락)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KT&G 장학재단(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 전화번호: ☎02-563-4459

- 특성화 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글로벌 장학사업을 진행 - 해외 주요 대학 등 현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현지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K-Culture 확산을 위한 외국인 대학생 글로벌 문화 리더십 프로그램, 한국어 보급을 위한 해외 현지 한국어연구원 운영 지원 등 다각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교육지원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소외지역의 전교생 65명 이하 '작은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VR기기를 활용한 교과과정 미술작품 관람, 논산 상상마당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사제간 팀빌딩 등 작은학교 초등학생들의 균형 있는 문화 성장을 지원
리스타트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소년보호협회와 협력하여 생활 태도가 모범적인 무의탁 소년원 재·출원생들을 선발 및 자립/진로 개발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 - 법무부 소년보호과와 협력, 소년원 내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 지원 등 위기·보호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자립을 위한 '리스타트 장학사업'을 운영
문화예술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를 이끌 재능 있는 청소년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문화예술 장학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2021년부터 발레 분야 우수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장학금과 교육프로그램인 마스터클래스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레 마스터클래스: 국내외 유명 무용수와 안무가의 전문 코칭과 공연 기회가 제공되는 KT&G장학재단만의 차별화 된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한국메세나 협회, 발레STP협동조합, 강동문화재단과의 협력으로 매년 진행 • 글로벌 아티스트: 장학생 중 국제 무대에서 실력이 검증된 예술 인재들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글로벌 아티스트' 후속 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



수시 장학사업	정기적인 장학사업 외에도 사회적 이슈에 부응하는 맞춤형 비정기적 사업을 운영
인재육성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공공인재 분야 리더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각 분야별 협력 기관과 함께 운영 • 공공인재스쿨: 대학생 대상 공공마인드와 문제 해결력 교육 지원 ((재)NSI협업) • 국가공헌인재: 경찰대학 교육생 대상 글로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경찰대학교육진흥재단 협업) • 과학기술인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속 석/박사급 우수 학생연구원 선발 및 장학금 지원 (KIST미래재단 협업)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KT&G 장학재단(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 전화번호: ☎070-4124-6451~2,070-4124-6458

10)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	대학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연 100만 원~등록금 전액)
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p>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원 (시급: 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p> <p>(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학기중 월 8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640시간 우선선발 대상의 경우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 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돌봄 청년 <p>장래인, 다자녀가정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p>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생 및 대학원생(소득요건 有) - 학부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생활비: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또는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중 긴급 생계곤란자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 자립준비 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 보기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생활비: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등록금/생활비대출: 2026. 1. 5.(월) 9시 ~ 5. 20.(수) 18시 	대출금리 1.7% ('26.1학기 기준, 변동금리) 등록금대출(한도 내 실소요액) 생활비대출(학기당 20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등록금/생활비대출: 2026. 1. 5.(월) 9시 ~ 5. 20.(수) 18시 	대출금리 1.7% ('26.1학기 기준, 고정금리) 등록금대출(한도 내 실소요액) 생활비대출(학기당 200만원)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1599-2000)



□ 학습지원

1) 학력인정 평생교육

- 평생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3년) 과정을 통해 학력 인정(학기를 단축하여 운영할 시 초등학교 2년, 중·고등학교 1년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025년 4월 기준)

연번	시·도	시설명	연번	시·도	시설명
1	서울	서현초등학교	22	대전	대전예지중고등학교
2		서울자동차고등학교	23		대전시립중고등학교
3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24	경기	계명고등학교
4		일성여자중고등학교	25		안양상업고등학교
5		정암미용고등학교	26		부천실업고등학교
6		진형중고등학교	27		고양송암고등학교
7		청량정보고등학교	28		진영고등학교
8		청암중고등학교	29		진영중학교
9		한림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30		진영초등학교
10	부산	국제금융고등학교	31	강원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11		부경보건고등학교	32	충북	예일미용고등학교
12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중학교	33	전북	진북고등학교
13		부산경호고등학교	34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14		부산미용고등학교	35		군산평화중고등학교
15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중학교	36	전남	남일초중고등학교
16		부산예원고등학교	37		인화초중고등학교
17		부산예원고등학교 병설중학교	38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18		부산조리고등학교	39		흥지중고등학교
19	대구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40	경북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20	인천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41	경남	경남미용고등학교
21		남인천중고등학교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2026. 3. 3. ~ 3. 20.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지원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이용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지원대상	- 교육급여: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12.29(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피해자인 학생 등 - 상세 기준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ie.go.kr)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 참고	
신청방법 (택 1)	① 방문 신청	②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부모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포(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수

3) KT&G 복지재단 취약계층 지원사업

- 행복가정학습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 아동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내 아동)
지원내용	- 학습 관련 물품 구입비 20만원 지원 (1회) - 매월 1개 기관에서 1명 신청 가능하며, 익월 타 대상자 신청 가능 기존 선정 아동은 지원 제외 (확인 필요 시 사무처 유선 연락)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사연 접수(사회복지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

- 문화예술활동비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아동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참여인원: 아동 3~7명 (담당자 제외 아동 3인 미만 시설 지원 불가) - 담당자 1명 지원 가능 (5인 이상 인솔 시, 2명까지 가능)
지원내용	- 문화예술활동비 50만원 지원 (1회) - 사연 접수 시, 지원금 사용계획 필요 지원금 분할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사연 접수(공동생활가정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신청기간	- 연 2회 신청 (상/하반기)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KT&G 장학재단(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 전화번호: ☎02-563-4459
-----	---

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만 7세 ~ 만 18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학업, 예술, 체육, 자율 등 모집 안내문 참고) - 학업분야는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양성비 지원: (아동별 지원금액 상이)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과정 연계비(학원비, 레슨비 등) • 교재 및 교구 구입비 • 대회 참가비 • 재능계발 보조비(교통비 등) • 재능 계발장소 연계비(독서실, 체력단련실, 전지훈련비 등) • 비전수립활동비(진로 관련 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 프로그램 지원: 아이리더 발대식, 학업컨설팅, 재능 분야 전문가 멘토 만남, 멘토특강, 초록우산 아이리더 멤버십 활동(분야별 리더 교류 등)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세부 지원 자격(재단 홈페이지 참조) - 하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후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작성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서류의 허위 기재,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초록우산 아이리더로서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 등) • 기존 초록우산 아이리더 대상 중 인재양성지원사업 서비스 종결 기준에 해당하여 전년도 대상자에서 종결된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접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추천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번은 초록우산 홈페이지(www.childfund.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5. 등본(3개월 이내) 6. 재능증빙서류 7. 경제상황 증빙서류(3개월 이내) <p>-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신규모집 안내문’ 5P. 서류제출 관련 참고사항 확인.</p>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기간: 매년 10월 ~ 12월 -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접속(www.childfund.or.kr) 공지사항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 접수 방법: 지역별 접수처 확인 후 이메일 및 우편제출(이메일, 등기우편 제출)



구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문의: 지역별 어린이재단 사업기관 리스트 참조 (서울지역본부:(02) 325-2257, chorog2257@naver.com)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초록우산 아이리더(https://www.childfund.or.kr/)/ ☎1588-1940

5) 아이들과 미래재단 교육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그루터기 학습멘토링 '같이에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요약: 대학생/퇴직교원 멘토 & 초·중·고등학생/느린학습자 멘티 1:1 학습멘토링으로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자기주도 학습기회 제공 - 지원목적: 학습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 대상 전문 학습 멘토링 지원, 문화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정서적 지지 제공, 멘토단 파견을 통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학습지원 인력부담 완화, 대학생 멘토 대상 장학금 지원을 통한 대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완화, 퇴직교원 대상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지원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교원 대상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자긍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교육 진행, 대학생 멘토단 OT 및 보수교육, 퇴직교원 멘토단 교사연수 • 참여기관 실무자 OT ②. 멘토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멘토단 운영 : 1:1 학습멘토링, 문화체험활동, 교류활동 등 진행 • 퇴직교원 멘토단 운영 : 1:1 기초학습지도 멘토링 진행 • 온/오프라인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천천히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요약: 초등 느린학습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 지원목적: 교육격차 해소 및 느린학습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지원,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그룹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표현능력 향상, 느린학습 아동 전문 멘토 양성 및 파견을 통한 학습지원 인력부담 완화 - 지원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방과 후 1:1 학습 지원 멘토링 (8개월, 30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지원: 선발된 학생에게 진단검사 기회 제공(사전/진전도/사후) - 교육지원: 매칭된 멘토가 초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직접 방문하여 1:1 학습 멘토링 진행 (주1회, 50분) * 3R(읽기, 쓰기, 셈하기) 위주 수업 진행 예정 </td> </tr> <tr> <td>소그룹프로그램 및 양육자 교육</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느린학습 아동과 함께하는 그룹프로그램 및 양육자 대상 특강 제공 - 그룹프로그램 : 6월~ 8월 중 5회 진행 - 양육자 교육 : 6월~7월 중 1회 진행 </td> </tr> <tr> <td>풀배터리 진단검사 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판정자료 부재 최약계층 아동 30명 대상 풀배터리 검사 지원 </td> </tr> </table> 	방과 후 1:1 학습 지원 멘토링 (8개월, 3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지원: 선발된 학생에게 진단검사 기회 제공(사전/진전도/사후) - 교육지원: 매칭된 멘토가 초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직접 방문하여 1:1 학습 멘토링 진행 (주1회, 50분) * 3R(읽기, 쓰기, 셈하기) 위주 수업 진행 예정 	소그룹프로그램 및 양육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느린학습 아동과 함께하는 그룹프로그램 및 양육자 대상 특강 제공 - 그룹프로그램 : 6월~ 8월 중 5회 진행 - 양육자 교육 : 6월~7월 중 1회 진행 	풀배터리 진단검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판정자료 부재 최약계층 아동 30명 대상 풀배터리 검사 지원
방과 후 1:1 학습 지원 멘토링 (8개월, 3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지원: 선발된 학생에게 진단검사 기회 제공(사전/진전도/사후) - 교육지원: 매칭된 멘토가 초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직접 방문하여 1:1 학습 멘토링 진행 (주1회, 50분) * 3R(읽기, 쓰기, 셈하기) 위주 수업 진행 예정 						
소그룹프로그램 및 양육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느린학습 아동과 함께하는 그룹프로그램 및 양육자 대상 특강 제공 - 그룹프로그램 : 6월~ 8월 중 5회 진행 - 양육자 교육 : 6월~7월 중 1회 진행 						
풀배터리 진단검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판정자료 부재 최약계층 아동 30명 대상 풀배터리 검사 지원 						



구분	세부내용				
	<p>느린학습자 전문 멘토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육(1회/온라인): 교육 콘텐츠(국어, 수학, 정서) 및 사업 안내 교육 - 보수교육(2회/온,오프라인): 심회 교육 콘텐츠, 느린학습 관련 특강, 사례나눔 등 <p>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slowtogether.or.kr)</p>				
버버리재단 버버리 인스파이어 창의예술융합교육	<p>- 사업요약: 지방 소도시 청소년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고품격 과학&공학&예술 교육</p> <p>- 지원목적: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 학생들 대상으로 과학&공학&예술 교육 분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p> <p>- 지원내용</p> <table border="1"> <tr> <td>학교대상 몰입형 창의예술융합교육 운영</td> <td>- 지방소도시 소재 중학교 대상 3회 이상 다회차 몰입형 캠프 - (1) 디자인 씽킹 (건축물 디자인 기획) (2) 건축물 디자인 (3) 건축물 구조 제작 (4) 건축물 제작</td> </tr> <tr> <td>전국 중학생 대상 오픈강좌 진행 (창의예술융합 건축 프로젝트)</td> <td>- 양일간 진행되는 (무박) 도시건축캠프</td> </tr> </table>	학교대상 몰입형 창의예술융합교육 운영	- 지방소도시 소재 중학교 대상 3회 이상 다회차 몰입형 캠프 - (1) 디자인 씽킹 (건축물 디자인 기획) (2) 건축물 디자인 (3) 건축물 구조 제작 (4) 건축물 제작	전국 중학생 대상 오픈강좌 진행 (창의예술융합 건축 프로젝트)	- 양일간 진행되는 (무박) 도시건축캠프
학교대상 몰입형 창의예술융합교육 운영	- 지방소도시 소재 중학교 대상 3회 이상 다회차 몰입형 캠프 - (1) 디자인 씽킹 (건축물 디자인 기획) (2) 건축물 디자인 (3) 건축물 구조 제작 (4) 건축물 제작				
전국 중학생 대상 오픈강좌 진행 (창의예술융합 건축 프로젝트)	- 양일간 진행되는 (무박) 도시건축캠프				
카카오모빌리티 주니어랩	<p>- 사업요약: 교택시 운수 종사자 자녀 및 손자녀 코딩교육</p> <p>- 지원목적: 택시 운수 종사자 자녀 및 손자녀 대상 모빌리티 코딩교육을 통한 해당 분야에 대한 흥미 제고, 택시 운수 종사자 자녀 및 손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 이미지 제고</p> <p>- 지원내용: 모빌리티 코딩 교육(3박 4일 간 숙박형 캠프 진행, 회 당 3~4시간, 총 5회 모빌리티 관련 코딩 교육 진행, 모빌리티 코딩 팀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 및 수료식(1회기)(팀프로젝트 결과물 발표 및 전시, 임직원 멘토링, 수료식 진행)</p>				
한국알콜그룹 아트그린 예술교육	<p>- 사업요약: 음악 특기 중/고등학생 대상 음악교육 지원</p> <p>- 지원목적: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에게 전문 예술교육을 지원하여 꿈과 재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양성</p> <p>- 지원내용: 이화여대 교강사진의 전문 1:1 음악교육, 실내악, 마스터클래스 커리큘럼 제공</p>				
현대위아 모빌리티 스킨	<p>- 사업요약: 공교육 속 스마트 팩토리 및 모빌리티 관련 분야 학습 기회 해소하기위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현대위아 사회공헌 사업</p> <p>- 지원목적: 지역사회 중학생 대상 스마트 팩토리 및 모빌리티 산업 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 이해도 제고 및 진로 탐색 기회 마련, 창의적/활동적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제조 산업기술 분야 진로탐색 및 직업 가치관 형성</p> <p>- 지원내용: 스마트 팩토리 및 모빌리티 산업 흥미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교육 및 연합행사</p>				
카카오뱅크 모두의 코딩 LAB	<p>- 사업요약: 코드 입력과 같은 주입식 SW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문제해결기반형 SW 교육 프로그램 제공</p> <p>- 지원목적: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문제해결능력, 융합력, 창의력 향상,</p>				



구분	세부내용
	<p>프로젝트 베이스 활동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미래의 직업/유망 직업 등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청소년들이 공모전을 통해 SW 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p> <p>- 지원내용: SW 교육 프로그램 6회차 진행(1회차/90분), SW 공모전 1회 개최</p>
문의	- 홈페이지 아이들과 미래재단(http://www.kidsfuture.or.kr/) / ☎02-843-8478

6)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나래희망학교	02-393-4720	강원	마리아의 집	033-264-0194
부산	마리학교	051-253-7543	충북	청주해오름마을	043-285-4438
대구, 경북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041-568-0691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천안새소망의집	041-568-0695
광주	엔젤하우스	062-651-8585	전북	민들레학교	063-283-1356
대전, 세종, 충북	대전자모원	042-934-6934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울산	도담학교	052-903-9200	경남	범숙학교	055-298-1127
경기	아우름 대안학교	02-1600-0152	제주	사회복지법인청수 (애서원)	064-773-2010
	나래대안학교	02-393-4720			

- 지원대상: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신청문의: 해당기관, 시·도 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성평등가족부(<https://www.mogef.go.kr>)

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우선지원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지원내용	-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역량 강화 활동 운영 • 운영시간: 방과 후 ~ 21:00(일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92~5) -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https://youth.go.kr/yaca/index.do)

8)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폭력



	<p>피해 청소년이거나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만9~만18세)</p> <p>※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p>
지원내용	<p>-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장기과정(1~4개월), 단기과정(2주 이내)</p> <p>• 장기과정: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개인·집단상담, 문제유형별 집단상담 및 치료 실시, 정신의학적 상담(정신과 전문의 상담), 학적유지를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대안교육)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생활공동체 활동, 가족개입프로그램, 복귀적응 프로그램</p> <p>• 단기과정: 동질집단으로 구성된 집단 및 개인상담, 멘탈피트니스(인지치료), 입교 청소년 및 멘토 간 상호 친밀감 형성을 위한 관계형성 및 다양한 관계축진 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p> <p>※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가족센터 등 기관 및 개인 신청 가능</p>
문의	<p>-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740, www.nyhc.or.kr</p> <p>-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053-665-6924, 6929, www.youthfly.or.kr</p> <p>- 청소년안전망 누리집(https://gov.youthsafety.go.kr)</p>

9) 진로와 진학 주요 정보 검색 사이트 안내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
고용24(워크넷)	https://www.work.go.kr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http://www.jinhak.or.kr/
고입정보포털	https://www.hischool.go.kr/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Main.do
하이파이브(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https://www.hifive.go.kr/index.jsp
하이인포(서울시 인문계고)	https://hinfo.sen.go.kr/
대입정보포털	http://www.adiga.kr/
꿈길(진로체험프로그램)	https://www.ggoomgil.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 입학·취업	https://high-job.sen.go.kr/
센(SEN)진학나침판	https://ipsi.jinhak.or.kr/



4 양육지원

□ 임신 출산 육아 정보제공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p>- 임신, 출산, 육아,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제공</p> <p>- 온라인 전문가 상담</p> <p>- 절차: 회원 로그인 → 상담분야 게시판 이동 → 상담란 입력 → 답변 확인</p> <p>- 분야: 임신, 출산, 육아, 심리 정책상담, 어린이집 이용상담 등</p>
문의	<p>-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p> <p>- 임신출산육아상담: ☎1644-7373</p>

2)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p>-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p> <p>-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p> <p>-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p> <p>-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p> <p>-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 사업</p> <p>-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p> <p>- 유축기 대여 사업</p> <p>-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축하물품 지원</p> <p>-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p> <p>- 임신부 교통비 지원</p> <p>-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p> <p>-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p> <p>- 1인 자영업자 등 임신부 출산급여 지원</p> <p>-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p> <p>-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p> <p>-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p> <p>- 다태아 안심 보험 지원</p> <p>-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방법 안내</p> <p>- 의료기관 정보 제공</p> <p>- 임신, 난임, 출산, 육아, 약물 상담</p> <p>- 동부권,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안내</p>
문의	<p>-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seoul-agi.seoul.go.kr)</p> <p>-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www.workingmom.or.kr)</p> <p>-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www.gworkingmom.net)</p>



3) 우리동네 키움포털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 및 시설 검색 : 우리동네 키움포털				
	<table border="1"> <tr> <td>시설 정보</td> <td>서울형키즈카페 초등돌봄: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어린이집 영유아돌봄: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td> </tr> <tr> <td>서비스 정보</td> <td>우리동네 키움포털 → 서울형키즈카페&초등&영유아돌봄 → 시설별 서비스 소개</td> </tr> </table>	시설 정보	서울형키즈카페 초등돌봄: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어린이집 영유아돌봄: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정보	우리동네 키움포털 → 서울형키즈카페&초등&영유아돌봄 → 시설별 서비스 소개
	시설 정보	서울형키즈카페 초등돌봄: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어린이집 영유아돌봄: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정보	우리동네 키움포털 → 서울형키즈카페&초등&영유아돌봄 → 시설별 서비스 소개				
- 각종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서울형키즈카페(연나이 4~9세), 우리동네키움센터(만 6~12세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방과후 어린이집(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 공동육아방(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보호자), 공동육아 나눔터(자녀를 둔 가정(자녀 및 보호자)), 아이돌봄서비스(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문의	- 홈페이지 (umppa.seoul.go.kr/icare)				

□ 임신·출산 지원

1)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사업)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태아 당 10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 산부인과 방문,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서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온라인 신청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 임신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신청방법	- 통합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 연계 - 직접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구분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월 90,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200,000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시 신청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사용 범위 : 유흥·사행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포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지원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잔액확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또는 사용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문자·알림톡·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서 확인되는 바우처 잔액은 실시간이 아니므로, 정확한 잔액 및 이용내역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간편한 임신 -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의무 이수

- 에너지바우처 지원 (26년 6월에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등본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로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내용	- 일반적인 경우 :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 전체 사용기간(25. 7. 1. ~ 26. 5. 25.) 동안 사용 가능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지원 시: 1인 세대(40,700원), 2인 세대(58,800원), 3인 세대(75,800원), 4인 이상 세대(102,0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5. 7. 1. ~ 25. 9. 30.) 동안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규신청 기간 : 25. 6. 9. ~ 25. 12. 31.)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 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포털 참고)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위소득 250%이하의 취업한부모,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지원내용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26년 기준) - 지원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종일제 월 80~200시간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청소년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연 1,080시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사용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국민행복카드 출시 및 사용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국번없이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1566-3232 (*4번선택)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BC카드	www.bccard.com	☎1899-4651
	롯데카드	www.lottocard.co.kr	☎1899-4282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1566-3336
	KB국민카드	card.kbcard.com	☎1599-7900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1544-8868
※ 기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2) 해산급여

구분	세부내용	
	구분	내용
해산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수급자가 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긴급지원 해산비는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서비스 항목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기간	- 서비스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상이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신청 가능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4)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구분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 대상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문의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주: 50만원 / 22 ~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 ☎1350

6)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	
	대상질환	지원기간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지원대상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0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 및 심부전	입원치료 전 기간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문신청 : 임신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거주지 보건소	

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및 '아이마중' 어플을 통해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8)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검사비지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확진검사비지원 :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환아관리 : 질환에 따른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 온라인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및 '아이마중' 어플을 통해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거주지 보건소

9)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보청기 :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지원내용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 온라인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및 '아이마중' 어플을 통해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거주지 보건소

1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 - 고용보험 가입자 및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지원내용	-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 - 4~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 최대 1년 동안 지급 가능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사용기 한: 최대 1년 6개월 가능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기간 내 총 4번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신청시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 회사 신청 • 육아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회사는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보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급여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한부모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이혼 사실 확인 서류 등)
문의	-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https://1350.moel.go.kr/home/)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자녀 성장 지원

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지자체별 신청 및 지원 시기 상이) - 온라인신청 : 복지포털(www.bokjiro.go.kr)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종류</th> <th>지원내용</th> <th>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생활지원</td> <td>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td> <td>월 65만원 이내</td> </tr> <tr> <td>건강지원</td> <td>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td> <td>연 200만원 이하</td> </tr> <tr> <td>학업지원</td> <td>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td> <td>월 15만원 이하(수업료) 월30만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td> </tr> <tr> <td>자립지원</td> <td>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td> <td>월 36만원 이하</td> </tr> <tr> <td>상담지원</td> <td>①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td> <td>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별도</td> </tr> <tr> <td>법률지원</td> <td>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td> <td>연 350만원 이하</td> </tr> <tr> <td>청소년 활동지원</td> <td>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td> <td>월 30만원 이하</td> </tr> <tr> <td>기타</td> <td>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td> <td>-</td> </tr> </tbody> </table>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원 이하(수업료) 월30만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원 이하(수업료) 월30만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문의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3																											



2) 자녀장려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지자체별 신청 및 지원 시기 상이) - 온라인신청 : 복지포털(www.bokjiro.go.kr)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자</th> <th>산정대상</th> <th>신청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선택</td> <td rowspan="2">반기신청 근로소득자</td> <td>'26년 상반기 소득</td> <td>'26.9.1.~15.</td> </tr> <tr> <td>'26년 하반기 소득</td> <td>'27.3.1.~15.</td> </tr> <tr> <td></td> <td>정기신청</td> <td>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td> <td>'25년 연간 소득 '26.5.1.~6.1.</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기간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6년 상반기 소득	'26.9.1.~15.	'26년 하반기 소득	'27.3.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5년 연간 소득 '26.5.1.~6.1.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기간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6년 상반기 소득	'26.9.1.~15.											
'26년 하반기 소득			'27.3.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5년 연간 소득 '26.5.1.~6.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 6. 2. ~ 12. 1. 입니다.															
신청방법	- 전화신청 : ARS전화(1544-9944) - 홈택스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온라인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대상자가 동의 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제도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문의	- 국세청 : ☎126														

3) 아름다운 동행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위시박스'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법적인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연령 8세~19세) 중 열정과 재능이 뛰어난 자 ※ 법적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없을 경우 기관을 통해 신청
지원내용	- 법적 한부모가족에 속한 미성년 자녀에게 장래희망 실현에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녀의 원활한 재능개발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ex)악기, 미술도구, 운동용품 등



지원범위	- 50만원 이내(택배비 포함) ※ 현금(학원비), 전자기기(컴퓨터, 태블릿PC), 일반 의류, 가구 등 지원제한
지원절차	- 신청(수시지원) → 심사 및 선정(다음달 1일~10일) → 통보 및 지원(다음달 11일~15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 → 지원 신청 → 위시박스 → 신청하기
문의	- 아름다운 동행 : ☎02-737-9595

□ 보육 지원

1) 아동수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 지급 * 매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11만원, 특별 12만원(지역화폐 + 1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부모급여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지원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한 경우 -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만4천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만 6천원 지급 -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5천원)+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 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장애아동수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4) 가정양육수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 복지로(bokjiro.go.kr)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	- 가족지원과 : ☎02-2100-6344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 ☎1577-4206

6)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18세 이하 자녀
지원금액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 ☎1577-4206

7) 시간제 보육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단가 : 5천원(지원단가: 3천원, 본인부담: 2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문의	-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8) 방과후 보육료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하지 않음)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액	- 일반아동 :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할 경우 장애아방과후보육료의 50%(293,000원)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일반아동은 월 20만원 지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9)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0세반</th> <th>1세반</th> <th>2세반</th> <th>3~5세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td> <td>584,000원</td> <td>515,000원</td> <td>426,000원</td> <td>280,000원</td> </tr> <tr> <td>야간</td> <td>584,000원</td> <td>515,000원</td> <td>426,000원</td> <td>280,000원</td> </tr> <tr> <td>24시</td> <td>876,000원</td> <td>772,500원</td> <td>639,000원</td> <td>42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기본	584,000원	515,000원	426,000원	280,000원	야간	584,000원	515,000원	426,000원	280,000원	24시	876,000원	772,500원	639,000원	420,000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기본	584,000원	515,000원	426,000원	280,000원																	
야간	584,000원	515,000원	426,000원	280,000원																	
24시	876,000원	772,500원	639,000원	420,0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	- 교육부 : ☎02-6222-6060																				

10)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3~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3~5세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544-0079 - 교육부 : ☎02-6222-6060

□ 돌봄지원

1) 아이돌봄 지원사업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기관연계 서비스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최대 3명/ 아이돌보미 1인당)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최대 5명/ 아이돌보미 1인당) -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아동 관찰 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이용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종합형) • 기본형 : 학교, 보육 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 불가, 준비된 식사 데워주기만 가능) 등 •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세탁, 놀이공간 정리, 청소, 식사, 설거지 등)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기관연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비용은 서비스 유형마다 상이(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 아이돌봄서비스(<https://idolbom.go.kr/indexPage.do>)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 ☎1577-8136

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서울형 아이돌봄비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아이와 부모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친인척 조력자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지원내용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돌봄 아동수별 시간당 지원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아동수</th> <th>시간당 지원액</th> <th>월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1명</td> <td>7,500원</td> <td>15~30만원</td> </tr> <tr> <td>2명</td> <td>11,250원</td> <td>22.5~45만원</td> </tr> <tr> <td>3명</td> <td>15,000원</td> <td>30~60만원</td> </tr> </tbody> </table>	아동수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1명	7,500원	15~30만원	2명	11,250원	22.5~45만원	3명	15,000원	30~60만원
아동수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1명	7,500원	15~30만원											
2명	11,250원	22.5~45만원											
3명	15,000원	30~60만원											
신청방법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 돌봄비 지급 : 지원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권 지급												
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02-2133-6547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지역아동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를 포함)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문의	-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 ☎02-2133-5179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 ~ 중3) - 우선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다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기초학습,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활동, 귀가 지도 - 방과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방문, 유·무선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
문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02-330-2892~5

- 우리동네 키움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6세~12세의 아동					
지원내용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시설					
	- 돌봄방식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정기 돌봄</td> <td>- 일정한 기간(한달 이상)동안 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에 이용</td> </tr> <tr> <td>일시 돌봄</td> <td>- 학교 휴업 및 공휴일,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이용</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정기 돌봄	- 일정한 기간(한달 이상)동안 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에 이용	일시 돌봄
구분	내용					
정기 돌봄	- 일정한 기간(한달 이상)동안 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에 이용					
일시 돌봄	- 학교 휴업 및 공휴일,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이용					



운영시간	- 학기 중 : 13:00 ~ 20:00 - 장·단기 방학 중 : 09:00 ~ 18:00 ※ 센터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이용요금	- 이용 아동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자치구별 이용료 상이
신청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돌봄서비스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 전화신청의 경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 센터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문의	- 홈페이지 : 우리동네 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 다산콜센터 : ☎02-120

□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

1)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시설이용 - 서울장난감도서관 : 장난감 및 도서, 육아용품, 백일 돌상 대여/ 장난감 수리 및 기부 교환 - 전자책도서관 : 제약 없이 육아 관련 도서를 포함한 전자책 무료 이용 (1회 최대 5권까지 대출 가능) - 육아자람 양육상담 : 양육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지원 -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 심리상담, 노무상담, 법률상담
지원내용	- 홈페이지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seoul.childcare.go.kr) - 대표 전화번호 : ☎02-772-9814~9

2) 드림스타트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지원내용	-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영역별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서비스별 세부 프로그램은 거주지 지역센터로 문의	
	구분	세부내용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인지/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부모/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문 의	- 대표 전화번호 : ☎02-6454-850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3)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²⁾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및 보호자
지원내용	- 상담(개인, 채팅, 게시판, 전화) - 심리검사(대면, 온라인) - 청소년 동반자: 찾아가는 상담, 정서적 지원, 생활지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 연계
신청방법	- 전화를 통한 신청 : ☎02-2285-1318 - 사이버상담(www.teen1318.or.kr)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9세~24세) - 입학 후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내용	- 상담지원 :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대면, 전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상담) - 교육지원 : 학업 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학력 취득 지원, 학교 복귀 지원, 대학입시 지원 등

2)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www.teen1318.or.kr/>)



지원내용	-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직업탐색,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자립지원 : 근로 권익 보호, 기초 소양교육,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 건강검진 : 건강생활 관리, 체력관리, 건강검진(본인부담 없음) - 기타서비스 : 급식지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센터	- 청소년1388 홈페이지(https://1388.go.kr) → 서비스 신청 → 내 주변 시설 -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중

5) 시소와 그네 마포아동복지관(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통합사례관리, 양육정보지원, 양육활동지원, 부모-아동 관계증진지원, 양육상담, 양육자지원 체계구축, 영유아가정 관계형성프로젝트(땀동놀이터), 자조공간기반 양육지원, 희망브릿지-영유아발달지원체계구축, 지역사회연계활동
문 의	- 홈페이지 : https://sisomapo.com - 마포아동복지관 : ☎02-706-0610

6) 따옴상담센터(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 동작구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장애 및 발달지연,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 및 아동 (초등학생 6학년까지)과 학부모(보호자가 동반해야 이용 가능) - 동작구 관내 거주자 및 직장인, 직계가족(자녀, 손자녀)만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이용금액 : 1회 25,000원(검사 및 평가비용은 종류에 따라 상이)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은 지원범위 내 치료비 50% 감면	
	구분	세부내용
	검사안내	종합심리검사, 놀이평가, 언어검사, 영유아발달검사 등
	상담프로그램	놀이, 언어치료, 인지학습, 사회성증진프로그램, 부모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미술 등
신청방법	- 전화로 예약 접수 후 방문 ☎02-825-5575	
문 의	- 대표 전화번호 : ☎02-6454-850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7)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35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40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 50만원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 최대 1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자립 및 취업지원

□ 취업 및 창업 교육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소득' 참고)

구분	세부내용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사업장1(84백만원)+사업장2(-100백만원)=사업소득(0원) ※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실제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보육 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	
그밖에 소득 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30% 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조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은 아래 공제율 적용



구분	세부내용		
그밖에 소득 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지무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 소득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그 밖의 추가 지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별지원 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농어업인 가구 특례” 중 관련 내용 참고) -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및 성착취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아동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 지원수당 -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p>■ 근로소득</p>	
상시근로자 소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일용근로자 소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자활근로 소득 등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로 얻는 수당 중 성과금 성격의 금액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p>■ 사업소득</p>	
농업 소득	- 공적자료(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 자료를 통해 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임업 소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목재산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 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사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과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 및 양식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수급(권)자에게 수협(권)의 어가별 및 양식업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및 양식업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기타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의 소득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국세청 소득자료보다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수급(권)자 소유사업장 피고용인 수를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 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하도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재산소득	
	임대소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의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참고)
	이자소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이자소득 조회결과를 반영, 이자소득 발생 적금 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 수(월단위 산정)만큼 연간 최대 24만원(월 2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
	연금소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주택연금은 가입 여부 확인하여 적용하고, 농지연금은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중 50%는 소득에서 공제. 또한,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소득반영 비율	- 부양의무자, 친 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소득반영 방법	- 정기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권)자의 월소득으로 반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산정 사례	예시1) 1인가구 수급자인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하여 정기후원자 A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 정기후원자 B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분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므로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아동의 월별 지원금액 총합인 정기후원금(20만원)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384,636원) 이하로 사적이전소득 미반영	
		예시2) 2인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 중, 부양의무자 A는 2회(1월~2월) 각각 30만원(총 60만원), 친척 B는 1회(3월) 20만원, 후원자 C는 3회(4월~6월) 각각 65만원(총 195만원) 등 총 6회의 지원이 있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 A, 친척 B, 후원자 C의 지원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629,894원)를 초과하는 지 검토하여 초과시 차액 소득 반영 - 1~2월(월별 30만원), 3월(20만원)은 미반영하며, 4월~6월(월 별 65만원)은 초과금액인 20,106원을 각 월별로 반영하여 20,106원×3월인 60,318원임 - 이에 동 수급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60,318원 • 동 수급자 가구에 부과하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월 부과액은 반영대상 금액 60,318원을 1/12개월로 나눈 5,027원에 해당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삭제 사례	<p>예시1)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지원횟수가 6회 미만이면 소득반영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가 2026.1월에 최초 신청할 당시 조사시점인 2026.1월 기준으로 최근 1년(2025.2~2026.1)간, 2025.5월 2회, 2025.7월 1회, 2025.8월 3회, 2025.9월 2회로 총 8회의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2026.1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산정. 2025.10월 이후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던 중, 2026.7월은 최근 1년(2025.8월~2026.7월)간 지원횟수가 5회이면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을 구한 결과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26.7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p>예시2) 부양의무자 후원자가 소득활동,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사정(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도 지원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p>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 -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임
	부과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가구가 아닌 자의 집(전 월세 포함)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아니거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사적 이전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전체 사용대차와 부분 사용대차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여부와 사용대차 공간의 독립성(방 외 주방과 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 -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③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자



(단위 : 원)

	구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 이전 소득 부과 기준	4급지 기준 임대료		212,000	238,000	283,000	329,000	340,000	402,000
	4급지 기준 임대료의 60%	A	127,200	142,800	169,800	197,400	204,000	241,200
	부양 의무자 제공전체	A×100%	127,200	142,800	169,800	197,400	204,000	204,000
	-부양 의무자 제공부분-제3자 제공전체	A×78%	99,216	111,384	132,444	153,972	159,120	188,136
	제3자 제공부분	A×20%	25,440	28,560	33,960	39,480	40,800	48,240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4)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수당121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의 금액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공적이전 소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급여 연계 자료 (2) 타 기관 연계 자료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급여

- 국외기타소득 :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2)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분	세부내용
수급자격	I 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비경제활동)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II 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공통 - 취업활동계획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프로그램 등 제공 - 구직활동지원 :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제공, 채용박람회 등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90만원*6개월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 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최대 28.4만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위탁기관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3회)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시 추가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가입 후 '구직등록' 우선 진행 필수
접수/문의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URL: https://www.work24.go.kr



3)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유지 및 탈빈곤 지원

구분	세부내용
내용	- 의무참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함 - 희망참여 • 법 제7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은 희망시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가능
선정방법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함
대상선정	- 근로능력 있다고 판정된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진행절차	<p>- 조건부 수급자 기준 - 희망 참여자 기준 - 상기 절차 중 상담부터 준용(조건 부과 및 유예 여부 미적용)</p>
지자체 부서별 업무처리	- 업무처리 유관 부서: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기초생활보장팀 보장결정 - 부서별 업무 범위 - 통합조사관리팀: 자산조사,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전출입 통보 - 기초생활보장팀: 보장결정, 통지(조건부수급자 결정통지 포함) - 자활고용지원팀: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참여관리, 평가 및 사후관리

구분	세부내용														
참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로 보장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신청 가능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22.11.24)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자활근로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조건부수급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td> </tr> <tr> <td>자활급여특례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td> </tr> <tr> <td>일반수급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td> </tr> <tr> <td>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td> </tr> <tr> <td>차상위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 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td> </tr> <tr> <td>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 결정 필수 (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조건부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일반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 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 결정 필수 (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구분	세부내용													
	조건부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일반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 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 결정 필수 (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구분	세부내용															
근로능력 판정	<p>※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대상 아님</p> <p>[참고] 근로능력판정 흐름도</p>															
	<p>자활지원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대상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립 - 대상: 모든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기상담: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활역량평가표 참조하여 초기상담 실시,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② 대상자별 판단: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조건부수급, 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유예) ③ 자활사업 배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의뢰 ④ 대기자 처리방안: 자활사업 대기기간이 1개월 초과할 경우 다른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함 ⑤ 사후조치: 조건이행 여부, 유예상황, 사업 참여 결과를 최소 3개월마다 재확인하여 조건부과 유지 또는 변경 등 적절한 조치 취함 <p>[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결과</th> <th>사업</th> <th>실시기관</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85점 이상 (집중취업지원대상자)</td> <td>국민취업지원제도*</td> <td>고용센터</td> <td>-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td> </tr> <tr> <td>85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td> <td>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td> <td>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td> <td>-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td> </tr> <tr> <td>55점 미만 (근로교육 증진 대상자)</td> <td>자활근로 근로유지형</td> <td>지자체, 지역자활센터</td> <td>-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td> </tr> </tbody> </table>	평가 결과	사업	실시기관	기준	85점 이상 (집중취업지원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85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55점 미만 (근로교육 증진 대상자)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사업	실시기관	기준													
85점 이상 (집중취업지원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85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55점 미만 (근로교육 증진 대상자)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구분	세부내용			
	지부명	지역자활센터 개수	지부명	지역자활센터 개수
지역자활센터 지부별 현황	강원지부	18	서울지부	30
	경기지부	33	울산지부	5
	경남지부	20	인천지부	11
	경북지부	19	전남지부	23
	광주지부	9	전북지부	17
	대구지부	10	제주지부	4
	대전지부	5	충남세종지부	16
	부산지부	18	충북지부	12
	총계		250	

구분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
2025년	60,220원	52,210원	28,980원
2026년	62,080원	53,840원	29,940원
증가율	3.1%	3.1%	3.3%
표준소득액(월)	1,614,080원	1,399,840원	778,440원

* 실비제외

※ 표준소득액은 자활근로 사회보험 소득신고 등 월평균 소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4) 국민내일배움카드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등학교 1~2학년생 ③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⑥ 만 75세 이상인 사람 ⑦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 가능) ⑧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지원내용	- 1인당 5년간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55~10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11.6~36만원 지급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카드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통해 온라인 신청 - 관할고용센터 직접 방문(☎1350) ※ 실업 상태인 경우 사전 구직신청 필요(고용24 온라인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통해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고용센터 방문 필요) ※ 140시간 이상 장기과정 신청 시 훈련 진단 상담 필수(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발급과정	-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 발급가능 여부 결정 → 발급 및 카드수령
문 의	- 고용노동부: ☎1350



5) 서울시 인력개발기관

- 서울 커리어(우먼업)

기관명	서비스 내용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동작구 대방동)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 조정, 기능/ 통합정보제공 - 여성유망직종 개발 및 보급 -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총괄
서울시여성발전센터 (5개소 - 광진, 금천, 노원, 마포, 양천)	- 전문 및 일반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운영 - 지역연계 프로그램(노인, 아동) 운영 - 여성창업보육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 자치구별로 소재)	- 실업자 및 재직자(국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기타특강 운영 - 취업 상담 및 알선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성능력개발원		동작구 노량진로 10	☎ 02-813-1906	https://swrd.seoulwomanup.or.kr
여성발전센터	남부	금천구 독산로50길 23	☎ 02-802-0922	https://nambu.seoulwomanup.or.kr
	동부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 02-460-2300	https://dongbu.seoulwomanup.or.kr
	북부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 02-3399-7699	https://bukbu.seoulwomanup.or.kr
	서부	양천구 남부순환로371	☎ 02-2607-8791	https://seobu.seoulwomanup.or.kr
	중부	마포구 토정로35길 17	☎ 02-719-6307	https://jungbu.seoulwomanup.or.kr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강북	강북구 덕릉로108, 3층	☎ 02-802-0922	https://nambu.seoulwomanup.or.kr
	강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57, B1층 131호	☎ 02-2692-4549	https://gangseo.seoulwomanup.or.kr
	관악	관악구 쑥고개로75, 1층~5층	☎ 02-886-9523	https://gwanak.seoulwomanup.or.kr
	구로	구로구 공원로63, 2층	☎ 02-867-4456	https://guro.seoulwomanup.or.kr
	노원	노원구 공릉로187, 5층	☎ 02-951-0187	https://nowon.seoulwomanup.or.kr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60-1, 6층	☎ 02-921-2020	https://ddm.seoulwomanup.or.kr
	동작	동작구 사당로299, 2~5층	☎ 02-525-1121	https://dongjak.seoulwomanup.or.kr
	서대문	서대문구 신촌역로10, 4층	☎ 02-332-8661	https://sdm.seoulwomanup.or.kr
	서초	서초구 강남대로216, 3층	☎ 02-6929-0011	https://seocho.seoulwomanup.or.kr
	성동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5층	☎ 02-3395-1500	https://sd.seoulwomanup.or.kr
	송파	송파구 중대로9길 34, 2층	☎ 02-430-6070	https://songpa.seoulwomanup.or.kr
	영등포	영등포구 영중로61	☎ 02-858-4514	https://ydp.seoulwomanup.or.kr
	용산	용산구 청파로139-21	☎ 02-714-9762	https://yongsan.seoulwomanup.or.kr
	은평	은평구 녹번로76	☎ 02-389-1976	https://ep.seoulwomanup.or.kr
	종로	종로구 대학로11길 23, 2~4층	☎ 02-765-1326	https://jongno.seoulwomanup.or.kr
	중랑	중랑구 망우로32길 20	☎ 02-3409-1947	https://jungnang.seoulwomanup.or.kr
	강동	강동구 양재대로 1458 5,6층	☎ 02-475-0110	https://gd.seoulwomanup.or.kr
	장애	강서구 화곡로 346, 2층	☎ 02-6929-0002	https://wsbt.seoulwomanup.or.kr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지원내용	-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경력개발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자신감 고취 - 직업교육훈련: 직무능력강화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 취 창업연계: 인턴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창업유관기관 연계 - 경력단절예방: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 개선지원, 경력단절협력망구축, 인식개선사업 - 취업 후 사후관리: 고용유지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구축 지원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6)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러닝 교육)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교육	- 창업 경영 교육, 재창업패키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등 다방면 창업 관련자료 제공								
현장교육	<p>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창업 역량 강화 및 경영 여건 개선 촉진을 위한 업종별 전문고급기술 교육 지원</p> <table border="1"> <tr> <td>지원대상</td> <td>소상공인, 예비창업자</td> </tr> <tr> <td>교육기간</td> <td>공고일로부터 ~ 10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td> </tr> <tr> <td>지원한도</td> <td>- 업종기초(20만원 한도, 5시간 내외, 국비 100% 지원) - 업종심화(40만원 한도, 10시간 내외, 자부담 10%) - 업종고급(60만원 한도, 20시간 내외, 자부담 10%)</td> </tr> <tr> <td>지원내용</td> <td>업종별 전문기술 교육 과정을 보유한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맞춤형 교육지원</td> </tr> </table>	지원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교육기간	공고일로부터 ~ 10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한도	- 업종기초(20만원 한도, 5시간 내외, 국비 100% 지원) - 업종심화(40만원 한도, 10시간 내외, 자부담 10%) - 업종고급(60만원 한도, 20시간 내외, 자부담 10%)	지원내용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 과정을 보유한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맞춤형 교육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교육기간	공고일로부터 ~ 10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한도	- 업종기초(20만원 한도, 5시간 내외, 국비 100% 지원) - 업종심화(40만원 한도, 10시간 내외, 자부담 10%) - 업종고급(60만원 한도, 20시간 내외, 자부담 10%)							
	지원내용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 과정을 보유한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맞춤형 교육지원							
	<p>소상공인 지속성장 및 경영개선,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p> <table border="1"> <tr> <td>지원대상</td> <td>소상공인, 예비창업자</td> </tr> <tr> <td>교육기간</td> <td>공고일로부터 ~ 12월(교육별로 상이)</td> </tr> <tr> <td>지원한도</td> <td>교육별로 상이(교육과정 참고) 국비지원 100%</td> </tr> <tr> <td>지원내용</td> <td>수출·창업교육, 지역맞춤교육, 소외계층교육, 찾아가는 주문식 교육 등</td> </tr> </table>	지원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교육기간	공고일로부터 ~ 12월(교육별로 상이)	지원한도	교육별로 상이(교육과정 참고) 국비지원 100%	지원내용	수출·창업교육, 지역맞춤교육, 소외계층교육, 찾아가는 주문식 교육 등
	지원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교육기간	공고일로부터 ~ 12월(교육별로 상이)							
	지원한도	교육별로 상이(교육과정 참고) 국비지원 100%							
	지원내용	수출·창업교육, 지역맞춤교육, 소외계층교육, 찾아가는 주문식 교육 등							
	<p>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증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최신 트렌드 반영한 교육과정 지원</p> <table border="1"> <tr> <td>지원대상</td> <td>소상공인</td> </tr> <tr> <td>교육기간</td> <td>프로그램 별 상이</td> </tr> <tr> <td>지원한도</td> <td>국비지원 100%(무료)</td> </tr> <tr> <td>지원내용</td> <td>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최신 트렌드(AI, 로컬라이징, 디지털화 등)를 반영한 교육 지원(오프라인 실습 교육)</td> </tr> </table>	지원대상	소상공인	교육기간	프로그램 별 상이	지원한도	국비지원 100%(무료)	지원내용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최신 트렌드(AI, 로컬라이징, 디지털화 등)를 반영한 교육 지원(오프라인 실습 교육)
	지원대상	소상공인							
교육기간	프로그램 별 상이								
지원한도	국비지원 100%(무료)								
지원내용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최신 트렌드(AI, 로컬라이징, 디지털화 등)를 반영한 교육 지원(오프라인 실습 교육)								
수강방법	온라인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나의 강의실 입장 → 학습 → 이수증 출력								
	현장 - 회원가입 → 교육과정 검색 → 각 현장교육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문의	- 홈페이지 (http://edu.sbiz.or.kr) - 오프라인 교육 : ☎1357 / E-러닝 교육 시스템 : ☎1644-5302								



□ 창업 자금 대어

1)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제한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 6회차 이상 변제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법인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창업자금</th> <th>운영자금</th> <th>시설개선자금</th> <th>긴급생계자</th> </tr> </thead> <tbody> <tr> <td>대출한도</td> <td>7천만원</td> <td>2천만원</td> <td>2천만원</td> <td>1천만원</td> </tr> <tr> <td>대출기간</td> <td>6년 이내</td> <td>5.5년 이내</td> <td>5.5년 이내</td> <td>5년 이내</td> </tr> <tr> <td>금리</td> <td colspan="4">연 4.5%</td> </tr> </tbody> </table>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연 4.5%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연 4.5%																				
	-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																				
	-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 지원																				
	-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 지원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https://www.kinfa.or.kr)																				



2) 열매나눔재단

-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창업 기본 교육 및 준비 상담 - 창업자금 최대 3,000만원 무이자·무담보·무보증 대출(3개월 거치, 57개월 원금 상환) - 성실상환 시 최대 200만원 상환금 감액 - 1:1 맞춤 창업 컨설팅 - 사후관리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중위소득 70% 이하) - 서울, 인천, 경기(일부) 소재 창업예정자(기창업자는 창업 후 6개월 이내)
진행절차	<p>열매나눔 창업준비학교 수료</p> <p>↳ 열매나눔 창업준비학교란? 창업기본교육 및 실무교육, 1:1 창업멘토링을 제공하는 '여성가장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준비학교를 수료한 분들은 본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p>
문의	- 열매나눔재단 : ☎02-2038-8514

- 저소득 여성가장 네일아트 취·창업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재단 운영 네일숍 '더나은네일' 인턴 근무(최소 4개월, 최대 6개월) - 활동 장학금 지원 - 타 네일숍 서비스 체험 및 관련 교육 제공 - 전문가 코칭을 통한 네일아트 기술 훈련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소지자
진행절차	
문의	- 열매나눔재단 : ☎02-2038-8514



3) 아름다운재단

-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구분	세부내용												
사업대상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돌보며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												
신청자격	-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 - 가구 전체의 한달 소득이 중위소득 70%기준보다 낮은 한부모여성 가구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단위:원)</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중위소득 70%</td> <td>2,939,504</td> <td>3,751,325</td> <td>4,546,317</td> <td>5,289,703</td> <td>5,989,166</td> </tr> </tbody> </table> <p>- 2026년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위소득 기준을 따르며, 부동산, 차량 등 보유한 재산 기준은 없음 -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횟수 소급 적용됨 - 신규창업에 한함</p> <p>※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창업이 아닌, 이미 가게를 연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려는 사람 - 가게를 열 장소의 가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사람 - 민간기관,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 세금 체납이 있는 사람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을 창업하려는 사람 	구분 (단위: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0%	2,939,504	3,751,325	4,546,317	5,289,703	5,989,166
구분 (단위: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0%	2,939,504	3,751,325	4,546,317	5,289,703	5,989,166								
지원지역	<table border="1"> <thead> <tr> <th>수도권</th> <th>강원권</th> <th>대전권</th> <th>대구권</th> <th>광주권</th> <th>부산권</th> </tr> </thead> <tbody> <tr> <td>서울/경기/인천</td> <td>원주/춘천</td> <td>대전/천안/청주/충남북 일부</td> <td>대구/경북 일부</td> <td>광주/전남북 일부</td> <td>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td> </tr> </tbody> </table>	수도권	강원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부산권	서울/경기/인천	원주/춘천	대전/천안/청주/충남북 일부	대구/경북 일부	광주/전남북 일부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수도권	강원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부산권								
서울/경기/인천	원주/춘천	대전/천안/청주/충남북 일부	대구/경북 일부	광주/전남북 일부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지원내용	- 보증금 포함 창업 대출금 4,000만원 지원 (8년 상환/이자1%)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 전후 1:1 사례관리자 동행 -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통합 지원 - 점포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대출금 합계 최대 4,000만원 대출지원 (보증금 신청 필수)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금액</th> <th>조건</th> </tr> </thead> <tbody> <tr> <td>대출금</td> <td>최대 4,000만원</td> <td>-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이자: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이자포함))</td> </tr> </tbody> </table> <p>- 전문 창업컨설팅 지원 :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p> <p>- 통합지원 :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p>	내용	금액	조건	대출금	최대 4,000만원	-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이자: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이자포함))						
내용	금액	조건											
대출금	최대 4,000만원	-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이자: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이자포함))											



접수기간 및 심사일정	구분	64차	65차
	접수	2/2 ~ 2/27	6/1 ~ 6/30
	심사	3/3 ~ 4/15	7/1 ~ 8/14
	최종발표	4/17	8/18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4/24 ~ 4/25	8/28 ~ 8/29

- 접수, 심사 일정은 아름다운재단과 협력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발표 이후 선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필참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진행되며, 전담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본격적인 창업 진행
- 창업자금의 원금은 사업 개시 3개월 뒤부터 상환

신청 및 지원 절차
- 모집공모 → 서류심사 → 1차 면접심사(창업의 준비성) → 신용조회 → 2차 면접심사 및 기술심사(업종의 전문성) → 현장실사(가정방문) → 최종발표

신청방법
-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fax, e-mail 접수 불가)

문의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02-3675-1240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희망가게 수도권 담당자): ☎032-873-3800

-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자녀 기준 고3 이하 자녀 양육중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여성가족
지원내용	-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비 및 생활안정금 1인당 최대 350만원 지원 - 긴급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아이돌봄비 최대 1인당 145만원 지원 -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대면 네트워크) 지원
문의	-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 사업관련문의 grant@bf.or.kr



□ 근로복지공단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대상이며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 충족하는 자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는 대상 아님)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 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2,051,390	3,359,434	4,287,229	5,195,790	6,045,375	6,844,762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 중위소득 80% 원칙 적용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
•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로 예외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기준 제외



구분	세부내용
대부 가능한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집체·비대면 실시간 원격 훈련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www.work24.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www.cw.or.kr
대부한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는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 한도로 지원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무급휴직자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월 2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지원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 (소급 신청 불가, 월별 신청) -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원 초과 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 1/21-5/30 훈련 (140시간 이상))</p> <p>1월 훈련: 15일 미만으로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접수불가)</p> <p>2월 훈련: 3/1 ~ 3/10까지 신청, 3월 지급 - 신규신청</p> <p>3월 훈련: 4/1 ~ 4/10까지 신청, 4월 지급 - 추가신청</p> <p>4월 훈련: 5/1 ~ 5/10까지 신청, 5월 지급 - 추가신청</p> <p>5월 훈련: 6/1 ~ 6/10까지 신청, 6월 지급 - 추가신청</p> <p>* 신규 신청 이후 동일한 훈련에 대한 월별 지급 신청은 '추가신청' 유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동일, 보증번호 추가 발행)</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신청자의 경우 대부 적격여부 판단하여, 훈련기간 중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재 등의 사유 발생시 대부실행 중단 -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10일까지(휴일인 경우 익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실행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법정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해 월별 대부 신청 - 훈련개시월과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모두 15일 미만일 경우에만 합산 → 합산하여 15일 이상일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개시월, 종료월 중 하나만 15일 미만인 경우 합산 적용 불가)



대부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 연 1.0% (신원보증료 별도)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근로복지넷 '신용보증지원' 참고) - 매월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 환급) - 대부기간 내 월별 신청, 매월 보증서 발행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공단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부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 인터넷접수: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https://welfare.comwel.or.kr)※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접수방법	- 연중 수시 접수(단, 투입시기 협의)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생활안정자금

※ 6종 :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구분	세부내용	
혼례비	용자개요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용자한도	- 1,250 만원 범위 내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25년 사업기준 252만원 이하, 26년 사업기준 268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 이미 용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용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용자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공통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혼례비	접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용자 신청
	선발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용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용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의료비	용자개요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치료비,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용자 불가
	용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실제 비용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분의 1이하(25년 사업기준 252만원 이하, 26년 사업기준 268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 이미 용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용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의료비	용자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공통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용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용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용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특수형태 근로 공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접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용자 신청		
선발	- 1차 수시(즉시)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용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용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노부모 부양비	용자개요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조)부모 부양에 드는 비용 용자대상자인 피부양자 인정 요건 ① 보수 또는 소득이 없으면서 ② 신청인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③-1 (원칙)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6개월 이상 동일세대 구성하는 경우 ③-2 (예외)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동일세대 6개월 미만 구성 또는 동일세대 미구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신청은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인정(세대원 중 여러명이 용자 신청인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각각 신청 불가)	
	용자한도	- 2,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노부모 부양비	신청기한	-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25년 사업기준 252만원 이하, 26년 사업기준 268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 이미 용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용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	
	용자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용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근로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접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용자 신청		
선발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용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용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장례비	용자개요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용자대상자인 피부양자 인정 요건 ① 보수 또는 소득이 없으면서 ② 신청인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③-1 (원칙)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6개월 이상 동일세대 구성하는 경우 ③-2 (예외)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동일세대 6개월 미만 구성 또는 동일세대 미구성일 경우 ④ 신청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신청은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인정(세대원 중 여러명이 용자 신청인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각각 신청 불가)
	용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25년 사업기준 252만원 이하, 26년 사업기준 268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 이미 용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용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
	용자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소액 생계비	증빙서류	공통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용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용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용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접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용자 신청	
	선발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용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용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용자개요	- 근로자의 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휴직이 신고 된 경우 (부득이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확인된 휴업·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용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신청기한	- 용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25년 사업기준 252만원 이하, 26년 사업기준 268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감소요건	- 용자대상 월 소득·매출이 용자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소액 생계비	신청제한	- 이미 용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용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용자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공통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등 휴업·휴직 확인 가능 서류 또는 사업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 확인 가능 서류 - 별지 제4호서식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용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월의 소득·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접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용자 신청		
선발	- 1차 수시(즉시)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용자자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용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자녀 양육비	용자개요	- 18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용자한도	-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신청기한	-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25년 사업기준 252만원 이하, 26년 사업기준 268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 이미 용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용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용자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공통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자녀 양육비	접수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용자 신청
	선발	- 1차 수시(즉시)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용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용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접수처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세정책/제도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구분	세부내용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인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p>소득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p>*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p>



신청자격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5.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2.4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대상	-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5.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신청자격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연간 총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5년 연간 소득	26.5.1.~6.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6년 상반기 소득 26년 하반기 소득	26.9.1~9.15. 27.3.1.~3.15.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입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 : 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신청요건(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문의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6.12.30.	연간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하반기	27.6.30.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국세상담센터 ☎ 126				



□ 자산형성 지원

1)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세부내용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하는 날을 기준, 만 19~34세 청년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50%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본인저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지급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처리절차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포털(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복지포털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 꿈나래통장

-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자 - 만 14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가구(3자녀 이상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저축목적	- 자녀 교육비(가입 신청 시 지정한 참가아동 대상)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고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
총 적립 금	3년	350만원 +이자	504만원 +이자	720만원 +이자	270만원 +이자	378만원 +이자	540만원 +이자	648만원 +이자	매월 적립 시
	5년	600만원 +이자	840만원 +이자	1,200만 원+이자	450만원 +이자	630만원 +이자	900만원 +이자	1,080만 원+이자	
신청절차 및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한은 매년 상이함 -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자격여부 심사 → 선정 → 통장개설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거주지 주민센터 								

3) 디딤씨앗통장

- 양육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하여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가입대상	- 보호대상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모자가족,조손가족,부자가족,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p>- 입양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지원기간	<p>-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p> <p>- 정부(지자체)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p>
매칭 및 적립	<p>- 기본 매칭적립액</p> <p>- 추가 적립액</p>
사용용도	<p>- 만 18세(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p>- 만 24세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가입기간	<p>-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중도해지는 사망, 이민 등의 사유에만 가능)</p>
지원내용	<p>- 아동이 직접 저축을 하거나, 후원받을 경우 정부가 1:2 비율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가능 금액: 월 최대 50만원, 연 600만원까지이며, 월 최대 지원한도는 10만원 <p>- 기본매칭적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 <p>- 추가적립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 가능, 월 5만원 넘는 추가 적립액 국가 매칭 불가(최대지원금 월 최대 10만원)
신청절차	<p>- 동 주민센터 신청 → 자격여부 심사 → 선정 → 통장개설(신한은행)</p> <p>-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p>
문의	<p>-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p> <p>- 보건복지상담센터 ☎129</p> <p>- 거주지 주민센터</p>



6 의료지원

□ KT&G 복지재단


1) 성인 보호자 의료비지원¹⁾

구분	치료지원
지원대상	<p>- 저소득 2인 이상 가정 내 보호자 (만19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내 성인)</p> <p>- 등본 상 단독세대 또는 시설수급자의 경우 지원 제외</p>
지원내용	<p>- 의료비 100만원 지원</p> <p>- 치료비, 수술비, 재활, 보장구 구입 등 (간병비 제외)</p> <p>- 병명 제한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치료는 지원 불가</p>
신청기간	<p>- 매월 1일 ~ 20일 (연중)</p>
지원절차	<p>지원절차</p> <p>※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사회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개인 신청 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재단 홈페이지 사연접수 02 매 월 마지막주 5명 선정 03 온라인 모금 진행 (1개월) 04 2주 이내 기관 후원금 통장 입금 05 결과보고 제출
제출서류	<p>※ 6개월 이내 발급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2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② 경제상황 증명서류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관련 증명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중위소득 100%이하 증명서(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 세대 내 소득발생 가구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 노출 필수) ④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 ⑤ 기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⑥ 개인정보동의서 (KT&G 복지재단(http://www.ktngwelfare.org/business/busines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안내→취약계층지원사업→의료비지원→제출서류(필수확인)→첨부파일
문의	<p>- KT&G 복지재단 : ☎02-563-4459</p>

1) KT&G 복지재단(<http://www.ktngwelfare.org/business/business2>)→사업안내→취약계층지원사업→의료비지원



2) 아동 의료비지원²⁾

구분	치료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 아동 (만18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아동)
지원내용	- 의료비 500만원 지원 - 치료비, 수술비, 재활, 보장구 구입 등 (간병비 제외) - 병명 제한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치료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
제출 필요 서류	※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①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2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② 경제상황 증명서류 (택1)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관련 증명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중위소득 80%이하 증명서(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 세대 내 소득발생 가구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 노출 필수) ④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 ⑤ 기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⑥ 개인정보동의서 (KT&G 복지재단(http://www.ktnwelfare.org/business/business2)) →사업안내→취약계층지원사업→의료비지원→제출서류(필수확인)→첨부파일
지원절차	지원절차 ※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사회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개인 신청 불가) 
문 의	- KT&G 복지재단 : ☎02-563-4459

2) KT&G 복지재단(<http://www.ktnwelfare.org/business/business2>)→사업안내→취약계층지원사업→의료비지원



□ (재)아름다운 동행

1) 개안수술 지원사업³⁾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가정 환자 • 망막질환, 각막이식 등 안과적 수술로 실명 예방 또는 시력 회복이 가능한 자 차상위 및 수급자 우선 지원
지원금액	- 개안수술에 필요한 수술비 및 치료비 (1인당 본인부담액 총액)
지원범위	- 망막질환 :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 - 각막이식수술 : 각막손상으로 인하여 이식수술이 필요하며, 각막이식 가능한 환자 - 기타 안질환 :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 수술이 필요한 환자 - 각막이식수술은 지정병원에서만 수술 가능(동국대 일산병원) - 입원비의 경우 일반기준(4인 이하)으로 지급됨 - 지원결정 전 수술 시 지원되지 않음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및 해당 지원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
지원방법	- 매월 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수시접수
지원절차	- 복지사업수행단체(종합사회복지관, 병원 사회사업팀도 가능)를 통해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개인신청불가)
서류 및 신청방법	-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 → 지원신청 → 지원사업 안내 참고 -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는 이메일 접수 (thenanum@hanmail.net)
문 의	- 나눔사업팀 : ☎02-737-9595

□ 한국여성재단

1) 건강지원사업치과진료분야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여성가장 (개인 신청 불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치과 치료비(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가능. 교정치료 불가) - 심사과정 중 연계된 치과의 검진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3) 아름다운동행(www.dreaminus.org)



구분	세부내용
지원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서류 접수</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차 서류 심사</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2차 검진치과 연계 및 심사</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최종심사 및 발표</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치료 및 사례관리</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과 보고</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의료비 지원 (결과보고 검토 후)</div> </div> <p>- 반드시 서울적십자병원 진료 후 희망진료센터방문 - 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본원 진료협력팀을 통해 입원 결정 후 상담 진행</p>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1팀 : ☎02-336-6389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의료비 지원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등록체류, 미등록체류 포함) - 다문화가족 및 직계혈족(외국 국적일 경우) - 난민 및 그 가족(위 지원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 기타 의료소외계층(내국인의 경우 서울적십자병원 내 사회사업팀 우선 상담)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입국일 기준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자 - 진료비 지원 심사 평가표 작성 시 일정 점수 이상인 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 50~100% 차등 지원 - 지원불가: 접수비, 외래 약,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치과, 정신의학과, 신장투석, 예방접종 등 *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여부 및 지원을 결정
지원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전화문의 및 내원문의 (02-2002-8684)</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서울적십자병원 진료 후 희망진료센터 방문</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의료비 지원 상담 진행</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내부심사 후 지원율 결정</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외래 또는 입원치료 시행</div> </div> <p>- 반드시 서울적십자병원 진료 후 희망진료센터방문 - 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본원 진료협력팀을 통해 입원 결정 후 상담 진행</p>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 ☎02-2002-8740 - 진료·상담시간 : 오전 9:00~12:30, 오후 13:30~17:00

4) 희망진료센터(<http://hncenter.or.kr/medical-expenses/seoul/>)



□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 기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 지원인원 : 분기별 2인 예정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자 • 향후 예상 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함 - 질병에 따른 제한 없음(아래 항목 우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의료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의 비중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만성질환의 재활치료비 등 장기적·반복적 치료비는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음) - 사회복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 - 공개모금 가능 여부(※참고 : 네이버 해피빈 모금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 등 공개모금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선정자의 사연 및 사진을 공개함
지원내용	- 재단 지원 치료비 100만원 + 네이버 해피빈 및 기타 모금액 전액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대상자 직접신청 불가, 등록된 시설·단체·기관만 신청 가능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후 의료비는 개인이 아닌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 선정 후 약 2개월 모금 진행 - 모금 완료 후 3주 이내 치료비 전달식 진행 및 모금액 지급 예정(추후 협의) - 사업종료 후, 공문과 함께 결과보고(재단양식) 제출 필수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여, 신청기간에 따라 신청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 https://www.wocheon.or.kr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1회(연4회) - 재단사무국: ☎02-851-6798



□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 - 기타사항 : 치료 후 사회복귀가 가능한 경우,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본인에 한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 치과 치료, 미용성형, 교통사고, 각종 상해 및 사고, 자살시도 환자 등 제외 - 실손보험과 중복수혜 금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등 고액의 긴급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료비 및 재산 정도를 심사 후 차등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 1회) - 지원금액: 신청금액 별도 심의(의료비 및 재산 정도를 심사 후 차등 지원)
지원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해당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온라인 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서류심사 진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정 통보 (병원: 공문)</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의료비 영수증 등 제출 (매월 10일까지 도착)</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의료비 지급 (매월 말일까지 해당병원에 입금)</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를 통해 결정된 대상자 의료기관으로 입금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 개인신청 불가 - 온라인 접수(향후 영수증 등은 우편으로 원본 제출)
문의	-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 보아스사회공헌재단 : 의료비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 중위소득 약 100% 이하 등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 - 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심사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 - 약 10~12개 과목, 50~60개 이상 치료 항목 지원 - 비급여 치료(특히 치과)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가능 * 예시(임플란트, 치과 치료, 수술비, 검사비, 입원 및 외래 치료비)
지원방식	- 병원비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사람을 위해 재단이 병원과 연결해 치료비를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앱 신청: 보리 앱 사용(서류 사진 촬영 → 업로드 → 간편 신청) • 전화 상담 및 기관 연계 신청 가능 • 복지기관, 병원 통해 추천 접수도 가능
문의	- 대표전화: ☎1661-1402



□ 대한적십자사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 생계·주거 등과 연계한 통합지원 가능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횟수 : 1회/6회 - 가구인원 별 월별 지원금액 상이 - 공적(정부)지원(생계비, 주거비) 받을 경우, 해당 수급영역 지원 불가 • 주거지원(월임차료, 연체공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횟수(임차료 기준) : 1회/12회 - 가구인원 별 월별 지원금액 상이 - 공적(정부)지원(생계비, 주거비) 받을 경우, 해당 수급영역 지원 불가 •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500만원 이내 - 실비지원
지원절차	- 상담 → 심사 → 지원 결정 → 지급
신청방법	- 정부 공적지원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통한 접수
문의	- 대한적십자사 지역지사(☎서울: 02-2181-3104~6,10)



7 위기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구분	세부내용
긴급 지원 대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한 경우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 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p>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794,010원, 4인기준 4,573,330원)</p> <p>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p> <p>금융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p>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종류	지원내용	지원 금액	최대횟수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78만3,000원/월(1인기준) 199만4,600원/월(4인기준)	6개월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가구원 수 관계없음)	1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가능 (생계비 지원 중 또는 종료 후 3개월이내)	39만 8,900원/월 이내 (대도시 1인 기준), 66만 2,500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3,000만원이하대출지원 (서울·경기·인천기준/본인 부담금5%)	12개월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만 2,000원/월(1인 기준) 149만 4,100원/월(4인기준)	6개월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만 7,900원/분기 중: 18만 원/분기 고: 21만 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¹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 원/월 -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개월)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지원절차	지원 절차	세부내용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 요청/신고 발생시 현장 확인 - 대상자,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군·구청장 - 1일 이내 실시 -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 1일 이내 실시 -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지원결정 및 지급	- 현장 확인 후 지원 필요시 지체없이 실시	
사후조사	- 소득 및 재산/ 1개월 이내	
적정성 심사	- 3개월 이내/ 사후조사보고서 토대	
적정,부적정	- 적정 : 종료/지원연장 - 부적정 : 지원 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

문 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 서울형 긴급복지

구분	세부내용							
긴급 지원 대상 기준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재산	- 4억 900만원 이하							
금융	- 1,0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2,324,400원	2,636,700원	
	의료	최대 100만원 이내						
	주거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 시설이용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위기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 지원 가능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신청)	지원결정		지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본인요구 복지플래너 지역주민 등 발굴	① 담당자 선지원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현물/현금) 동/구→대상자	① 기존 복지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타제도 후원연계 (구/동)	
		↓ 사후승인			↓			
		② 동/구 사례회의			② 일반대상자 차상위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 ☎02-120								



□ 바보의 나눔 : 여성가장긴급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정규직 노동자 추가)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범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신청 불가(심사 시 생계비 신청금액은 제외됨)	
	- 신청자 및 신청기관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및 집행 불가	
	생계비	- 생활용품 구입, 식비, 통신비 등
	주거비	-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이사비 등
의료비	- 본인 및 가족의료비(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간병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등	
교육비	- 자립 및 직업교육, 보육료 등	
접수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매월 5일 18시까지) 접수기한이 주말, 대체휴일, 공휴일이더라도 연장 없음	
접수방법	- 신청기관 및 단체 1개월 이상 사례관리 또는 가정방문 중이거나 향후 사례관리 과정에 동의한 신청자(여성가장)의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관 등) -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① 개인(여성가장)의 직접 신청 ②탈락 후 2회 이상 재신청 ③ 의료기관	
지원절차	지원절차	세부내용
	서류접수	- 매월 5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심사	- 3주 소요
	선정	- 선정 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신청월 말~익월 초)
	결과보고	- 지원금 사용 및 결과보고서 제출(지원 종결 후 1개월 이내)
문의	- 나눔협력파트: ☎02-727-2511	



□ 신한금융희망재단 : 2026년 위기가정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사회복지 유관기관 내 사례관리 대상자 중 위기가정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구분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80%	2,051,632	3,365,600	4,282,400	5,176,800	6,058,400	6,920,800
지원내용	- (대상자)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가구별 상황과 욕구에 따른 영역별(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지원 - (사회복지 유관기관)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를 통한 표창 및 포상지원, 집중사례 기관 모니터링(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 2026.03. ~ 2027.03.						
신청방법	- 신한금융희망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운영 사무국 이메일 제출 (gnsupport@gnk.or.kr) - 전국 사회복지 유관기관에서 신청(개인신청 불가) ※ 신청시 참고사항 • 증빙서류 미비 등 자격 부적격 시 심사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음. • 추후 선정 시 사업비 전용 신한은행 통장 개설 필수(타은행 불가) • 단, 2024~25년 아래 사업 지원자 중복 신청 불가 1) 2024년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2) 2025년 위기가정 맞춤형 지원사업 3) 2024~2025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사업<보이스피싱제로>						
문의	- 위기가정 지원사업 운영 사무국(02-6424-1501/1502)						



□ 이랜드복지재단 위기 지원사업 'SOS위고(WE GO)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로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가정
지원내용	- 치료비 : 일반 치료비, 수술시 발생하는 보장구 (최대 500만원) - 생계비 : 수도광열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의복비, 자녀 학습비 (최대 300만원) - 주거비 : 월 임대료,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LH 임대보증금(최대 300만원) - 자립비 : 치과진료비, 취업자격 교육비 (최대 500만원) 간병비, 자녀돌봄비 (최대 200만원) - 물품비 : 생필품, 식료품, 의류(물품) (30만원) WE GO 봉사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생계비, 주거급여 월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회, 단기/일시 지원으로 1가정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soswego.co.kr) - 사례관리기관에서 접수(개별신청 불가) - 반드시 가정상담 후 신청 - 기관통장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신청 가능 - 자주묻는질문: https://soswego.co.kr/#/login/faq
신청기간	- 상시접수 3일 이내 발표
문의	- 이메일: soswego@daum.net - 카카오톡 채널 'SOS위고': http://pf.kakao.com/_Fixnngxj - 서울, 경기, 수도권 : 평일 오전 : 010-2938-0151 / 평일 오후 : 010-5960-0110

□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집중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가능성이 높고 자립 재기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 - 단, 자살 시도자, 자살 의도자, 자살 유가족 등은 중위소득 140% 이하 적용
지원내용	- 위기 상황 극복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생계비와 주거비, 화재복구비, 심리치료비 등
지원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원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차 심사 및 전화(현장) 조사</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2차 심사</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원결정 및 지원금 지급 (사례관리기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례관리 및 결과보고</div> </div>
신청방법	- 신청자 :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개인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SOS 복지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문의	- 아산사회복지재단 : ☎02-3010-2585, 2563



8 기타지원

□ 저소득한부모 요금감면 혜택

* 위의 기타 지원 사업은 별도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한 사항입니다.
 ※ 기타 지자체 지원 사업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건강보험료 경감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용 쌀 할인지원 (기준가격의 약 60~90% 할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 [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에너지바우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이동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월 최대33,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35%(월 최대21,500원) - 1인당 1회선(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전용 ARS(1523), 이동통신사 대리점
과태료 50% 이내 감면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난방) 주거지의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 - (냉방) 에어컨 보급 지원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 에너지 바우처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대상 - 기후민감계층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포함 가구,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지원내용	-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지원
신청방법	- 복지포 누리집(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3급), 장애인(1~3급),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가전제품 * 구매 시 구매금액의 15~30% 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 *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 ※ 전기요금 복지할인 선신청 필요
문의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support.kepco.co.kr) 통해 온라인 신청 * 고객센터(☎ 1551-1212)



□ 운전면허 무료 교육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지원내용	- 운전면허시험 교육 총 12시간 지원(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 접수 ※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운영 면허시험장) 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의정부, 안산, 원주, 청주, 대전, 전북, 전남, 포항, 제주
문의	- 각 지역 디딤돌운전면허지원센터 * 서울 : 강서면허시험장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02-2669-2955

□ 스포츠 강좌 이용권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 등의 5~18세 유·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확인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svoucher.kspo.or.kr)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5만 원)
신청방법	- 온라인 : www.mnuri.kr, 공식 문화 누리카드 모바일 앱 -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www.mnuri.kr), 모바일 앱([공식] 문화누리카드)



□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지원내용	-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문의	- 각 궁, 종묘, 왕릉 관리사무소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구분	세부내용
신청절차	1. 서류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scfs.scourt.go.kr - 서류제출 - 가족관계 등록비송) 통해 신청 - 첨부자료 •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가정법원 제출 (등록 기준지·주소지 관할)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3. 출생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같음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 구조 지원 •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사건의 첨부자료(위 신청 절차 참고) * ① 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세대원포함) ② 건강보험가입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 기준중위소득 확인용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산정내역서 (건강보험미가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문 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양육비 이행 상담(☎1644-6621)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안내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8 514 676 672">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td> <td data-bbox="676 514 1380 672"> -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 당 월 23만 원 ~ 4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2인 가구 기준 약 273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48만 원 </td> </tr> </table>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 당 월 23만 원 ~ 4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2인 가구 기준 약 273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48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 당 월 23만 원 ~ 4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2인 가구 기준 약 273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48만 원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8 672 676 777">보육료</td> <td data-bbox="676 672 1380 777">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 원 보육료를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어린이집 보육료) </td> </tr> </table>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 원 보육료를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어린이집 보육료)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 원 보육료를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어린이집 보육료)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8 777 676 934">가정양육수당</td> <td data-bbox="676 777 1380 934">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 </td> </tr> </table>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8 934 676 1249">아동수당</td> <td data-bbox="676 934 1380 1249"> -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td> </tr> </table>	아동수당	-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	-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안내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8 1249 676 1879">부모급여 (영아수당)</td> <td data-bbox="676 1249 1380 1879">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택1 </td> </tr> </table>	부모급여 (영아수당)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택1
	부모급여 (영아수당)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택1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8 1879 676 1892">건강보험</td> <td data-bbox="676 1879 1380 1892"> •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 취득대상 :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23. 5월)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td> </tr> </table>	건강보험	•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 취득대상 :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23. 5월)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건강보험	•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 취득대상 :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23. 5월)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관련 용어	1. 양육부·모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 (채권자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2. 비양육부·모 :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자 (= 채무자 : 양육비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갖고 있는 자) 3. 집행권원 : 집행력이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 심판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 4. 양육비심판청구소송 : 당사자 간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 5. 인지청구소송 : 미혼(비혼)등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부자 또는 모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상담신청	- 온·오프라인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및 신청서비스 제공
정보조사	• 행정 정보 조회 및 공문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요청 - 접수단계 : 모든 접수건 대상 비양육자,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조사 실시 - 사건진행 : 채무자 동의 시 소득재산조사 실시(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시 채무자 동의 불요)
협의지원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중재 지원
법률지원	• 채권이 없는 양육자를 위한 인지·양육비심판청구 소송으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 (미혼) 인지소송, (이혼) 양육비심판청구소송
추심소송	채무자가 양육비이행의무 위반 시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추심소송 지원* * 양육비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 감치 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 현장지원반 : 경찰서 협조공문요청, 현장조사, 현장지원을 통한 감치 집행 지원 - 행정 제재조치: 이행명령 결정 후 제재조치 요건 해당 시 제재조치 신청·접수 → 사전통지서 발송(의견 수렴) → 공시송달(의견수렴)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모니터링	자녀가 성년(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미이행 시 재추심 연계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사후 양육비 채무자 에게 회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면접교섭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중재,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세부내용
법률지원	양육비에 관한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지원 *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만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 • 기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라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청구를 지원 •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타의 소송도 함께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청구에 수반하여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변경 청구 지원 - 비혼 한부모가 양육자인 경우 인지 청구 지원, 인지로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는 경우 성분계속사용허가 청구 지원 - 조부모 등이 양육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 소송 전후 어느 때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원
	지원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육부·모가 법률지원 신청(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 증액을 요청) ② 변호사 상담과 기초사실조사 및 승소 가능성 판단 ③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 ④ 양육비 지급 여부 모니터링 후 미지급시 추심 지원으로 연계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 하여야 하는 서류
제재조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으로부터 일시금 지급 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3.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신청 지원
상담지원	전화(☎1644-6621), 방문, 온라인을 통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관련 상담
모니터링	양육비 합의·소송 등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



구분	세부내용
추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권원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추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의 예금, 급여 등 채권과 재산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한 채무자 재산 조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한 채무자 신용도 하락 유도 • 가사소송법에 의한 이행확보소송 •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타의 소송도 함께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급명령을 통한 채무자 고용주로부터의 직접 지급 - 이행명령, 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이행하도록 유도) - 담보제공명령을 통한 담보 확보 및 담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이행법에 의한 제재 조치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명령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로 연계
	지원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육부·모가 추심지원 신청 ②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 발송 ③ 채무자의 지급 의사 및 소득과 재산 등 지급 능력 확인 ④ 추심을 위한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등을 진행 ⑤ 감치결정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제재조치로 연계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 하여야 하는 서류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도 해당) *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등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대상	•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자녀를 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교섭 관련 중재, 상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중재 :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 합의 지원 - 상담 :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등 서비스 대상자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 모니터링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신청방법	<p>1)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내<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 작성</p> <p>2) 구비서류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 또는 집행권원 1부(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등) <p>※ 단,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생략 가능</p> <p>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면접교섭서비스 수행 가족센터로 제출하여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표전화(☎1577-9337) 이용시 이용자분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가족센터로 연결 - 홈페이지(www.familynet.or.kr)을 통해서도 가까운 센터 확인 가능
	신청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ARS 1번 연결)
문의	- 양육비 이행 상담 ☎1644-6621	



□ 환경보건 이용권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어린이(13세 미만)8,000명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권역별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후 선정)		
지원내용	항목	지원규모	상세내용
	상품, 서비스, 진료비	7,000명	- 1인당 이용권(포인트) 100,000원 지원 - 포인트 한도 내에서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 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 캠프 등), 진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실내환경 컨설팅	1,000명	- 전문인력이 가정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곰팡이 등)측정 및 저감, 관리 방안 안내 - 개선이 시급한 250명을 선정하여 경보수, 청소 등 실내환경 개선 지원 예정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htis.or.kr/ecovoucher)를 통한 온라인 신청 (1차 신청기간 : 3월 30일~ 4월 15일(수) 18시까지/선정일자 : 4월 17일 2차 신청기간 문의 필요)		
문의	- 환경보건이용권 상담센터(☎1544-0331)		

□ 온가족보듬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사례관리, (손)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출산·양육지원 등 제공 및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센터 대표번호 (☎1577-9337, www.familynet.or.kr)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완화

구분		세부내용
다인 다자녀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인정	승용 자동차	-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2,500cc 미만,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차령 10년 이상 또는 1,000만원 미만
	승합 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1,000만원 미만
영업용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가사·간병 방문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질병·장애 등으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지원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제공 가능)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72시간(이용자 선택) - 서비스 비용 :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시간당 단가17,8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부담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의 발행된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취약계층 9 ~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4,000원) -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 연 1회 일괄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 전액 소멸 - 자격변동으로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신한, 국민)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여행 활동 지원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규정 및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준연령 준용 - 저소득층(1,000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100명)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서울·지방 지역 내 개별 숙박여행(1박 2일) 상품 - 1박 2일 여행상품(조식 및 1식 포함), 숙소 부대시설 이용권 및 여행자 보험 포함 - 인근 관광지 액티비티 체험권(남산타워 케이블카, 영화 티켓 등) 포함
신청기간	- 26년 진행 예정이나 일시는 미정
신청방법	- 서울행복여행(www.happyseoultour.or.kr)을 통해 접수 및 예약
문의	- 서울시 관광정책과 : ☎02-2133-2787



□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안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기초지자체장(시, 군,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서 필요
지원내용	- 냉방 : 벽걸이에어컨(7평형) - 난방 :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가구 - 3순위 : 차상위계층 - 4순위 : 복지사각지대 *동순위 시 추첨을 통해 순위 결정
지원규모	- 냉방 : 약 19,000가구/ 가구 당 벽걸이 에어컨 1대 - 난방 : 약 37,000가구/ 가구당 평균 243만원 *본 사업은 국고보조 100%사업으로 수혜가구의 자부담 없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신청 및 사용기간	- 냉방(벽걸이 에어컨) : 2026. 3. 3.(화) ~ 3. 27.(금) 17:00 - 난방(단열, 창호, 보일러) : 2026. 3. 3.(화)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랑의 PC 신청

-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중고PC 와 자치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 받은 중고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급

구분	세부내용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서 수혜자격이 있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기타취약계층 -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보급제외	- 서울시, 자치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타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보급 받은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대를 신청한 경우 세대 당 1대만 보급
제출서류	- 개인 (공통) 주민등록등본 (해당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확인서 별도 첨부 - 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 단체증명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IT희망나눔세상 → 사랑의PC 신청 - 서류제출방법 : 팩스 및 우편, 메일 등 - 팩스 : 02-768-8992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랑의PC 담당자 앞 - 메일 : seoulpc@seoul.go.kr
사랑의PC A/S	- 보급후 2년동안 AS지원 - 전 화 02-2133-1230 (사랑의PC 정비센터)
문 의	- 서울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02-2133-2891, 02-2133-1230



□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2013.1.1. 이후 출생자, 2026년도 기준)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전액 지원	
지원백신	- 총 19종, 지원 연령 확인 필요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형간염(HepB) • 결핵(BCG, 피내용)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 폴리오(IP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DTaP-IP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 • 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 A형간염(HepA)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 인플루엔자(IV)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 파상풍/디프테리아(Td)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DTaP-IPV-Hib-HepB) • 폐렴구균(PCV)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수두(VAR)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형간염(HepB) • 결핵(BCG, 피내용)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 폴리오(IP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DTaP-IP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 • 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 A형간염(HepA)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 인플루엔자(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형간염(HepB) • 결핵(BCG, 피내용)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 폴리오(IP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DTaP-IP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 • 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 A형간염(HepA)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 인플루엔자(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 파상풍/디프테리아(Td)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DTaP-IPV-Hib-HepB) • 폐렴구균(PCV)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수두(VAR)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접종기관	-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사이트 확인	
문의	-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긴급 비상 전화번호

내용	번호	내용	번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120	생명의 전화	☎1588-9191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고민 상담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긴급 전화상담 및 보호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희망의 전화	☎129	어플(앱)	'다 들어줄 게'



□ 보아스사회공헌재단 '보리'의료비 지원 앱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그 외 의료급여 1종, 2종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 가능 - 치과는 서울, 경기 외 협력병원 인근 거주자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과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안과</td> <td>-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td> </tr> <tr> <td>치과</td> <td>- 충치치료 - 크라운(지르코니아) - 임플란트 - 임플란트 틀니 - 틀니 - 교정(부정교합) - 협력병원 재능기부로 35%지원</td> </tr> <tr> <td>내과</td> <td>- 위 내시경 검사 - 대장 내시경 검사 - 5대 암 검진 - 대장용종절제술 - 위용종절제술 - 내시경이물제거술</td> </tr> <tr> <td>정형/신경외과</td> <td>- 무릎인공관절수술 - 고관절인공관절수술 - 어깨회전근개파열수술 - 어깨인공관절수술</td> </tr> <tr> <td>이비인후과</td> <td>- 청각장애진단 - 축농증 수술 - 만성비염수술 - 비중격교정술 - 보청기</td> </tr> </tbody> </table>	지원과목	내용	안과	-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	치과	- 충치치료 - 크라운(지르코니아) - 임플란트 - 임플란트 틀니 - 틀니 - 교정(부정교합) - 협력병원 재능기부로 35%지원	내과	- 위 내시경 검사 - 대장 내시경 검사 - 5대 암 검진 - 대장용종절제술 - 위용종절제술 - 내시경이물제거술	정형/신경외과	- 무릎인공관절수술 - 고관절인공관절수술 - 어깨회전근개파열수술 - 어깨인공관절수술	이비인후과	- 청각장애진단 - 축농증 수술 - 만성비염수술 - 비중격교정술 - 보청기
	지원과목	내용											
	안과	-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											
	치과	- 충치치료 - 크라운(지르코니아) - 임플란트 - 임플란트 틀니 - 틀니 - 교정(부정교합) - 협력병원 재능기부로 35%지원											
	내과	- 위 내시경 검사 - 대장 내시경 검사 - 5대 암 검진 - 대장용종절제술 - 위용종절제술 - 내시경이물제거술											
정형/신경외과	- 무릎인공관절수술 - 고관절인공관절수술 - 어깨회전근개파열수술 - 어깨인공관절수술												
이비인후과	- 청각장애진단 - 축농증 수술 - 만성비염수술 - 비중격교정술 - 보청기												
지원방법	- '보리'앱을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보리앱 이용가이드 확인												
문의	- ☎1661-1402 (상담시간 9:30~16:00)												



□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

구분	주소	전화번호
강북삼성병원	종로구 새문안로 29	☎ 1599-8114
건국대학교병원	광진구 능동로 120-1	☎ 1588-1533
경희대학교 병원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 02-958-8114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구 구로동로 148	☎ 02-2626-111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북구 고려대로 73	☎ 1577-0083
삼성서울병원	강남구 일원로 81	☎ 1599-3114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 대학로 101 의생명연구원 1층	☎ 1588-5700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구 언주로 211	☎ 1599-6114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 연세로 50-1	☎ 1599-1004
이대목동병원	양천구 안양천로 1071	☎ 1666-5000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1688-7575
중앙대학교 병원	동작구 흑석로 102	☎ 1800-111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반포대로 222	☎ 1588-1511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왕십리로 222-1	☎ 02-2290-8114





2026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매뉴얼

한부모가족 종합가이드북



발행처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T E L 02-861-3020
F A X 070-7469-3024
홈페이지 www.seoulhanbumo.or.kr

※본 자료집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있습니다.